

신흥시장국(MAVINS)의 원자재 개발 협력 법제 연구(Ⅰ)

종합보고서

손 현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비교법제 연구 12-20-⑭-1

**신흥시장국(MAVINS)의 원자재
개발 협력 법제 연구(Ⅰ)
- 종합보고서 -**

손 현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신흥시장국(MAVINS)의 원자재 개발 협력 법제 연구(Ⅰ)

- 종합보고서 -

A Legal Study on Cooperative
Development of Natural Resource in
Emerging Markets(MAVINS)(Ⅰ)
- Summary Report -

연구자 : 손 현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Son, Hyun

2012. 10. 31.

요 약 문

I. 배경 및 목적

- 자원경쟁의 가속화, 자원민족주의의 확산과 더불어 중동정세의 불안, 중국, 인도 등의 신흥공업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수요 증가, 기상 이변 등 국제 원자재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원자재 수급 불안이 확대되고, 가격 상승 및 변동성 증가의 문제가 제기됨.
- 대외 경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국가간 자원 확보를 둘러싼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중남미, 동남아, 아프리카 등 자원 부국인 신흥시장국들이 세계 자원 전쟁의 최대 격전지로 부상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원자재 비축확대, 수입선 다변화, 자주 개발 확대 등 원자재 가격 충격에 대응하고, 신흥시장으로의 진출 및 자원 협력 연계를 통한 에너지·자원 수급의 안정화를 위하여 다각적인 정책 방안을 제시함.
- 에너지·자원 수급의 안정화를 위한 신흥시장으로의 진출 및 자원 협력 연계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개발 사업에 대한 경험 미숙, 기술력 부족, 막대한 개발 자금 조달에 따른 위험 부담, 현지 정보 부족으로 인한 법적 불확실성 등

으로 인하여 실제 국내의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의 성과는 아직 미비한 현실임

- 본 연구는 향후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신흥시장국(Mexico, Australia, Vietnam, Indonesia, Nigeria, South Africa : MAVINS)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국가에 대한 자원 개발 법제 및 외국인 투자 관련 법제의 분석을 통하여 해외 원자재 개발을 위한 해당 국가의 관련 법제 정보를 제공하고, 향후 해외 원자재 개발 협력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정책 수립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II. 주요 내용

- 한국의 해외 원자재 개발 정책 및 법제 분석
 - 국내의 해외 원자재 개발 정책 및 「해외자원개발사업법」, 「해외농업개발협력법」 등 관련 법제의 분석을 통하여 국내 기업 등이 해외 원자재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규제 내용을 분석하여 향후 개선 방향을 모색함.
- MAVINS의 원자재 개발 협력 동향 분석
 - 국가별로 각 국가의 정치·경제 상황의 이해, 주요 원자재 현황, 외국인 투자 환경을 분석하고, 각 국가들의 한국 또는 외국과의 원자재 개발 협력 동향 및 사례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 및 개선 사항을 도출함.

□ MAVINS의 원자재 개발 관련 법제 분석

- 국가별로 석유, 천연 가스, 광물 등 풍부한 원자재 중 국내의 수요가 큰 대상 원자재를 선정하여 해당 원자재 개발 관련 법제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원자재 개발 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 쟁점 및 시사점을 도출함.

□ MAVINS의 원자재 개발 관련 투자 법제 분석

- 국가별로 원자재 개발 관련 투자를 위한 외국인 투자법, 회사법, 조세법, 토지 및 부동산 관련 법제 등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여, 향후 해당 국가와의 원자재 개발 협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주요 법률적인 쟁점 사항을 검토함.

□ 對MAVINS 국가와의 원자재 개발 협력 방안 모색

- 해당 국가와의 원자재 개발 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법률적인 쟁점, 문제점 및 유의사항 등의 분석을 통하여 향후 효율적인 해외 원자재 개발 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對MAVINS 국가별 국내 정책 추진 방향 등을 모색함.

Ⅲ. 기대효과

- 신흥시장국 중 글로벌 자원 개발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국가로 부상하고 있는 ‘MAVINS(멕시코, 호주, 베트남,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국가의 자원 개발 법제 및 외국인 투자 관련 법제 분석 자료의 제공 및 활용

- 정부의 산업자원 협력 및 미래 자원 확보를 위한 신흥시장
국에 대한 해외 자원 개발 협력을 위한 정책 수립에 기여

- 한국 기업의 MAVINS 국가에 대한 자원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해당 국가의 자원 개발 법제 및 투자 관련 법제 정보
의 제공

▶ 주제어 : 신흥시장국, MAVINS, 멕시코, 호주, 베트남,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원자재, 원자재 개발 협력,
광물법제, 석유법제, 천연가스법제, 외국인 투자법제, 조세
법제

Abstract

I . Background and Objectives

- Continuously emerging factors which may affect to international commodity markets such as accelerating competition for resources, spreading of resource nationalism, unstability of the Middle East situation, increasing demand due to the rapid growth of emerging economies, and change of climate, the anxiety on raw material supply and demand is expanding, and issues on price and volatility are brought up.
- Competition among countries which are highly dependent on foreign economy is becoming fierce, in particular resource-rich emerging countries such as Latin America, Southeast Asia, and Africa become the world's resource war battlefields.
- For Korea to respond to commodity price shocks due to the expansion of commodity stockpiling and independent development, and the diversification of imports, it is necessary to find various ways to stabilize the supply of energy and resources by linking to resource cooperation and new market penetration.

- In spite of the necessity above, due to inexperience in business development, lack of technology, development financing risks, legal uncertainty caused from the lack of local information, the actual performance of resources development projects is still insufficient.
- This study aims to provide foreign country laws and legislations for resource development through analysis of the resource development and foreign investment legislation in those countries, and it focuses on the emerging market countries, which is expected to be highly dependent on imports of raw materials in the future.
- This study also aims to propose measures for policy making to support the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of foreign raw materials in the future.

II. Main Contents

- Analysing Korea's overseas commodity development policy and legislation
 - Seeking directions by analysing Korea's support and regulatory for promoting overseas resources development business based on commodities development policy, 「the Overseas Resources Development Business Act」 and 「Overseas Agricultural Development Partnership Act」, etc.

- Trend analysis on Raw materials development cooperation of MAVINS
 - Finding problems and improvements by analysing each country's political and economical status, and the status of raw materials, foreign investment environment, and cooperation trends and practices.
- Analysis on MAVINS Laws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raw materials
 - Drawing issues and implications through analysing raw material development laws and legislations selecting target raw materials which has large domestic demand by country.
- Analysis on legal system related to raw materials development investments of MAVINS
 - Reviewing the major legal issues to promote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in the future based on analysis foreign investment law, corporate law, taxation, land and real estate-related laws, etc.
- Finding measures for raw material development cooperation with MAVINS
 - Seeking policy directions for effective promotion of overseas commodity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through analysis of legal issues, problems and precautions on raw materials of each country.

III. Expected Effects

- Providing materials on resource development legislation and foreign investment laws of MAVINS (Mexico, Australia, Vietnam, Indonesia, Nigeria, and South Africa) which are emerging as important countries in the developed markets.
- Contributing to making overseas resource development cooperation policy for government cooperation of industry resources and securing future resources
- Providing materials and information on MAVINS investment-related laws and legislation for Korean companies' resource development project

▶▶ Key Words : Emerging market countries, MAVINS, Mexico, Australia, Vietnam, Indonesia, Nigeria, and South Africa, raw materials, raw material development cooperation, mineral laws, Natural gas and petroleum laws, foreign investment laws, tax laws

목 차

| | |
|--------------------------------------|----|
| 요 약 문 | 3 |
| Abstract | 7 |
| | |
| 제 1 장 서 론 | 15 |
| 제 1 절 연구의 목적 | 15 |
|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6 |
| I. 연구의 범위 | 16 |
| II. 연구의 방법 | 20 |
| III. 보고서의 구성 | 20 |
| | |
| 제 2 장 한국의 해외 원자재 개발 정책 및 법제 | 23 |
| 제 1 절 해외 원자재 개발 정책 현황 | 23 |
| I. 해외 원자재 개발 개념 | 23 |
| II. 해외 원자재 개발 정책 추진 내용 | 24 |
| III. 對MAVINS 원자재 개발 정책 추진 현황 | 35 |
| 제 2 절 해외 원자재 개발 관련 법제 분석 | 37 |
| I. 개 관 | 37 |
| II. 「해외자원개발사업법」의 주요 내용 분석 | 38 |
| III. 「해외농업개발협력법」의 주요 내용 분석 | 49 |
| IV. 기타 해외 투자 및 조세 관련 법제 분석 | 55 |
| | |
| 제 3 절 해외 원자재 개발 정책 및 법제의 개선 방향 | 59 |

| | |
|--|-----|
| 제 3 장 MAVINS의 원자재 개발 협력 동향 | 61 |
| 제 1 절 개 관 | 61 |
| 제 2 절 MAVINS의 원자재 개발 협력 동향 분석 | 61 |
| I. 멕시코 | 61 |
| II. 호 주 | 65 |
| III. 베트남 | 69 |
| IV. 인도네시아 | 72 |
| V. 나이지리아 | 75 |
| VI. 남아프리카공화국 | 78 |
| 제 3 절 검 토 | 81 |
| 제 4 장 MAVINS의 원자재 개발 협력 법제 | 83 |
| 제 1 절 개 관 | 83 |
| 제 2 절 MAVINS의 원자재 개발 법제 및 정책 분석 | 83 |
| I. 멕시코 | 83 |
| II. 호 주 | 86 |
| III. 베트남 | 90 |
| IV. 인도네시아 | 95 |
| V. 나이지리아 | 98 |
| VI. 남아프리카공화국 | 101 |
| 제 3 절 MAVINS의 원자재 개발 투자 관련 법제 및 정책 분석 .. | 106 |
| I. 멕시코 | 106 |
| II. 호 주 | 110 |
| III. 베트남 | 113 |

| | |
|--------------------------------|-----|
| IV. 인도네시아 | 117 |
| V. 나이지리아 | 122 |
| VI. 남아프리카공화국 | 123 |
| | |
| 제 5 장 결 론 : 원자재 개발 협력 방향 | 127 |
| | |
| 참 고 문 헌 | 141 |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자원경쟁의 가속화, 자원민족주의의 확산과 더불어 중동정세의 불안, 중국, 인도 등의 신흥공업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수요 증가, 기상 이변 등 국제 원자재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원유·곡물·기초금속 등 원자재 수급 불안이 확대되고, 가격 상승 및 변동성 증가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대외 경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국가간 자원 확보를 둘러싼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중남미, 동남아, 아프리카 등 자원 부국인 신흥시장국들이 세계 자원 전쟁의 최대 격전지로 부상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원자재 비축확대, 수입선 다변화, 자주 개발 확대 등 원자재 가격 충격에 대응하고, 신흥시장으로의 진출 및 자원 협력 연계를 통한 에너지·자원 수급의 안정화를 위하여 다각적인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¹⁾ 특히, 「해외자원개발사업법」, 「해외농업개발협력법」 및 기타 조세 관련 법제의 제·개정을 통하여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을 위한 각종 지원 제도를 법제화하여 해외 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국제 협력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자원 수급의 안정화를 위한 신흥시장으로의 진출 및 자원 협력 연계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개발 사업에 대한 경험 미숙, 기술력 부족, 막대한 개발 자금 조달에 따른 위험 부담, 현지 정보 부족으로 인한 법적 불확실성 등으로 인하여 실제 국내의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의 성과는 아직 미비한 현실이다.

1) 지경부는 2012년 업무계획에서 최우선 대응 정책과제로 에너지·자원 수급 안정화를 선정하고, 국내외 에너지·자원 개발 확보, 신흥시장별 맞춤형 협력 강화, 신흥시장 인프라 진출과 자원 협력 연계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향후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신흥시장국(Mexico, Australia, Vietnam, Indonesia, Nigeria, South Africa : MAVINS)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국가에 대한 자원 개발 법제 및 외국인 투자 관련 법제의 분석을 통하여 해외 원자재 개발을 위한 해당 국가의 관련 법제 정보를 제공하고, 향후 해외 원자재 개발 협력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정책 수립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I. 연구의 범위

1. 대상 국가

본 연구는 경제 전문기관으로부터 주목받고 있는 신흥시장국 중 자원이 풍부한 국가로 향후 국내와의 원자재 개발 협력의 가능성과 필요성이 높은 국가인 멕시코(M), 호주(A), 베트남(V), 인도네시아(I), 나이지리아(N), 남아프리카공화국(S)을 대상국가로 선정하였다.

국제 시장에서 신흥시장국으로 주목받고 있는 국가로는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MAVINS(멕시코, 호주, 베트남,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MIKT(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 CIVETS(콜롬비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집트, 터키, 남아공), VISTA(베트남, 인도네시아, 남아공, 터키, 아르헨티나) 등이 있다. 이 중 MAVINS의 경우 자원 부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호주, 인도네시아, 남아공은 니켈, 우라늄, 아연, 금 등 6대 전략광종의 주요 매장국이며, 나이지리아, 베트남은 석유 매장량이 풍부하고, 니켈 46.3%, 우라늄 30.7%, 아연 26.3%, 동 20.7% 등 세계 매장량의 20~40%를 차지하고 있다. 멕시코의 경우도 광물 자원이 풍부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MAVINS 국가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따라서 이들 국가에 대한 법제 연구 수요가 높은 현실이다. 이에 MAVINS 6개 국가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2. 대상 법제

원자재 개발 협력 사업은 실시협약, 생산물 분배계약, 합작개발, 용자 매광계약, 용역계약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이러한 방법 등을 통하여 MAVINS 6개 국가와의 원자재 개발 협력 사업 추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의 원자재 개발 법제 및 외국인 투자에 관한 법제가 주요 적용 대상이 된다. 본 연구는 원자재 개발 협력 사업 추진에 전제가 되는 원자재 개발 법제 및 외국인 투자 법제 등을 대상 법제로 선정하였다.

원자재 개발 관련 법제는 광물, 농산물 및 축산물, 임산물 등 주요 원자재 중 광물(석유 제외), 석유, 천연가스 관련 법제를 대상으로 하고, 그 중 국내 수입 수요가 높은 원자재 위주로 대상 원자재 범위를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또한 원자재 개발 협력을 위해서는 각 국가별로 원자재 개발 관련 법제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 등이 해당 국가에 진출할 때 필요한 외국인 투자법, 법인설립 절차 등의 회사법, 조세법, 무역 및 노동·금융 관련 법제의 분석도 병행되어야 한다. 이 중 우선 원자재 개발과 관련된 외국인 투자법(외국인 직접 투자법이 없는 국가의 경우 회사법 등 관련 규정), 조세법 등을 우선 분석대상으로 삼아 국가별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3. 용어의 구분

석유, 천연가스 등의 에너지, 철, 구리, 아연 등의 금속, 밀, 대두(콩), 옥수수 같은 식량, 돼지, 소 등의 축산물, 목재, 천연고무, 면화

같은 상품은 다른 상품과 에너지를 만들어 내는데 꼭 필요한 원천 재료이다. 이렇게 기업이 다른 상품이나 완제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료, 또는 원천이 되는 상품을 원자재(commodity), 또는 원재료라고 한다. 이에 비해 자원은 석유, 석탄, 철, 나무, 전기, 식물과 같은 지하 자원과 천연자원 등 생산의 근본이 되는 물자를 총칭해 이르는 말이다. 엄격하게 말하면 원자재는 이들 자원을 가공하여 제품을 만들기 이전 그 자체를 말한다. 예컨대, 밀을 재배하는 땅은 자원이고, 밀은 원자재이며, 밀가루는 원료이고, 빵은 제품이다. 또한 지하에 묻혀 있는 광석은 자원이고 이를 캐내 철광석으로 분류되는 것이 원자재이며, 이를 제철 공장에서 제련하여 만든 철판을 원료라 한다.²⁾

한편,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서는 해외 자원의 범위를 광물, 농산물, 축산물 및 임산물에 해당하는 국외의 자원으로 구분한다. 본 연구는 엄격하게 말하면 해외자원개발사업법상의 해외 자원을 대상으로 접근한 것으로 자원이라는 용어가 더 적합할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원자재, 자원이라는 용어가 크게 구분 없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엄격하게 개념 구별 없이 혼용하여 사용하였다.

4. 주요 내용

(1) 한국의 해외 원자재 개발 정책 및 법제 분석

국내의 해외 원자재 개발 정책 및 「해외자원개발사업법」, 「해외농업개발협력법」 등 관련 법제의 분석을 통하여 국내 기업 등이 해외 원자재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규제 내용을 분석하여 MAVINS 지역 법제 연구 외에 종합보고서를 통해 향후 개선 방향을 모색하였다.

2) 윤채현·정용구, 「지금 당장 원자재 공부 시작하라」, 한빛비즈, 2009/12, 21~22면 참조

(2) MAVINS의 원자재 개발 협력 동향 분석

국가별로 각 국가의 정치·경제 상황의 이해, 주요 원자재 현황, 외국인 투자 환경을 분석하고, 각 국가들의 한국 또는 외국과의 원자재 개발 협력 동향 및 사례 분석을 통하여 현황을 분석하였다.

(3) MAVINS의 원자재 개발 관련 법제 분석

국가별로 석유, 천연 가스, 광물 등 풍부한 원자재 중 국내의 수요가 큰 대상 원자재를 선정하여 해당 원자재 개발 관련 법제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원자재 개발 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 쟁점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주로 각 국가별 광물 관련 법제, 석유 법제, 천연가스 법제가 대상이 되었다.

(4) MAVINS의 원자재 개발 투자 관련 법제 분석

국가별로 원자재 개발 투자를 위한 외국인 투자법, 회사법, 조세법, 토지 및 부동산 관련 법제 등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여, 향후 해당 국가와의 원자재 개발 협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주요 법률적인 쟁점 사항을 검토하였다. 외국인 직접 투자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에는 외국인 직접 투자법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하였고, 그렇지 않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회사법을 대상으로 하였다.

(5) 對MAVINS 국가와의 원자재 개발 협력 방안 모색

해당 국가와의 원자재 개발 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법률적인 쟁점, 문제점 및 유의사항 등의 분석을 통하여 향후 효율적인 해외 원자재 개발 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對MAVINS 국가별 국내 정책 추진 방향 등을 모색하였다.

II. 연구의 방법

각 국가별로 연구책임자를 지정하여 국가별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해당 국가의 원자재 개발 및 투자 관련 법령 분석을 주로 진행하였다. 이에 수반하여 문헌 연구 및 정부 부처, 국제기구 등에서 제공하는 해당 국가에 대한 자료를 참고하였다.

한편, 국내에서의 비교·지역법제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5차례의 워크숍을 통하여 각 국가별 원자재 개발 및 법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진들간의 연구 내용에 대한 상호 협의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현지 법률 전문가를 공동 연구진으로 하여 관련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현지 방문을 통해 관련 전문가의 인터뷰 및 사례 연구 등을 진행하였다.

III. 보고서의 구성

본 보고서는 “신흥시장국(MAVINS)의 원자재 개발 협력 법제 연구”라는 제목으로 총7권의 보고서로 구성되었다.

| 신흥시장국(MAVINS)의 원자재 개발 협력 법제 연구(연구 책임 : 손현) | | |
|--|-------|---------------------|
| 권 호 | 세부 제목 | 연구진 |
| I | 종합보고서 | 손 현(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 II | 멕시코 | 김정현(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 III | 호 주 | 김성호(한밭대 글로벌경영학부 교수) |
| IV | 베트남 | 김현희(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 신흥시장국(MAVINS)의 원자재 개발 협력 법제 연구(연구 책임 : 손현) | | |
|--|----------|---|
| 권 호 | 세부 제목 | 연구진 |
| V | 인도네시아 | 김범준(원광대 법전원 교수) |
| VI | 나이지리아 | 최승필(한국외대 법전원 교수) |
| VII | 남아프리카공화국 | 손 현(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서광옥(남아프리카공화국 변호사) |

제 2 장 한국의 해외 원자재 개발 정책 및 법제

제 1 절 해외 원자재 개발 정책 현황

I. 해외 원자재 개발 개념

해외 자원(원자재)개발이란 해외 자원을 단독개발³⁾, 합작개발⁴⁾, 기술 용역제공⁵⁾, 개발자금 융자⁶⁾ 등의 방법으로 ① 대한민국 국민이 단독으로 또는 외국인과 합작으로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방법(해외 현지 법인을 통하여 개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 자원을 개발하는 외국인에게 기술용역을 제공하여 개발하는 방법, ③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외국인에게 개발자금을 융자하여 개발된 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입하는 방법⁷⁾ 등에 따라 개발(개발을 위한 조사 및 개발에 딸린 사업을 포함한다)⁸⁾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 해외 자원 개발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3) 대한민국 국민의 조사 및 개발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방법(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1호)

4)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과 합작으로 조사 및 개발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해외 자원을 개발하는 방법(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5) 조사 및 개발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민이 조사 및 개발에 관한 기술용역을 제공하여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방법(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6) 조사 및 개발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민이 개발자금을 융자하여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방법으로서 자원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개발자금융자의 필요성 및 개발자금융자에 상응하는 반대급부가 인정되는 것(해외 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7) 개발된 자원을 그 개발된 지역으로부터 수입하는 방법, 개발된 자원을 그 개발된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산출된 같은 종류의 자원과 교환 형식으로 수입하는 방법,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입방법 등이 있다(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8)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정의) 제4호 및 제3조(해외자원개발의 방법)

<해외 자원 개발 절차>⁹⁾

| 사업단계 | 목적 | 주요 작업 |
|---------------------|-----------------------|----------------------------------|
| ① 정보수집 | 신규광구 분양 및 지분 양도 정보 수집 | 지사, 인터넷, 산유국 정부, 정보지 등을 통해 정보 수집 |
| ② 광구취득단계 (신고, 용자신청) | 탐사권리 확보 | 입찰 또는 지분참여 계약 |
| ③ 탐사단계 | 석유부존 가능성 및 매장량 확인 | 지표지질조사, 물리탐사, 탐사시추, 평가시추 |
| ④ 개발단계 | 생산준비 | 유전평가 후 개발계획 수립 생산성 시추, 생산시설 건설 |
| ⑤ 생산단계 | 최적생산/최대 회수 수익 극대화 | 저류층 관리, 생산증진, 생산시설 관리 |

II. 해외 원자재 개발 정책 추진 내용¹⁰⁾

1. 정책 추진 목표

정부는 범국가적인 해외자원개발 역량을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추진을 2007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 이를 위하여 석유·가스의 자주개발률¹¹⁾을 두 자릿수인 10% 수준으로, 유연탄과 우라늄 등 주요한 전략 광물은 27%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을 추진해나가고 있다. 특히 공공부문에 비해 역량이 미흡한 민간 부문의 해외자원개발을 활성화하여 민간부문의 풍부한 자금력과 글로벌 네트워크 등을 해외자원개

9) <http://www.ikoredis.or.kr/> 참조

10) <http://www.ikoredis.or.kr/> 참조

11) 자주 개발율 : 고유가, 원자재 자원시장 교란 상황에 대한 자원확보의 안정성에 대한 지표(생산량 × 우리기업 지분율)

발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아프리카 등 유망 자원부국과의 전략적인 에너지자원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¹²⁾ 구체적인 자주 개발률 및 자주 개발량 목표는 다음과 같다.

<주요 광종·연도별 자주 개발률 및 자주 개발량 목표>¹³⁾

| 광 종 | 2007년 | | 2009 | | 2013 | | 2016 | |
|-------|--------|--------|--------|--------|--------|-------------------|--------|--------|
| | 자주 개발률 | 자주 개발량 | 자주 개발률 | 자주 개발량 | 자주 개발률 | 자주 개발량 | 자주 개발률 | 자주 개발량 |
| 석 유 | 3% | 26 | 6% | 48 | 17% | 146 | 24% | 213 |
| 천연 가스 | 9.1% | 2.3 | 14% | 4 | 31% | 11 | 39% | 13 |
| 유연탄 | 38% | 31 | 42% | 40 | 49% | 49 | 50% | 54 |
| 우라늄 | - | - | - | - | 2% | 100 ^{''} | 15% | 900 |
| 철광석 | 10.7% | 5 | 15% | 7 | 27% | '15 | 30% | 1'6 |
| 동 광 | 4.7% | 44 | 7% | 77 | 23% | 268 | 35% | 450 |
| 아연광 | 33.2% | 262 | 29% | 254 | 37% | 376 | 40% | 456 |
| 니 켈 | 26.1% | 23 | 15% | 19 | 29% | 50 | 30% | 61 |

12) 지식경제부 보도자료 참조

13) <http://www.ikoredis.or.kr>

2.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¹⁴⁾

(1) 기본 계획 수립의 배경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은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따라 매 3년마다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기본계획으로 2010년 12월에 발표된 『제4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¹⁵⁾』은 그 간의 해외자원개발 성과를 평가하고 2019년까지의 중장기적 목표와 추진전략을 포괄하고 있다.

(2) 제3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 등 기존의 추진 경과

① 자주개발률 초과 달성 및 자원개발 투자 확대

글로벌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자원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자원협력 외교를 강화하여, 2009년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은 당초 목표(7.4%) 대비 1.6%p를 상회한 9%를 기록하였으며, 광물자원도 목표(25%)를 초과한 25.1%를 달성하였다. 또한 '07년 이후 3년간 해외자원개발 분야의 정부예산도 약 3조 5천억으로 과거에 비해 대폭 확대되었다.¹⁶⁾

14) 지식경제부 보도자료 및 발표 자료 인용

15) 제1차 기본 계획 : '01~'10년, 제2차 기본 계획 : '04~'13, 제3차 기본계획 : '07~'16, 제4차 기본 계획 : '10~'19년

16) <자원개발 예산 현황> <http://www.ikoredis.or.kr/>

| 사업명 | '09예산 | '10예산(A) | '11예산안(B) | 증감(B-A) | % |
|--------------|---------|-----------|-----------|----------|-------|
| <자원개발(예특회계)> | 992,358 | 1,711,165 | 1,221,419 | △489,746 | △28.6 |
| 유전개발사업 출자 | 509,400 | 1,255,577 | 710,000 | △545,577 | △43.5 |
| 해외자원개발 조사 | 4,300 | 5,900 | 10,000 | 4,100 | 69.5 |
| 자원협력기반 구축 | 700 | 630 | 730 | 100 | 15.9 |

② 석유공사 대형화 등 공기업 역량 강화

석유공사는 2008년 6월 수립된 ‘석유공사 대형화’ 전략에 따라 2012년까지 생산규모를 30만 b/d로 확대할 계획으로, 이에 따라 석유공사는 생산광구 매입 및 Harvest사(’09.12), Dana사(’10.10) 인수 등 집중적인 M&A 및 자산매입을 추진하여 생산규모를 확대하였다. 광물자원공사도 과거의 사업지원기관 성격의 광업진흥공사에서 해외자원개발 기업형태인 광물자원공사로 개편(’08.12)하고 적극적 해외자원개발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가스공사도 이라크에서 3차례의 공개 입찰을 통해 석유·가스전을 확보하는 등 자원개발사업 참여를 본격 추진하였다.

③ 범정부차원의 자원외교 체제 강화

중남미, 중앙아, 러시아 등 주요 전략지역에 대한 정상급 외교 등 범정부 차원의 자원협력외교를 활발히 추진하여 유망 광구 확보 등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78개의 에너지거점공관 지정, 총리실을 중심으로 유관부처·기관·기업이 참여하는 ‘에너지협력외교 운영 등,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정비하였다.

| 사업명 | '09예산 | '10예산(A) | '11예산안(B) | 증감(B-A) | % |
|--------------|---------|----------|-----------|---------|------|
| 해외자원개발 용자 | 358,200 | 309,300 | 290,100 | △19,200 | △6.2 |
| - 국내외 유전개발 | 289,800 | 240,900 | 221,700 | △19,200 | 8.0 |
| - 해외광물자원개발 | 68,400 | 65,400 | 68,400 | - | - |
| 한국광물자원공사 출자 | 110,700 | 130,700 | 180,000 | 49,300 | 377 |
| 광산물비축사업출자 | 8,469 | 8,469 | 30,000 | 21,531 | 771 |
| 광산물비축자산 관리보조 | 589 | 589 | 589 | - | - |

④ 금융 및 조세지원 확대

해외자원개발 투자액은 '09년 약 67억불로 '07년 약 32억불에 비해 약 2배 이상으로 증가하였으며, 시중의 풍부한 자금을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투자하는 공기업 출자 자원개발펀드를 출시하였으며, 석유공사와 광물공사가 시드머니로 1,100억원을 투자하여 2개 펀드 총 7,100억원이 조성되었다. 이와 함께 민간기업의 원활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출입은행의 용자는 2009년 2조원 규모로 확대되었으며, 무역보험공사의 보증도 2009년 2.7조원으로 확대되었고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전 단계를 커버하는 자원개발종합보험도 도입('08.12)되었다. 아울러 해외자원개발 투자액의 3%를 공제하는 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를 신설('08.1)하였으며, 기존의 조세특례 세제들의 일몰기간을 연장하는 등, 민간기업의 자원개발 투자 촉진을 위해 조세 지원을 하였다.

⑤ 인력·연구개발 등

자원개발 인프라 강화 해외자원개발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 10개 대학을 자원개발특성화 대학으로 지정('09.1월)하였으며, 자원개발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단기 실무교육과정 및 중간 전문인력 재교육을 실시 중에 있다. 또한 자원개발 핵심기술로드맵을 마련('07.3) 하여 연구개발 시스템을 정비하였다. 아울러 자원개발 업계들간 정보 공유와 협력 증진을 위해 72개 회원사가 참여하는 해외자원개발협회가 출범('08.3) 하였다.

(3) 해외자원개발 목표 및 추진 전략

2019년 원유·가스 자주개발률 목표는 30%로 2009년 9.0%에 비해 3배 이상 증가 한 목표치이다. 유연탄, 우라늄, 철, 동, 아연, 니켈 등

6대 전략광종의 2019년 자주개발률 목표는 42%로 설정하여 2009년 25%에 비하여 대폭 증가하였다. 특히, 이번 4차 기본계획에서는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희유금속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희토류와 리튬을 新전략광물로 선정하고 희토류·리튬의 2019년 자주개발률 목표를 26%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추진전략으로는 자원개발전문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차별화된 한국형 협력모델 추진, 자원개발 민간 투자재원 확충 및 인센티브 제고, 자원개발 인프라 강화, 신전략 광물·비전통에너지·극지개발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원개발 전문기업 육성 및 역량 강화 자원개발전문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석유공사는 규모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형화를 지속 추진하여 2012년까지 생산규모를 30만b/d로 확대할 계획이며, 중장기적으로는 기업공개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 확보한 피인수기업의 효율적 관리로 M&A 시너지 효과 제고에 주력하며, 기술수준 제고, 재원조달 능력 강화 등을 통해 자생적 지속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오일샌드 등 비전통 자원의 개발사업 확대와 관련 기술개발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가스공사는 LNG 구매력을 활용한 자원개발사업 확대를 추진하며, 인력, 기술, 재원 확보로 자원개발기업의 역량을 획기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광물자원공사는 세계 20위권의 자원개발 전문기업으로 도약으로 추진하며, 해외자원개발 중심의 기능개편, 자본금 확충, 재원도달 다각화를 통해 글로벌 광업메이저 기업으로의 성장 기반을 구축한다. 이와 함께 공기업으로서의 역할도 강화하여 광물자원공사, 자원수요기업, 종합상사, 금융기관간의 협력을 선도하여 유망 사업 발굴 및 추진에도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기업의 해외 자원개발 활성화를 적극 유인하기 위하여 자주개발률 보조지표 신설 등을 통해 해외자원개발 활동에 대한 적합한 평가와 유인을 제공할 계획으로, 초기 대규모 투자비가 소요되는 반면에 투지회수 기간이 장기

간인 자원개발사업의 특수성에 맞도록 공기업의 경영평가를 개선할 계획이다. 전략적 자원개발 추진 석유·가스 부문은 M&A 등으로 확보한 해외거점 등을 활용하여 미주·중동, 아시아·유럽, 아프리카의 3대 지역별로 맞춤형 협력전략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경제성장 경험공유 등 차별화된 한국형 자원협력모델을 추진하고 자원개발과 SOC의 연계 등 동반진출사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자원개발 투자재원 확충 자원개발 투자활성화를 위해 매장량 기초금융(RBF, Reserve Based Financing)의 활성화에 노력하며, 자원개발펀드의 활성화를 위해 투자위험보증사업의 재원(현 500억원)을 추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그리고 연기금의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본격화하기 위해 연기금이 공기업 등의 보유하고 있는 안정적 생산단계에 있는 광구의 지분을 매입하고 자산유동화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자원개발전문기업과 연기금의 선순환 투자구조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무역보험공사는 2013년 보증규모를 3.5조원으로 확대하여 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위험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며, 수출입은행도 2013년 3조원으로 용자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용자 이외에 매장량기초금융, 출자 등으로 지원수단을 다변화 할 계획이다. 그리고 민간기업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12년부터는 해외자원개발 용자전액을 민간기업에 지원하고 용자예산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자원개발인프라 강화 현재 탐사 등 자원개발 기술서비스의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원개발 서비스 기업의 육성을 통해 국내 자원개발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다. 인력양성을 위해 자원개발특성화대학은 해외 인턴십 등을 통해 현장 중심의 실무형 전문인력 육성을 추진하며, 중장기적으로 자원개발 전문대학원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R&D 분야에서는 최근의 자

원개발 기술환경 변화를 고려한 新자원개발핵심기술로드맵을 구축하여 체계적인 R&D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新전략광물, 비전통 에너지자원별, 극지개발 확대 희유금속은 IT, 녹색산업 등 첨단 사업에 폭넓게 사용되는 산업원료 광물로 그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정부는 리튬과 희토류를 신전략광물로 선정하여 전략광물에 준하는 지원을 할 계획이며, 국내 주요 광화대의 탐사와 비축을 확대할 계획이다.

오일샌드, 치밀가스 등 비전통 에너지자원별은 관련 생산기술의 발달로 북미 등을 중심으로 생산량이 증대되는 추세로서 주요 매장지역, 국내기업 참여현황 및 기술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전통 에너지자원별 참여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린랜드 등 극지개발 참여 전략도 마련하여 우리기업이 유망 프런티어 지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3. 주요 세부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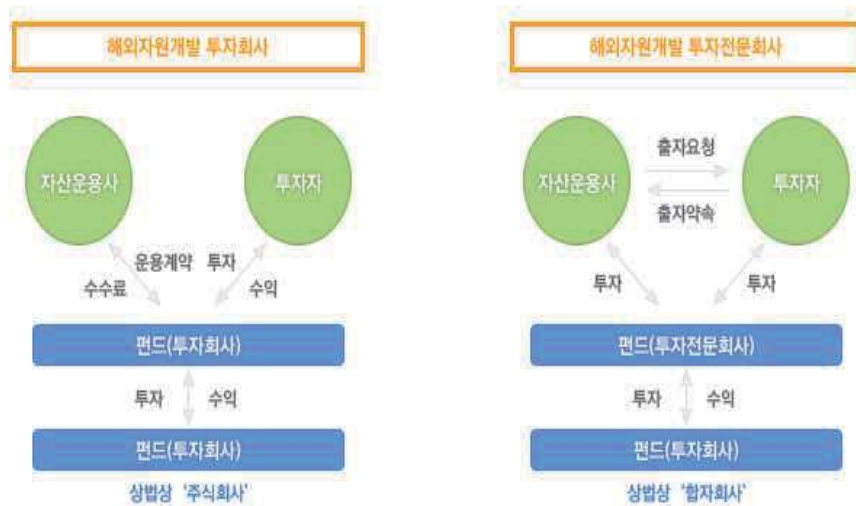
(1) 패키지형 자원개발 사업

국제적 자원 확보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대형 복합 사업으로 발전 가능한 패키지형 자원개발 사업(자원개발+건설+기간설비 등)을 발굴하고 사업타당성 조사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패키지형 자원개발사업의 예비 사업타당성조사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자원개발 협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신청자가 지원 신청한 사업 중 실무협의회가 예비 사업타당성조사를 통해 지원 대상사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선정된다.

(2) 자원개발펀드의 운영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근거하여 시중의 민간자금을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간접 투자 수단으로 자원개발 펀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유형에는 자원개발투자회사(뮤추얼펀드), 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PEF)가 있다.



자원개발 펀드를 조성할 경우에는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지식경제부에 신고하고, 금융위원회에 펀드 등록을 하여야 한다.¹⁷⁾ 해외자원개발펀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6에 따라 배당소득세를 감면하여 지원개발펀드의 세후 수익률을 높이도록 지원한다.¹⁸⁾ 또한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3조의8에 근거하여 사업위험·국가위험 등으로 인한 자원개발펀드의 원금 손실을 일정 부분 보상하도록 한다. 또한 수출보험공사를 통해 성공불용자 재원을 활용하여 투자회사 및 투자 전문회사에 500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¹⁹⁾ 생산·개발사업 50% 이상, 탐사 사업 50% 미만을 보상한다.²⁰⁾ 이는 펀드의 리스크를 완화하여 민간 투자사의 적극적인 펀드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한편

17) 펀드 등록시 금융위원회는 지경부와 사전 협의를 한다(해양자원개발사업법 제13조의3).
 18) 펀드 수익률 8% 가정시, 실제 세후 수익률이 약 1.1%p 상승
 19) 공모형 투자회사는 의무 가입이다.
 20) 사업에 따라 부보율 및 자기부담율 상이함.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근거하여 일반 펀드에 대한 특례 규정이 있다.

| 구 분 | 일반펀드 | 자원개발펀드 |
|-----------------|--|--|
| 투자회사 (뮤추얼펀드) | - 분산투자 유도를 위해 동일 회사 주식에 대한 투자를 엄격히 제한 (10% RULE) - 10% RULE: 펀드자산의 10% 이 내, 발행회사 주식의 10% 이내에 서만 동일회사 주식에 투자가능 | 유전개발사업에 50% 이상 (탐사사업의 경우 30% 이상) 투자의무 |
| 투자전문회사 (REF) | - M&A 목적으로만 투자 | 해외자원개발 투자 해외자원개발기업의 M&A |
| | - M&A를 통한 수익 확보가 주목 적이므로 일정 기간 내 매각의무 | 매각의무 없음 |
| 자산운용사요건 | - 자본금 100억원 이상 | 자본금 30억원 이상 3인 이상의 해외자원 개발 전문인력 확보 |

현재 운영 중인 펀드는 다음과 같다.

| |
|---|
| <p>① 유전개발펀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형 : 공모형 투자회사 - 모집규모 · 자산운용사 : 2,000억원, 한국투자신탁운용 - 투자대상 : 베트남 15-1 광구(생산광구)의 수익권 - 존속기간 : 5년 만기 <p>② 니켈개발펀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형 : 공모형 투자회사 - 모집규모 · 자산운용사 : 1,300억원, 하나USB자산운용 |
|---|

- 투자대상 :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의 수익권
- 존속기간 : 11년 만기

(3) 자원개발특성화 대학 양성 및 해외 인턴십

자원개발 특성화대학 지원을 통하여 열악한 상태에 있는 자원개발 관련 대학교육을 정상화함으로써, 해외자원개발 활성화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체계적인 양성 및 공급 시스템 복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자원개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전공과정을 이미 개설하고 있거나, 학부과정으로 자원개발 관련 공학과(부) 또는 자원 탐사 및 개발 공학 통합학부를 개설하고자 하는 대학으로서 지원 자격 및 조건을 충족하는 일반대학교가 선정 대상이 된다. 자원개발에 필요한 인력 양성 지원비, 교수 인력 확충 및 교육인프라 구축 사업, 자원개발특성화대학 교수협의회 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한편, 자원개발현장에서의 연수기회를 제공하여 현장전문지식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해외자원개발기업에서 요구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해외 인턴십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운영 체제>



| 조 직 | 역할 및 책임 |
|-------------|--|
| 지식경제부 | -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의 총괄기획·감독·승인 |
| 전담기관 | -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의 전반적인 운영관리 및 보고 - 특성화대학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
| 출연금관리 기관 | - 특성화대학사업 출연금의 접수 및 전담기관으로 이관 |
| 특성화대학 | - 특성학과 구성: 학과장, 전임·비전임 교원 확보, 참여학생 모집 - 특성화대학사업의 유지 및 특성학과의 관리 - 특성학과의 사업비관리 및 집행 |
| 수요공기업 | - 특성화대학사업 출연금 지원 |

Ⅲ. 對MAVINS 원자재 개발 정책 추진 현황

정부는 1970년대 석유파동 이후 자원외교기반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주요 자원보유국을 중심으로 정부간 협력채널로 에너지·광물 자원 분야의 교역, 합작투자, 기술협력 및 정보교환 등에 관한 협력증진을 목적으로 한 자원협력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매년 개최국 부담으로 장관급, 차관·실장급을 수석대표로 개최하며, 석유공사, 가스공사, 에너지경제연구원, 지질자원연구원, 광업진흥공사, 민간 E&P 기업 등이 주로 참석하고 있다. 주로 양국 에너지·광물 자원 수급동향 및 관련 정책, 에너지·광물 자원 교역 및 공동개발 확대, 에너지 및 광물자원분야 기술협력 및 정보교환 등을 주요 논의 사항으로 한다. 각 지역별로 설치된 자원협력위원회의 설치 현황은 다음과 같다. MAVINS 국가로서 제일 먼저, 인도네시아에 이어 호주, 베트남, 나이지리아, 멕시코 순으로 자원협력위원회를 설치 운

영하고 있다. 아직,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자원협력위원회는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멕시코, 호주, 베트남,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와 자원협력위원회를 통하여 에너지·광물 자원 분야의 교역, 합작투자, 기술협력 및 정보교환에 대한 여러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지역별·연도별 자원협력위원회 설치 현황>

| 구 분 | 아시아 | 중 동 | 러시아. CIS | 아프리카 | 중남미 | 계 |
|------------------|--|---|---|--|---|------|
| 1997년 이전 | ①인 니 ('79) ②호 주 ('80) ③몽 골 ('92) | | ①러시아 ('92) | | | 4개국 |
| 1998년 - 2002년 | ④베트남 ('01) | ①사우디 ('99) | ②카자흐 ('02) | | | 3개국 |
| 2003년 - 2007년 | ⑤필리핀 ('03) ⑥미얀마 ('05) ⑦파푸아 뉴기니 ('06) ⑧라오스 ('07) | ②오 만 ('05) ③쿠웨이트 ('05) ④UAE ('06) ⑤카타르 ('06) ⑥이라크 ('07) | ③우즈베크 ('05) ④아제르 ('06) ⑤투르크 ('07) | ①콩 고 ('05) ②알제리 ('06) ③나이지리아 ('06) ④앙골라 ('06) | ①페 루 ('03) ②브라질 ('04) ③칠 레 ('03) ④아르헨 ('03) ⑤멕시코 ('05) ⑥에콰도르 ('07) | 22개국 |

| 구 분 | 아시아 | 중 동 | 러시아. CIS | 아프리카 | 중남미 | 계 |
|------------------|--|-----|-------------|------|---|------|
| 2008년 - 2009년 | ⑨동티 모르 (’08) ⑩감보 디아 (’09) | | | | ⑦콜롬 비아 (’09) ⑧베네 수엘라 (’09) | 4개국 |
| 계 | 10개국 | 6개국 | 5개국 | 4개국 | 8개국 | 33개국 |

제 2 절 해외 원자재 개발 관련 법제 분석

I. 개 관

국내 해외 원자재 개발 사업에 대한 일반법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이며, 최근 국외 농산물, 축산물 및 임산물의 경우에도 투자회사의 투자 대상이 되도록 하는 「해외농업개발협력법」이 2012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 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해외 투자 지원에 관한 법령들이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 법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세부적인 지침으로는 석유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기준(지경부 고시), 융자금 원리금 감면대상 해외자원개발사업(지경부 고시), 투자위험보증기관 자격요건(지경부 고시), 해외산림자원개발 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 업무 수행을 위한 기관의 지정(산림청 고시), 해외자원개발 투자운용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지경부 고시), 패키지형 자원개발사업 관리규정 등이 있다.

Ⅱ. 「해외자원개발사업법」의 주요 내용 분석

1. 해외자원의 범위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 제3호는 “해외자원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의 광물을 말한다”고 하여 해외자원을 정의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법 제2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물, 농산물, 축산물 및 임산물(「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바이오에너지의 원료를 획득하기 위한 작물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국외(國外)의 자원이란 [별표 1]과 같다고 한다.

| [별표 1] | |
|-----------------|--|
| 광 물 | 금광·은광·동광·연광·아연광·창연광·주석광·안티몬광·수은광·철광·크롬광·티타늄광·망간광·니켈광·텅스텐광·인광·알루미늄광·흑연·석탄·석유·운모·석면·유황·형석·석회석(대리석을 포함한다)·규사·규석·우라늄광·지르코늄광·염·카리광·백금광·코발트광·몰리브덴광·마그네슘광·금강석·고령토·사금·사석·사철·활석·희토류광·천연석고·사문석·루비·사파이어·바륨광·규조토·리튬·인듐,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광물 |
| 농산물 및 축산물 | 밀·옥수수·콩·면화,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농산물 및 축산물 |
| 임산물 | 원목·제재목·합판·단판·우드·파티클보드·목재펠릿·섬유판·집성재·성형재·마루판·팜유나무·자트로파·석재, 그 밖에 산림청장이 정하는 임산물 |

2. 해외자원개발의 방법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상 해외자원개발의 방법으로 ① 대한민국 국민이 단독으로 또는 외국인과 합작으로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방법(해외 현지법인을 통하여 개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외국인에게 기술용역을 제공하여 개발하는 방법, ③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외국인에게 개발자금을 융자하여 개발된 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입하는 방법이 있다.²¹⁾ 구체적으로 보면, 해외자원개발 방법으로 “단독개발은 대한민국 국민이 조사 및 개발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방법”, “합작개발은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과 합작으로 조사 및 개발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방법”, “기술용역제공은 조사 및 개발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민이 조사 및 개발에 관한 기술용역을 제공하여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방법”, “개발자금융자는 조사 및 개발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민이 개발자금을 융자하여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방법으로서 자원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개발자금융자의 필요성 및 개발자금융자에 상응하는 반대급부가 인정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²²⁾

3.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

정부는 해외자원의 합리적인 개발을 위하여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기본계획(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²³⁾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주무부장은 3년마다 법

21)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3조

22)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23)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4조 제1항

제4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본계획의 계획기간은 10년으로 한다.²⁴⁾

해외자원개발의 추진목표,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기술수준의 향상, 해외자원개발 전문인력의 양성,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정보유통의 원활화,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국제 협력, 해외자원개발의 합리적인 조정 및 관리, 기타 해외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포함한다.

4.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의 신고제도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²⁵⁾ 지식경제부장관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 중에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신고를 하여야 한다.²⁶⁾ 그리고 신고를 할 때에는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조사사업과 개발 사업(부대사업을 포함)으로 구분하여 신고할 수 있다.²⁷⁾

24)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25)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법 제5조 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은 법 제3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의 방법, 투자 규모 및 투자 비율, 해외자원개발사업에 관한 계약의 상대방을 말한다.” 고 정하고 있다.

26)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5조 제1항

27)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5조 제2항

< 조사사업과 개발사업 >

① 광물인 경우

| 구 분 | 사업의 내용 |
|-------|---|
| 조사 사업 | 지질광상조사, 시굴(試掘), 물리탐사, 지화학탐사, 시추탐사, 굴진탐사, 그 밖에 광상(鑛床)에 묻혀 있는 광물 확인을 위한 탐사 및 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위한 탐사 |
| 개발 사업 | 채굴, 선광(選鑛), 제련, 가공(채굴, 선광, 제련 등과 연계된 가공의 경우만 해당한다), 그 밖의 부대사업으로서 상업적 생산을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생산 전 개발사업” 및 시설투자가 완료되고 상업적 생산을 하는 “생산사업”으로 구분한다. |

또한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에 그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즉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색사업단, 그 밖에 주무부장관이 자원개발 전문기관으로 고시한 기관에 그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²⁸⁾ 또한 동 법 제5조 제4항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계획을 보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② 농산물 및 축산물을 개발하는 경우

| 구 분 | 사업의 내용 |
|-------|--|
| 조사 사업 | 기상, 수문, 토양, 수리시설, 토목, 작물 생태, 그 밖에 농산물 및 축산물 생산을 위한 조사 및 개발사업의 타당성 조사 |
| 개발 사업 | 농장의 개발, 영농, 가공(개발, 영농 등과 연계된 가공의 경우만 해당한다), 그 밖의 부대사업 |

③ 임산물을 개발하는 경우

| 구 분 | 사업의 내용 |
|-------|--|
| 조사 사업 | 임지(林地)의 항공 및 지상 조사, 목재 이용, 가공시설 예정지에 대한 임지 조사, 그 밖에 임산물 생산을 위한 조사 및 개발사업의 타당성 조사 |
| 개발 사업 | 임산물의 생산 및 가공(생산과 연계된 가공의 경우만 해당한다), 조림(造林), 그 밖의 부대사업 |

28)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5조 제3항

이처럼 현행 해외자원개발법제의 신고제도가 사업 착수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 판단이며, 법령에 의한 지식경제부의 신고수리가 사업의 성공여부 및 유망성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즉 해외자원개발사업 신고제도는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자원개발사업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정부에 알려주는 행정절차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최근에 지식경제부의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신고 수리행위가 마치 정부가 해당사업의 성공여부를 인정해서 신고수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오인되어 투자자들이 현혹되는 사례가 많으나 이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신고제도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판단된다.²⁹⁾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은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 지식경제부장관은 사업계획에 대한 보완권고 및 관계기관에 의한 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절차를 입법화한 것은 신고자가 해당 자원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 최소한의 요건을 구비하였는가를 판단하는 절차이며, 성공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투자자들은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실적, 기술능력, 자금조달 능력 등 해당사업의 경제적·기술적인 타당성에 대한 세심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고 하겠다.³⁰⁾

5.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조성을 위한 지원제도

정부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조성을 위한 지원제도로 ① 비용보조, ② 용자, ③ 조세특례를 부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29) 예컨대 일반음식점사업에 대한 신고가 수리되었다고 해서 신고수리 사실 자체만을 가지고 그 음식점에 투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음식점의 위치나 대상고객, 음식점의 종류와 맛 그리고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30) 김종천, “한국의 해외 원자재 개발 정책 및 법제 분석”,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 자료집, 2012.

(1) 비용의 보조

정부는 해외자원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조사에 드는 비용,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기술개발 및 전문 인력 양성에 드는 비용, 해외자원개발에 따르는 외국과의 국제협력 및 기술교류에 드는 비용, 그 밖에 해외자원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용자업무 대행기관이 그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용자와 관련하여 입은 결손을 보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에 관련된 채무의 보증금 및 보증채무 이행으로 인한 결손을 보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등을 보조할 수 있다(법 제10조). 주무부장은 비용 또는 경비를 보조할 때에는 미리 그 집행계획과 지급기준을 기본 계획의 내용에 부합하게 하여 공고하여야 한다(시행령 제9조)

한국석유공사(석유), 한국광물자원공사(석유외의광물), 한국농어촌공사(농산물 및 축산물), 녹색사업단(임산물)에게 해외자원개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업무³¹⁾를 수행하게 하고 이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시행령 제9조)

(2) 용 자

정부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자,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투자위험보증기관에 ①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조사 및 개발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 ②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자금, ③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토지의 임차 또는 매입자금, ④ 투자위험보증사업의 수행

31) 정보의 수집·조사와 자료 발간, 정보시스템의 개발·구축 및 유지·관리, 해외사무소의 운영, 정보통신망 운영 등의 정보제공 업무

에 필요한 자금, ⑤ 그 외에 국내 실수요자의 개발해외자원 구매 자금,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수행 중 발생하는 예상할 수 없었던 재난 또는 분쟁에 관련된 보상 자금 등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³²⁾ 한편, 해당 사업의 실패로 인하여 융자금의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석유·석탄·우라늄광·동광·철광·아연광·연광·알루미늄광·안티몬광·망간광·니켈광·크롬광·텅스텐광·코발트광·몰리브덴광 또는 희토류광 개발사업, 은광·티타늄광·인광·흑연·운모·유황·형석·석회석(대리석을 포함한다)·규사·규석·질코늄광·염·마그네슘광·고령토·활석·천연석고·사문석·리튬 또는 펄라이트 개발사업³³⁾, 투자위험보증사업이다.³⁴⁾ 면제대상은 위의 사업이 상업적 생산에 이르지 못하고 종료되는 경우, 상업적 생산에 이른 경우로서 천재지변, 국내외 경제사정의 급변 등 사업 경영상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융자금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투자위험보증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지원받은 경우를 투자위험보증 지급금, 투자위험보증기관의 운영경비, 그 밖에 자금운용에 필요한 경비 및 투자위험보증사업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등으로 사용하여 융자금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이다.

(3) 조세 특례

국가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법인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동 법 제12조). 이와 관련해서 정부는 해외자원개발활성화를 위해서는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규정과

32)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1조

33) 시행규칙 제4조의2

34) 시행령 제11조의3(융자금 원리금의 면제)

해외자원개발설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현재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규정”을 “2015년 12월 31일” 또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일몰규정³⁵⁾을 연장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을 것이다.³⁶⁾

①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조특법 제22조)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함으로써 지급받은 배당소득이 내국법인의 소득에 포함된 경우 당해 자원보유국에서 그 배당소득에 대하여 조세를 면제받은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 22조 제1항에 “내국법인의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각 사업 연도의 소득에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자원 개발사업(자원보유국의 외자도입 조건에 따른 자원의 가공업을 포함한다)에 투자함으로써 받은 배당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원보유국에서 그 배당소득에 대하여 조세를 면제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면제한다”고 해외자원개발사업과 관련된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규정을 두고 있다.

② 해외자원개발설비투자 세액공제(조특법 제25조)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에 해외자원개발설비에 대한 투자 등에 대한 세액을 공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내국인이 해외자원개발 설비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35) 일몰제란 어떤 정책(프로그램)의 가치가 그 폐지보다 존속을 정당화하는지, 당해 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지 만약 있다면 정책의 당초 목적이 달성된 정도의 평가가 정책의 실적, 영향이 명시적으로 의도된 상태의 형식으로 명확히 되어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일몰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박영도, 「규제 일몰제 확대 도입에 따른 법제개선방안」(한국법제연구원, 2011), 30면 이하 참조.

36) 김종천, 앞의 글 참조.

③ 해외자원개발펀드 배당소득세 감면(조특법 제91조의6)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6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해외자원개발펀드 투자금 3억원 이하인 개인투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3억원 초과 투자자에 대해서는 14% 분리과세 적용('08년까지)하며, '09~'11년까지는 3억원 이하 5%, 3억원 초과분 14% 분리 과세한다.

④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제104조의 6)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6에서는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외국자회사에서 수입배당금을 받은 경우, 동 수입배당금에 해당하는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상당액의 50%를 세액 공제한다.

⑤ 일반법에 대한 특례

법인세법에서는 조세조약의 내용에 따라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 조특법에서는 조세조약 내용과 관계없이 간접외국납부 세액을 인정한다.

⑥ 일반법인에 대한 특례

일반법인의 경우에는 외국자회사에 대한 내국법인의 지분이 25%이상이어야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 경우에는 내국법인의 지분이 5%이상이면 특례적용이 가능하다.

6.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위한 투자기구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3조 제1항에 “해외자원개발사업 등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외자원

개발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또한 해외자원개발사업 등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사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³⁷⁾ 즉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³⁸⁾로 보며,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는 같은 법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PEF:Private equity fund)로 본다.³⁹⁾⁴⁰⁾ 예컨대 우리나라의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대표적인 예로 한국투자신탁운영(주) 설정한 한국베트남15-1유전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2006), 하나UBS자산운용(주)이 설정한 하나UBS암바토비니켈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2007) 등이 있다. 그리고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의 대표적인 예로는 한국산업은행, SK에너지(주), 맥쿼리산천리자산운용(주)가 설립한 트로이카해외자원개발사모투자전문회사(2009) 등이 있다.

그리고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위한 별도의 투자기구로서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와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를 통칭하여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이라고 하고, 여기서 투자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은 석유·석탄·우라늄광·동광·철광·아연광·알루미늄광·니켈광·몰리브덴

37)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3조 제2항

38)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4조에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 제1항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39)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3조 제3항

40) 해외자원개발펀드가 부진한 이유는 국내자산운용인력의 전문성 부족, 국내투자자의 투자분석 능력 부족 등이다. 이는 해외자원개발펀드를 통하여 다양한 해외자원개발사업기회를 모색하고, 투자자들에게 적합한 투자상품을 만들어 내는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해외자원개발펀드의 자산운용인력은 다양하고 선진적인 투자구조를 통해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해외자원개발사업법이 정하고 있는 자산운용방법 등이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투자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투자구조로 만들어 내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는 투자대상사업 및 투자자의 특성에 따라 펀드구조를 신축적으로 설계함으로써 다양한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던 해외자원개발펀드법제 당초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이준기, “해외자원개발사업법 개선방안 연구”, 234면 이하 참조.

광·희토류광·티타늄광 또는 리튬 광물자원의 개발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⁴¹⁾ 또한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는 자본금의 100분의 50⁴²⁾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i) 투자 대상 해외자원에 대한 제3조의 방법에 따른 투자, (ii)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투자 및 시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해외자원개발 전담회사에 대한 출자, (iii) 전담회사의 주식·지분·채권·수익권의 취득, (iv) 전담회사에 대한 대출채권의 취득, (v)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위험회피 외의 목적으로 투자 대상 자원을 기초로 한 장내 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vi) 석유·가스·일반광물의 탐사·개발·생산·정제·운송·판매 등이 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외국 자원개발기업의 경영권 참여를 위한 주식 및 지분의 투자, (vii) 그 밖에 지식경제부 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승인한 투자에 사용하여야 한다.⁴³⁾

한편,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 또는 제268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등록에 관하여 미리 지식경제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존립기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 또는 제268조에 따라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으로 등록된 날부터 20년 이내에서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지식경제부 장관 및 금융위원회는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업무와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지식경제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에 금융위원회에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와 관련된 업무와 재산에 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감독과 검사” 규정을 두고 있다.

41)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3조의2 및 시행령 제12조

42) 투자 대상 사업이 개발·생산 단계에 이르지 아니하는 탐사 중인 광구(“탐사광구”)인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함.

43)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4조의2 제1항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는 제11조 제1항에 따른 용자를 받는 것 외에 자금차입·담보제공 및 채무보증도 가능하다.

7. 정부의 투자위험보증사업

정부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투자위험보증기관)으로 하여금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에 사업의 투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정한 손실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授受)하는 사업(투자위험보증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⁴⁴⁾ 정부는 투자위험보증기관에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즉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위험보증기관과 일정한 손실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는 법 제13조의 8제1항에 따른 투자위험보증기관(투자위험보증기관)과 일정한 손실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授受)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투자위험보증사업규정의 경우에도 해외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무역보험공사를 통하여 투자위험보증사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판단된다.

Ⅲ. 「해외농업개발협력법」의 주요 내용 분석

1. 목적 및 제정이유

「해외농업개발협력법」은 2011년 7월 14일 법률 제10843호로 해외농업개발사업과 국제농업협력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을 촉진

44)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3조의8 제1항

함으로써 해외농업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국제협력을 통해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국제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 제정되었고, 2012년 1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동 법률은 국제곡물 시장의 불안 정성 증대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농·임산물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하여 밀·콩·옥수수 등 주요곡물의 해외 생산·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 정되었다. 또한 동 법률의 제정으로 인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법」(지 식경제부)에서 포함되어 시행되어 오던 농·임산물 자원의 개발을 위 한 근거법을 마련하게 되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이와 더불어 해외 농산물 자원도 투자의 대상에 포함되어 자금조달, 해외농업개발 사업자의 권익보호, 정보교류, 전문인력 양성 등의 가능하게 되었다.

2. 해외농업자원의 범위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제2조 제3호에 해외농업자원이란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국외(國外)의 농산물, 축산물 및 임산물(「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바이 오에너지의 원료를 획득하기 위한 작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정하 고 있다. 동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國 外)의 농산물, 축산물 및 임산물은 [별표1]과 같다고 정하고 있다.

| 구 분 | 품 목 |
|--------------|---|
| 농산물 · 축산물 | 밀, 콩, 옥수수, 면화, 원유(原乳),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축산물 |
| 임산물 | 원목, 제재목, 합판, 단판, 우드칩, 파티클보드, 목재펠릿, 섬 유판, 집성재, 성형재, 마루판, 팜유나무, 자트로파, 석재, 그 밖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산물 |

3. 해외농업개발방법 및 해외농업종합계획의 내용

해외농업개발의 방법은 해외농업자원을 생산 또는 확보하기 위하여 단독 또는 합작개발, 외국인에게 기술용역제공 및 개발자금융자 등이 있다.⁴⁵⁾

한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해외농업개발사업에 관한 종합계획(해외농업개발종합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⁴⁶⁾ 그리고 해외농업개발종합계획은 해외농업개발사업의 목표와 전략 및 단계별 추진계획, 농산물의 국제 수급 변화와 전망, 해외농업자원의 조사에 관한 사항,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국제농업기구 등과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해외농업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3년마다 해외농업개발종합계획(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해외농업개발사업계획의 신고

해외농업개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개발하고자 하는 해외농업자원이 농산물 또는 축산물인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임산물인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해외농업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⁴⁷⁾ 신고의 내용으로는 해외농업개발방법, 대표자, 사업소재지, 계약 상대방, 투자 규모 및 투자비율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⁴⁸⁾ 해외농업개발사업을 하려고 하는 자가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도 해외농업개발사업을 위한 조사사업과 개발사업으로 구분하여 신고가 가능하다.⁴⁹⁾

45)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시행령 제3조

46)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제5조 제1항

47)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제7조 제1항

48)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49)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제7조 제2항

그리고 동일한 해외농업개발사업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제 7조에 따른 신고를 하여는 자는 대표자를 정하여 농림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해외농업개발사업자가 해외농업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인수하는 경우에도 그 현황을 농림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⁵⁰⁾

해외자원개발사업 신고제의 취지는 규제완화를 통한 해외자원개발의 활성화를 통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자원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대외경제협력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현행 신고제도는 사업 착수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 판단이며 법령에 의한 지정부 신고수리가 사업의 성공여부 및 유망성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신고된 사업도 실패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⁵¹⁾

5.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 등의 설립·운영

해외농업개발사업 등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고, 해외농업개발사업 등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사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외농업개발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즉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로 보며, 해외농업개발투자전문회사는 같은 법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로 본다.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해외농업개발투자전문회사가 투자하는 해외농업개발사업은 해외농업자원 중 밀, 콩, 옥수수, 그 밖에 농림수산물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축산물을 말한다.

그리고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등의 존립기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 또는 제268조에 따라 해외농업개발투자회

50)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제9조

51) 김종천, 앞의 글 참조.

사등으로 등록된 날부터 20년 이내에서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등의 정관으로 정하고, 다만,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 등은 해외농업개발사업의 계속 등으로 존립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당초 존립기간 만료일부터 기산하여 20년 이내에서 존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⁵²⁾

재산운영방법으로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는 자본금의 100분의 50(투자대상사업이 개발·생산 단계에 이르지 아니하는 타당성을 조사 중인 사업(타당성조사사업)인 경우에는 100분의 3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i) 투자대상 해외농업자원에 대한 제3조의 방법에 따른 투자, (ii) 해외농업개발사업의 투자 및 시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해외농업개발사업 전담회사(전담회사)에 대한 출자, (iii) 전담회사의 주식·지분·채권·수익권의 취득, (iv) 전담회사에 대한 대출채권의 취득, (v)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위험회피 외의 목적으로 투자대상자원을 기초로 한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vi) 해외농산물의 개발·생산·저장·가공·운송·판매 등이 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외국의 해외농업개발기업의 경영권 참여를 위한 주식 및 지분의 투자, (vii) 그 밖에 주무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해외농업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승인한 투자에 사용하여야 한다.⁵³⁾ 또한 해외농업개발투자전문회사는 (i) 단기대출, (ii) 금융기관 예치, (iii) 출자총액의 100분의 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에서 하는 투자증권에 대한 투자, (iv) 출자총액의 100분의 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에서 하는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의 주식에 대한 투자, (v)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운영한다.⁵⁴⁾

52)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제11조 제3항

53)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제19조

54)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제21조

6. 해외농업개발사업의 보조금 및 융자 지원제도

정부는 해외농업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i) 해외농업개발을 위한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ii) 해외농업개발사업을 위한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소요되는 비용, (iii) 해외농업개발사업에 따른 외국과의 국제협력 및 기술교류에 소요되는 비용, (iv) 그 밖에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보조금으로 지원한다.⁵⁵⁾ 또한 정부는 해외농업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기관에게 해외농업개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동 법 제23조 제2항).

정부는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해외농업개발사업자, 제11조 제1항에 따른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해외농업개발투자전문회사에게 (i) 해외농업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사 및 사업권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 (ii) 해외농업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자금, (iii) 해외농업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토지의 임차 및 매입 자금, (iv) 그 밖에 해외농업개발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을 융자⁵⁶⁾할 수 있다. 그런데, 자금을 융자받은 해외농업개발사업자가 천재지변이나 국내외 경제사정의 급변 등 사업경영상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융자금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⁵⁷⁾

55)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제23조 제1항

56) 해외농업개발사업에 대한 농산물에 대한 융자업무의 대행기관은 “한국농어촌공사” 이고, 임산물은 “산림조합 중앙회”가 담당 한다. 융자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관계공무원 및 외부전문가 12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동 법 시행규칙 제4조).

57)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제25조

7. 소득세, 법인세인 조세에 대한 특례제도

국가는 해외농업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법인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⁵⁸⁾

8. 소 결

「해외농업개발협력법」의 제정함으로써 해외농업개발사업 종합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공고하도록 하여 사업전반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차관을 중심으로 해외농업개발 심의회를 운영하고, 해외농업개발관련 정책 및 사업계획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는 등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해외농업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제도를 두고 이러한 지원의 범위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 등의 재산운용방법과 같은 규정을 통하여 해외농업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펀드결성이 가능하게 되었다.

IV. 기타 해외 투자 및 조세 관련 법제 분석

1.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

에너지의 수급(需給) 및 가격 안정과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58)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제26조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으로 (i) 에너지 및 지하자원(해양광물자원을 포함한다)의 개발·생산·수송·비축·공급·품질관리 사업, (ii) 에너지 및 지하자원 관련 산업의 구조조정 사업, (iii) 에너지 절약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사업, (iv) 가스의 안전관리와 유통구조의 개선 사업, (v)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및 부대 사업을 말한다.⁵⁹⁾

용자계정의 세입은 (i) 용자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 수입, (ii) 특별회계 소관 예탁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 수입, (iii) 제7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iv)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v) 제8조에 따른 차입금, (vi) 투자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vii)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의 수입금이다(동 법 제6조 제1항). 동 법 제6조 제2항은 용자계정의 세출은 (i)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용자 대상 기관에 대한 용자, (ii) 투자계정으로의 전출금, (iii) 용자계정의 차입금 및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iv) 용자계정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이다.

한편, “지식경제부장관은 용자 대상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자가 해당 사업을 실패하여 지원받은 용자금의 상황이 불가능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용자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i) 석유개발사업이 상업적 생산에 이르지 못하고 사업을 종료한 경우, (ii) 석유개발사업이 상업적 생산에 이른 경우 천재·지변, 국내·외 경제사정의 급변 및 석유개발사업의 특성등 사업경영상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용자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황이 불가능한 경우로 정하고 있다.

59) 에너지 및 자원의회계 특별법 제2조

2.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1항에 “내국 법인의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자원보유국의 외자도입 조건에 따른 자원의 가공업을 포함한다)에 투자함으로써 받은 배당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원보유국에서 그 배당소득에 대하여 조세를 면제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면제한다”고 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과 관련된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규정을 두고 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⁶⁰⁾에 해외자원개발설비에 대한 투자 등에 대한 세액을 공제하는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6⁶¹⁾의 해외자원개발투

60)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산업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1. 삭제
2. 삭제
3.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시행되는 유통사업을 위한 시설
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기업체가 수탁기업체에 설치하는 시설
5. 산업재해 예방시설
6. 광산보안시설
7.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정부의 시설 보강 및 확장 명령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강하거나 확장한 시설
8.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 및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받는 영업자 등이 설치하는 위해요소 방지시설
9. 기술유출 방지설비
10. 해외자원 개발설비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61)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6(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3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해외

자회사 등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6⁶²⁾)을 두고 있다.

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이하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가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으로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보유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별로 3억원 이하인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그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5로 한다.

②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주권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위탁된 경우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이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려면 배당 결의를 한 후 즉시 제1항에 따른 주식 보유자별·증권회사별 비과세대상소득과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명세를 직접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주식 보유자가 위탁 매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통지받은 내용에 따라 비과세하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③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주권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위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은 직접 또는 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명의개서대행기관을 통하여 주식 보유자별로 비과세대상소득과 분리과세대상소득을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 배당소득비과세·분리과세 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2) 제104조의 6(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경영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중 내국법인이 직접 출자한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에 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1. 우리나라가 체약상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가 또는 지역에서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를 받았을 것
2.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외국자회사의 배당·잉여금 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을 것

제 3 절 해외 원자재 개발 정책 및 법제의 개선 방향

지금까지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지원하는 각종 정책 및 법제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2조에 국가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법인세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1항과 제25조에 규정하고 있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일몰제규정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또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해외자원개발에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규정”과 제25조에 “해외자원개발설비 투자세액 공제 등” 유지하기 위하여 일몰제규정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⁶³⁾

또한 「해외농업개발협력법」이 2012년 1월 15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동 법률은 국제곡물 시장의 불안정성 확대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농·임산물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하여 콩·밀·옥수수 등 주요곡물의 해외 생산·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즉 동 법률의 제정으로 인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법」(지식경제부 소관)에서 포함되어 시행되어오던 농·임산물 자원의 개발을 위한 근거법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해외 농산물 자원도 투자의 대상에 포함되어 보조금 및 융자금 등의 자원조달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해외농업개발사업자의 권익보호, 정보교류, 전문인력양성, 해외농업투자를 위한 펀드결성 등을 가능하게 되었다.⁶⁴⁾ 그러나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도 농·임산물

63) 김종천, 앞의 글 참조

64) 김종천, 앞의 글 참조

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자원개발 사업법」과 「해외농업개발협력법」간의 적용 범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그 외 민간기업의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활성화하고, 공기업과 민간기업간 협력 강화를 통한 대형 프로젝트 확보, 자원부국과의 전략적인 에너지자원 협력 강화, 해외자원개발서비스 기업의 육성 등 해외 원자재 개발 사업에 대한 성과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의 필요성이 나오고 있다. 그 외 자원 부국으로 우리나라와의 원자재 개발 협력 사업 추진 대상 국가에 대한 관련 정책 및 법제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 수집과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제 3 장 MAVINS의 원자재 개발 협력 동향

제 1 절 개 관

MAVINS 6개 국가의 원자재 상황, 우리나라와의 원자재 개발 협력 사례 등을 살펴보았다. 해외자원개발협회에서 제공하는 각 국가별 원자재 매장량과 생산량, 투자 예산 현황도 참고로 정리하였다. 멕시코와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대한 석유, 광물 개발 투자는 매우 적은 규모이지만, 이에 반해 호주, 인도네시아, 베트남과의 개발 협력 규모는 큰 편이다. 그러나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들에 비해 우리나라의 참여 규모는 매우 적은 편에 속한다. 이하에서는 국가별로 구체적인 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제 2 절 MAVINS의 원자재 개발 협력 동향 분석

I. 멕시코

1. 원자재 현황⁶⁵⁾

| | | | | |
|----------|-----|-----------------------------|-------------|------------------------------|
| 석유 가스 | 매장량 | 원유: 117억 배럴 가스: 16.8 Tcf | 생산량 (일일) | 원유: 2,979천 배럴 가스: 5.6 Bcf |
|----------|-----|-----------------------------|-------------|------------------------------|

65)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0(석유가스), USGS Mineral Commodity Summaries 2010(광물 매장량), World Metal Statistics Yearbook 2010, 멕시코 지질연구소(광물 매장량), 해외자원개발정보시스템(<http://www.ikoredis.or.kr>) 재인용(2012.10.5.)

제 3 장 MAVINS의 원자재 개발 협력 동향

| | | | | |
|-----|-----|--|-------------|---|
| 광 물 | 매장량 | 동: 38,000천 톤 은: 37,000 톤 아연: 14,000천 톤 금: 1,400 톤 철광석: 700백만 톤 망간: 4,000천 톤 몰리브덴: 135천 톤 | 생산량 (연간) | 동(광산): 238.4천 톤 아연(광산): 458천 톤 몰리브덴(광산): 9.9천 톤 금(광산): 55.5 톤 은(광산): 3,256.3 톤 석탄: 10,403천 톤 |
|-----|-----|--|-------------|---|

2. 원자재 개발 협력 개요⁶⁶⁾

| 구 분 | 진행사업 | | 종료사업 | | 계 | |
|---|---------------------------------|--------------|------|----------|---------|----------|
| | 한국측 | 용자지원 예특용자 | 한국측 | 용자 지원 | 한국측 | 용자 지원 |
| 석유가스 ('11.12월 말 기준, 단위: 천불) | | | | | | |
| 광물 (단위: 천US\$) | 146,773 | 9,140 | | | 146,773 | 9,140 |
| 주요 진출현황 | - 기타 : 멕시코 노르테2 가스복합 입찰사업(한국전력) | | | | | |

66) 해외자원개발정보시스템(<http://www.ikoredis.or.kr>) 재인용(2012.10.5.)

3. 원자재 개발 협력 동향⁶⁷⁾

멕시코는 한반도의 9배에 달하는 넓은 국토를 갖고 있고, 석유생산 세계 1위, 은 생산 세계 1위일 정도로 풍부한 부존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지리적으로도 북미와 남미를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국가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점은 매력적인 對멕시코 투자요인이다. 2011년말 기준 對멕시코 무역규모는 약 120억 달러에 이르는데, 수출이 약 97억 달러이고 수입이 약 23억 달러이므로 한국이 약 74억 달러 흑자인 상황이다. 한국은 평판디스플레이, 승용차, 자동차 부품, 칼라TV 등의 공산품을 주로 수출하고 있고, 수입 품목은 기타 금속광물, 아연광, 고철 등 원자재의 수입이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

멕시코광업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전체 국토 매장지역의 20%만 채굴이 이뤄지고 있어 아직 원자재 개발의 여지는 충분하다고 한다. 또한 생산광물 중 은을 비롯한 17개 광물이 세계생산량 10위권을 기록하고 있고, 다양한 광물이 상당량 매장돼 있어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2003년 이후 국제 광물시세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기 때문에 광업의 성장세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광물 투자가 매력적인 점은 투자광산의 생산지분이 한국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원공급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한국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이점(利點)이 있다.

한국의 멕시코 광업진출은 활발하지 않다. 1978년부터 2002년까지의 기간 동안 멕시코 광산 조사는 총 6 차례 실시되었을 뿐이고, 2004년 소노라 주의 금·동 광산 탐광조사를 실시했을 뿐이다. 2011년 주 멕시코 대사관은 소노라주 Armando Cordova 경제부 광업국장을 면담,

67) 김정현, 신흥시장국(MAVINS)의 원자재 개발 협력 법제 연구(II) -멕시코- 재인용 및 요약

주내 광업 프로젝트 현황 및 계획 등을 파악한 후 한국은 해외에서의 광물 수입뿐만 아니라 현지 투자도 모색하고 있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다. 그리고 멕시코내 대표적인 광업 지역인 소노라주와의 협력 증진을 희망한다는 뜻을 전했다.

멕시코광업에 투자하는 외국인기업은 캐나다와 미국 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NAFTA체결과 지리적인 이점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캐나다의 기업이 전체의 80%에 육박한다. 따라서 아직까지 한국의 멕시코 원자재개발에 있어서 뚜렷한 성과를 거둔 것은 없다. 최근 들어 한국의 멕시코 원자재 개발에 있어서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볼레오 프로젝트(BOLEO Project)이다. 한국광물자원공사, LS-니꼬, 현대하이스코, SK Networks, 일진머티리얼즈 등으로 구성된 한국 컨소시엄이 캐나다 바하마이닝(Baja Mining)사가 보유한 멕시코 볼레오 동광 지분 30%를 약 2460억원(246만달러)에 인수해서 원자재 개발사업에 참여한 것이다.

멕시코의 원자재 개발사업은 미국과 캐나다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들 기업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다. 볼레오 동광의 매장량은 약 2억8000만t으로, 2010년부터 24년간 매년 4만1000t을 생산하고, 이 가운데 우리 기업들이 매년 1만2000t을 갖게 되는 것이 당초 계획이었다.

그러나 멕시코 구리광산 개발 프로젝트가 자금난으로 좌초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한국 컨소시엄이 자금난 타계를 위한 추가적인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멕시코 최대 규모 구리광산인 볼레오(Boleo) 동광 개발 프로젝트의 지분 30%를 보유한 한국 컨소시엄은 최근 이 프로젝트의 나머지 지분 70%를 보유한 캐나다 바하마이닝(Baja Mining)사의 지분을 추가 매입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바하마이닝사는 최근까지 극심한 자금난으로 파산설이 나돌고, 주가가 한

달 사이 70% 이상 폭락하는 등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광산 개발 사업에 추가적인 투자를 할 수 없어 사업 자체가 위기에 직면했다고 한다.

이 프로젝트는 당초 2013년 상반기까지 1조4천억원을 투입해 발전소와 도로, 항구, 통신 등 광산 개발에 필요한 플랜트 시설을 건설하고 하반기부터 생산에 들어가 23년간 연간 동 3만8천t, 코발트 1천600t을 생산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2011년 6월에는 현지에서 플랜트 기공식을 열었다. 볼레오 광산은 현재 개발이 50% 가량 진척된 상태이며, 현재까지 국내 컨소시엄은 이에 2천억원~3천억원에 이르는 자금을 투자한 것으로 추정된다.

II. 호 주

1. 원자재 현황⁶⁸⁾

| | | | | |
|----------|-----|---|-------------|--|
| 석유 가스 | 매장량 | 원유: 42억 배럴 가스: 108.7 Tcf | 생산량 (일일) | 원유: 559천 배럴 가스: 4.1 Bcf |
| 광 물 | 매장량 | 니켈: 26,000천 톤 철광석: 20,000백만 톤 석탄: 76,200백만 톤 리튬: 580천 톤 동: 24,000천 톤 희토류: 1,600천 톤 보크사이트: 6,200백만 톤 | 생산량 (연간) | 니켈: 165천 톤 동: 900천 톤 석탄: 409.2백만 톤 금: 220 톤 철광석: 370백만 톤 우라늄: 7,942 톤 아연: 1,290천 톤 |

68)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0(석유가스), USGS Mineral Commodity Summaries, 2010-2011,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0(이상 광물 매장량), USGS Mineral Commodity Summaries 2010, WBMS World Metal Statistics Yearbook 2010(이상 광물 생산량), 해외자원개발정보시스템(<http://www.ikoredis.or.kr>) 재인용(2012.10.5.)

2. 원자재 개발 협력 개요

| 구 분 | 진행사업 | | 종료사업 | | 계 | |
|---|---|---------|---------|--------|-----------|---------|
| | 한국측 | 용자 지원 | 한국측 | 용자 지원 | 한국측 | 용자 지원 |
| 석유가스 (’11.12월 말 기준, 단위 :천불) | 1,054,525 | 3,300 | 66,803 | 28,852 | 1,121,328 | 32,152 |
| 광 물 (단위 : 천US\$) | 2,663,948 | 230,211 | 112,771 | 40,938 | 2,776,719 | 271,149 |
| 주요 진출현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유가스: WA-34-R, WA-425-P/WA-431-P 해상광구(탐사/SK이노베이션), NT/P 80 광구(탐사/삼성물산), GLNG(개발/가스공사), PEL 103 육상광구(생산/서울도시가스) - 광물: 와이웅 유연탄광(개발/광물공사, 경동, SK네트웍스), API 철광(탐사/포스코), 토가라노스 유연탄광(개발/광물공사, 동부건설, 효성상사, SK네트웍스), 글레니스크릭-II 유연탄광(생산/포스코), 나라브리 유연탄광(생산/대우Int'l, 광물공사), 뉴팩 유연탄광(생산/포스코), 드레이톤 유연탄광(생산/대성산업, 현대종합상사), 마운트가넷 연아연광(생산/고려아연), 마운트소리 유연탄광(생산/포스코), 맥아더 유연탄광(생산/포스코), 미네르바 유연탄광(생산/광물공사), 샤본 유연탄광(생산/SK네트웍스), 몰라벤 유연탄광(생산/광물공사, 한국전력, 남동, 중부, 서부, 남부발전, 한화), 스프링베일 유연탄광(생산/광물공사, SK네트웍스), 양구 스플레이스 유연탄광(생산/광물공사, SK네트웍스), 엔샴 유연탄광(생산/LG상사), 잭힐스 철광(생산/포스코), 카보로우다운즈 유연탄광(생산/포스코), 코카투 유연탄광(생 | | | | | |

| | |
|--|--|
| | <p>산/광물공사, SK네트웍스, 한국전력, 동서발전, 포스코), 클라렌스 유연탄광(생산/SK네트웍스), 타운스빌 연아연광(생산/고려아연), POSMAC 철광(생산/포스코), 로이힐1 철광(탐사/포스코, STX, STX에너지), 록햄튼 마그네사이트광(탐사/경동), 마리 우라늄광(탐사/광물공사, 대우Int'l, LG상사), 말보로 마그네사이트광(탐사/경동), 바이롱 유연탄광(탐사/한국전력), 반다나 유연탄광(탐사/삼탄), 볼리아 동광(탐사/광물공사, 고려아연, 한화), 아테나 유연탄광(탐사/광물공사), 칼라보나 우라늄광(탐사/SK네트웍스), 타로보라 유연탄광(탐사/광물공사, SK네트웍스), 톰바웨스트 동광(탐사/SK네트웍스), 화이트클리프 니켈광(탐사/광물공사, 대우Int'l)</p> |
|--|--|

3. 원자재 개발 협력 동향⁶⁹⁾

호주는 전통적으로 자본수입국으로서 광대한 국토와 자원에 비하여 투자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외국의 자원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연방정부와 주차원의 노력이 있어왔다. 호주 외국인 투자 통계를 보면 2008년과 2009년을 기준으로 대 호주 전체 외국인 투자는 A\$ 1667억이며 그 중 광업부문에 대한 투자가 A\$ 906억에 이르며 전체의 약 54%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주요 투자 국가는 미국, 중국, 일본, 영국의 순서이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의 가파른 투자증대가 주목된다. 중국은 이미 세계 각국에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호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즉 2005년부터 호주에 대한 투자를 시작하여 특히 광업부문에 대한 투자를 집중하였다. 2008년과 2009년의 투자금액은 미

69) 김성호, 신흥시장국(MAVINS)의 원자재 개발 협력 법제 연구(III) -호주- 재인용 및 요약

국에 이은 2위지만 광업부문에서는 이미 미국이나 일본을 앞지르기 시작하였다. 일본 역시 일찍부터 호주에 대한 자원투자를 추진하였으며 특히 West Australia의 Robe River 철광석사업은 1962년부터 착수하여 1972년에 생산을 개시하였으며 이후에도 철광석분야의 주요 수입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의 대 호주 자원개발은 매우 오랜 시간에 걸친 철저한 준비와 투자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견고한 사업포트폴리오를 마련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대 호주 자원투자는 일본, 중국과 비교하여 아직은 매우 미흡한 단계이다.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호주에 대한 자원개발투자는 8개 광종, 43개 사업에 누적투자액은 A\$ 1억 92백만에 그치는 실정이다. 이에 비하여 일본은 2003년부터의 누적투자액이 A\$ 26억 494백만에 이르며 중국 역시 같은 기간 동안 A\$ 40억 881백만에 이르러 일본을 앞지르고 있다. 특히 중국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투자금액이 그 이전의 투자금액을 상회함으로써 급속한 대 호주 자원투자를 실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전체 외국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본다면 전체 투자액 중에서 대 호주 투자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본다면 약 32%로서 상당히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2002년 이후로는 연평균 160%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호주에서 수입하는 자원은 광물에 집중되고 있음은 통계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즉 광종별로 보면 석탄이 전체 투자의 67%이며 그 뒤를 우라늄, 아연 각각 6%, 동과 니켈이 각각 3%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석탄은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수입하는 물량의 거의 55%로서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업별로 수입 주체를 보면 포스코가 호주 투자액의 33%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려아연, 광물자원공사가 그 뒤를 잇고 이 3개 주체가 호주 수입액의 60%를 이루고 있다.

Ⅲ. 베트남

1. 원자재 현황⁷⁰⁾

| | | | | |
|----------|-----|---|-------------|---|
| 석유 가스 | 매장량 | 원유: 45억 배럴 가스: 24.1 Tcf | 생산량 (일일) | 원유: 345천 배럴/일 가스: 0.8 Bcf/d |
| 광 물 | 매장량 | 보크사이트: 2,100백만 톤 석탄: 150백만 톤 티탄철광: 1,600천 톤 | 생산량 (연간) | 보크사이트: 95천 톤 동: 5.8천 톤 주석: 5.4천 톤 아연: 45.6천 톤 크롬: 37.1천 톤 석탄: 45백만 톤 |

2. 원자재 개발 협력 개요

| 구 분 | 진행사업 | | 종료사업 | | 계 | |
|------------|--|----------|--------|----------|-----------|----------|
| | 한국측 | 용자 지원 | 한국측 | 용자 지원 | 한국측 | 용자 지원 |
| 석유 가스 | 3,060,381 | 293,872 | 25,047 | 21,492 | 3,085,428 | 315,364 |
| 광 물 | | | 2,129 | 2,744 | 2,129 | 2,744 |
| 주요 진출현황 | - 석유가스: 122 해상광구(탐사/GS칼텍스), 123 해상광구(탐사/SK이노베이션), 15-1/05 해상광구(탐사/SK이노베이션), 15-1 해상광구(생산/석유공사, SK이노베이션), 11-2 해상 | | | | | |

70)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0(석유가스), USGS Mineral Commodity Summaries 2010,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0(광물 매장량), 해외자원 개발정보시스템(<http://www.ikoredis.or.kr>) 재인용(2012.10.5.)

| | |
|--|--|
| | <p>광구(생산/석유공사, LG상사, 대우Int, 현대종합상사, 삼환, 서울도시가스, 대성산업) - 기타: 응이손II 석탄화력 발전사업 추진 중(한국전력)</p> |
|--|--|

3. 원자재 개발 협력 동향⁷¹⁾

베트남은 외환유동성 문제를 갖고 있지만 성장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한국에게는 중요한 경제협력국으로 평가되고 있다. 8,600만 명의 인구 중에서 45%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 공업화 과정에서 값싼 노동력 활용이 가능하고, 중국의 대량조립형 보다 중간 규모의 경쟁력 있는 부문을 육성한다면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특히 그러하다.

베트남과 한국과의 관계는 1992년 12월 22일 수교 이후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있다. 양국은 2001년 베트남 국가주석이 방한 시 양국관계를 ‘포괄적 동반자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고 실질적 지원을 위해 베트남을 중점 협력대상 국가로 지정, 무상원조를 지속적으로 확대 제공해오고 있다. 2004년과 2006년 두 차례에 걸친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과 2008년 베트남 총리의 방한 및 국회의장의 베트남 답방을 계기로 양국관계가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한국의 對베트남 경제협력은 무역에서는 대규모 무역수지 흑자를 창출하고, 투자에서는 제조업과 부동산 개발이 주를 이룬 것이 특징이다.

한국이 중국에 비해 수출품목의 다변화가 부족하고, 일본에 비해서는 과도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

71) 김현희, 신흥시장국(MAVINS)의 원자재 개발 협력 법제 연구(IV) -베트남- 재인용 및 요약, 해외자원개발정보시스템(<http://www.ikoredis.or.kr>) 재인용(2012.10.5.)

는데, 베트남과 장기적인 호혜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대외불균형이 큰 베트남에 대해 일본과 같이 무역수지 균형을 목표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베트남으로부터 광물자원 등을 수입하는 것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원자재 개발협력과 관련하여서는 「한-베트남 자원협력위원회」의 구성과 교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래 자원협력위원회는 1979년 인도네시아와 처음 구성한 이래 2002년까지 약 7개국과 위원회를 구성하여 상호 협력사항들을 연례적으로 논의하여 오고 있으며, 2003년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자원외교 정책으로 2007년까지 19개국과 추가로 자원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2007년 총 25개국과 자원협력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또, 자원협력위원회와 함께 2004년부터 2006년까지 17개국과 정상자원외교를 추진하였다.

베트남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부는 2001년 2월부터 한-베 자원협력위원회를 설치하여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여 오고 있는데, 2010년 ‘제7차 한·베트남 자원협력위원회’에서 양국 간 에너지·자원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하면서 베트남 북부 내안지역의 희토류 광상을 공동 탐사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이를 위해 한국 지질자원연구원과 베트남 지질자원연구소간 연구조사협력양해각서(ROA)를 체결하였다. 가장 최근인 2012년 3월에는 베트남 산업무역부와 ‘한-베트남 에너지자원분과위원회’를 갖고, 한-베트남 에너지사업 협력 강화를 논의하였다.

현재 정부는 석유 및 천연가스 등이 풍부한 베트남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진출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 정부는 페트로베트남(PETROVIETNAM)과 협력하여 베트남 및 제3국에서의 공동 참여기회를 모색하고 있으며, 자원협력위원회를 통하여 양국의 협력프로젝트를 발굴 및 추진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한-베트남의 FTA 협상에 있어서 양국간 경제협력 분야에 에너지·광물자원의 협력을 포함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IV. 인도네시아

1. 원자재 현황⁷²⁾

| | | | | |
|------|-----|---|-------------|--|
| 석유가스 | 매장량 | 원유: 44억 배럴 가스: 112.5 Tcf | 생산량 (일일) | 원유: 1,021천 배럴 가스: 7 Bcf |
| 광 물 | 매장량 | 주석: 800천 톤 동: 31,000천 톤 니켈: 3,200천 톤 금: 3,000 톤 석탄: 4,328백만 톤 | 생산량 (연간) | 보크사이트: 14,358천 톤 동: 970.2천 톤 니켈: 190.6천 톤 석탄: 253백만 톤 금: 115.4 톤 |

2. 원자재 개발 협력 개요

| 구 분 | 진행사업 | | 종료사업 | | 계 | |
|----------|-----------|----------|--------|----------|-----------|----------|
| | 한국측 | 용자 지원 | 한국측 | 용자 지원 | 한국측 | 용자 지원 |
| 석유 가스 | 1,754,257 | 160,710 | 44,914 | 29,864 | 1799,171 | 190,574 |
| 광 물 | 1,213,820 | 297,276 | 20,906 | 282 | 1,234,726 | 297,558 |

72)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0(석유가스), USGS Mineral Commodity Summaries 2010(광물 매장량), World Metal Statistics 2010, BP Statistiscal Review of World Energy Report 2010(이상 광물 생산량), 해외자원개발정보시스템(<http://www.ikoredis.or.kr>) 재인용(2012.10.5.)

| | |
|--------------------|--|
| <p>주요 진출현황</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유가스: NEM I 해상광구(탐사/석유공사, SK이노베이션, GS, 대성산업), NEM II 해상광구(탐사/석유공사, GS, 대성산업), Tuna PSC 광구(탐사/GS칼텍스), Krueng Mane 해상광구(탐사/가스공사), 워캄 해상광구(탐사/석유공사, GS), Bangko 육상광구(개발/SK이노베이션), 동기세노로 LNG (개발/가스공사), SES 해상광구(생산/석유공사), Cepu 육상광구(생산/대우조선해양 ENR, 대우조선해양, 지엔지홀딩스), 서마두라 해상광구(생산/코데코에너지), 폴랭 해상광구(생산/남방개발) - 광물: 맘팔라 유연탄광(생산/모라리소스, 우림자원개발), 아다로 유연탄광(생산/한국전력, 남동발전), 파시르 유연탄광(생산/삼탄), MPP유연탄광(생산/LG상사), 뚜뚜이 유연탄광(개발/LG상사), 바얀리소스 유연탄광(생산/한국전력), 타식망간광(생산/비올라이), 삼보자 유연탄광(생산/대해엔지니어링, 강덕재, 록손에너지홀딩스), 스루얀 동광(개발/아토즈코리아), 구농마스 금광(탐사/지엠티자원개발), 카푸아스 유연탄광 탐사사업 추진중(광물공사) |
|--------------------|--|

3. 원자재 개발 협력 동향⁷³⁾

인도네시아는 주요 경제전문기관이 모두 ‘Post-BRICs’시대의 선두 주자로 지목하고 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는 금융위기 이후 빠른 경기회복세를 보이며 세계의 주요 소비 및 투자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① 풍부한 인구 및 자원을 바탕으로 한 성장잠재력, ② 新외국인 투자 환경 조성 및 ③ G20 가입에 따른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증가 등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우리 정부도 인도네시아와의 경제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으며, 양국 간의 교역 규모도

73) 김범준, 신흥시장국(MAVINS)의 원자재 개발 협력 법제 연구(IV) -인도네시아 -, 재인용 및 요약

2001년 이후 매년 14% 이상 증가해 왔고, 현 추세대로라면 2020년에는 1,000억 달러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역의 내용 면에서도 인도네시아의 對한국 수출은 원유, 가스, 석탄 등 에너지 자원에 집중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안정적인 원자재 및 자원 확보를 위한 석유·가스·광물자원 개발 등의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바로 이 점이 인도네시아의 주요 원자재 개발 협력 법제와 투자 법제의 연구가 큰 시사점을 갖는 이유라 하겠다.

한·인도네시아는 부문별로 다양한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 예정에 있다. 환경분야로는 자카르타 인근의 오염된 강 복원사업, 발리주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서부자바 지역 정수시설 및 인프라 구축 사업이 있다. 에너지·자원분야로는 압축천연가스(CNG) 방식의 중소 가스전 개발 및 수송·저장시설과 발전소 건설, 술라웨시 니켈광산 개발 및 제련공장 건설, 동 제련공장 건설 운영 및 기술제공 협력, 석유가스전 신규 동동탐사 및 개발사업 참여, 석탄층 메탄가스(CMB)광구 개발, 국내 기업의 민자발전(IPP)사업 진출확대를 위한 협력, 광해방지 공동 협력 등이 있다. 농림·수산분야로는 벼농사 농업기계화단지 조성사업, 조림사업, 농공산업복합단지(MIC) 사업이 있다. 산업분야로는 POSCO 일관제철소 건설 관련 인허가, POSCO 제철소 건설(\$60억), 한국타이어 공장설립(\$12억) 및 호남석유화학 크래커 Complex 조성(\$40~50억)을 위해 조세 인센티브 제공방안 검토, 국내 조선사와 DKB社 간 바탐지역 조선소설립 및 선박건조 협력 MOA 체결 사업 등이 있다. 건설·인프라 분야로는 순다대교, 남수마트라 철도 및 항만 개발사업 등이 있다. 무역투자분야로는 2020년 교역액 1,000억 달러 달성 전략이 있다. 정책·개발금융분야로는 협력사업 지원을 위해 인도네시아 재무부와 한국수출입은행 간 10억 달러 규모의 기본 여신약정 체결 추진, 양국 정책금융기관 협의체 구성 방안 등이 추진되고 있다.

V. 나이지리아

1. 원자재 현황⁷⁴⁾

| | | | | |
|----------|-----|------------------------------|-------------|--|
| 석유 가스 | 매장량 | 원유: 372억 배럴 가스: 185.4 Tcf | 생산량 (일일) | 원유: 2,061천 배럴 가스: 2.4 Bcf |
| 광 물 | 매장량 | 니오븀: 60,000톤 탄탈륨: 7,000톤 | 생산량 (연간) | 연(광산): 10.6천 톤 주석: 2.4천 톤 철광석: 9,000 톤 |

2. 원자재 개발 협력 개요

| 구 분 | 진행사업 | | 종료사업 | | 계 | |
|----------|---------|----------|------|----------|---------|--------|
| | 한국측 | 용자 지원 | 한국측 | 용자 지원 | 한국측 | 용자지원 |
| 석유 가스 | 152,024 | 70,266 | o | o | 152,024 | 70,266 |
| 광 물 | 3,000 | | | | 3,000 | |

74)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0(석유가스), USGS Mineral commodity Summaries 2002(광물 매장량), WBMS World Metal Statistics Yearbook 2009, BGS Africa Mineral Production 2003-2007(광물 생산량), 해외자원개발정보시스템(<http://www.ikoredis.or.kr>) 재인용(2012.10.5.)

| | |
|------------|---|
| 주요 진출현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유가스: OPL321, OPL323 해상광구(탐사/석유공사, 한국전력, 대우조선 해양, 지티엔알) - 광물: 갈리나 연아연광(생산/엘제이링크) |
|------------|---|

3. 원자재 개발 협력 동향⁷⁵⁾

나이지리아는 1960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였고, 서아프리카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구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은 약 1억 6천만명이다. 석유산출량이 풍부한 니제르 삼각주를 포함하고 있어 아프리카 최대 산유국이며, OPEC 기준 세계 7위이다. 확인 매장량은 약 370억 배럴, 추정 매장량은 600억 배럴이다. 2010년 기준 일일 246만 배럴의 석유를 생산하고 있으며, 국내 소비분 약 28만 배럴을 제외하고는 수출하고 있으며, 최근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 분야에 대한 개혁을 추진 중이다.

천연가스의 확인매장량은 약 5조 3천억m³로 주로 니제르 삼각주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2009년 230억m³를 생산하여 그 중 국내소비용 70억m³를 제외한 나머지는 수출한다. 최근 천연가스 산업에 대한 발전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나이지리아 상업용 가스시장 기반 조성도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대우건설이 나이지리아 플랜트 시장에 처음 진출하였으며, 이후 현대중공업 및 대우해양조선 등이 원유 및 가스산업을 중심으로 플랜트 산업에 진출하였다. 2005년 8월에는 한국석유공사 컨소시엄이 나이지리아 해상 유전광구 2개(OPL321, OPL323)에 대해서 탐사권을 획득하였다. 당시 컨소시엄의 구성은 석유공사, 한전, 대우조선해양, GTNR로 구성되었으며, 우리나라가 60%의 지분을, Equator가

75) 최승필, 신흥시장국(MAVINS)의 원자재 개발 협력 법제 연구(V) -나이지리아-, 재인용 및 요약

30%, 나이지리아 현지기업이 10%를 보유하는 지분구성이 이루어졌다. 또한 2006년 12월에는 우리나라와 나이지리아 정부간에 나이지리아 생산유전 확보 및 철도건설 지원을 중심으로 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포스코 등 우리 기업들이 참여하였다. 그러나 양자 모두 성공적인 결과를 얻지는 못하였다.

한편, 2007년에는 한국전력이 라고스의 Egbin 발전소의 가스터빈 교체 프로젝트를 수주하였으며, 성공적으로 나이지리아에서 투자수익을 창출해 내고 있다. 대우해양조선 역시 비교적 성공적인 사례로서 다운스트림 산업인 석유운송분야에 진출하였는바, NNPC와의 합작기업(JV)인 NIDAS(Nigeria-Dawoo Shipping Ltd.)를 설립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합작에는 메이저 석유회사들의 영향력을 줄이고, 나이지리아의 토착자본의 활용이라는 나이지리아 정부의 정책적 목표와 우리의 투자 의도가 부합한 점이 크게 작용하였다.

나이지리아에 대한 우리나라의 투자는 정부간 자원외교에 힘입어 투자 금액을 기준으로 2006년, 2007년, 2008년에 각각 116,595천달러, 25,578천달러, 10,306천달러가 이루어진 바 있었으나, 잇단 투자성과의 미흡으로 2008년에 10,306천달러, 2009년에 6,367천달러, 2010년에 6,331천달러로 감소세에 있다.

그러나 자원외교 차원에서의 대규모 사업을 제외한 일반적인 사업부문에서의 외국인투자는 저조한 편이다. 이는 나이지리아의 투자환경에 대한 신뢰부족, 나이지리아에 대한 정보의 부족에 따른 투자결정에서의 확신부족 등이 주요한 이유이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2007년 나이지리아 광구 개발권을 획득한 적이 있었지만 당시 계약조건에 다운스트림에 대한 개발을 패키지 조건으로 한 것으로 나이지리아의 인프라 환경상 양자를 동시에 정해진 시간에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결국 시한에 따른 사업추진의 어려움으로 광구개발권이 박탈된 사례가 있었다.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최대의 자원부국으로서 투자처로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우리의 대 나이지리아 투자는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 이유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나이지리아의 정정불안, 낮은 신뢰도, 인프라 부족 및 제반규제에 있지만, 우리 기업이 지나치게 단기위주의 수익전략을 구사한다는 점, 그리고 국가적 차원의 자원외교가 경쟁국인 중국 등에 비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VI. 남아프리카공화국

1. 원자재 현황⁷⁶⁾

| | | | | |
|--------|-----|---|-------------|---|
| 광 물 | 매장량 | 크롬: 130백만 톤 다이아몬드: 70백만 캐럿 금: 6천 톤 철광석: 1,000백만 톤 망간: 120백만 톤 니켈: 3,700천 톤 백금족: 63,000 톤 바나듐: 3,000천 톤 질코늄: 14백만 톤 하프늄: 280천 톤 | 생산량 (연간) | 동: 116.1천 톤 아연: 28.2천 톤 니켈: 34.4천 톤 금: 205.9 톤 은: 77.3 톤 안티모니: 2,560 톤 지르코늄: 395천 톤 철광석: 53,000천 톤 크롬: 8,500천 톤 |
|--------|-----|---|-------------|---|

76) USGS Mineral commodity Summaries 2010-2011(매장량), USGS Mineral commodity Summaries 2010,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0(이상 생산량), 해외자원 개발정보시스템(<http://www.ikoredis.or.kr>) 재인용(2012.10.5.)

2. 원자재 개발 협력 개요

| 구 분 | 진행사업 | | 종료사업 | | 계 | |
|----------------|--|------|------|------|--------|------|
| | 한국측 | 응자지원 | 한국측 | 응자지원 | 한국측 | 응자지원 |
| 석유 가스 | | | | | | |
| 광 물 | 16,732 | | | | 16,732 | |
| 주요 진출 현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물 : 블락플라츠 유연탄광(탐사/광물공사) - 기타 : 넵툰지역 400kV 송전망 EPC 사업 입찰 추진 중(한국전력) 카니샤 석탄화력 입찰사업 추진 중(한국전력) | | | | | |

3. 원자재 개발 협력 동향⁷⁷⁾

남아공은 세계적인 광물자원 부존국가로 에너지의 경우 석유,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이 부존되어 있는데, 석유의 매장량과 생산은 적은 편이나 석탄을 이용한 합성유(CTL) 생산으로 남아공 석유수요의 40%를 충당하고 있다. 석탄의 부존은 세계 4위권으로 풍부히 매장되어 있고 생산하여 국내에서 사용하고 남는 막대한 물량은 수출하는 세계 2위의 석탄수출국이며, 천연가스는 자급자족하고 있다.

일반광물 부문에서는 여러 광종의 매장량이 풍부하며 많은 광종의 매장량이 세계 순위 상위권에 속한다. 특히 백금족 금속의 경우 세계 매장량의 88.7%가 매장되어 있다. 다이아몬드, 백금족 금속 및 망간, 바나듐과 같은 페로합금(페로 망간, 페로 바나듐 등)의 세계 최고 생산국이면서, 특히 백금족 금속, 철광석, 석면, 망간광, 페로크롬, 크롬광, 바나듐의 주요 수출국에 해당한다.

77) 손현·서광욱, 신흥시장국(MAVINS)의 원자재 개발 협력 법제 연구(V) -남아프리카공화국-, 재인용 및 요약

남아공의 경우 현재, 정치면에서 여당 주도의 안정적 정치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SADC 주도국으로서 남아공의 위상이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다만, Zuma 대통령의 권력 유착 비리의 만연, 소득 불균형 심화로 인한 흑흑 갈등의 고조가 불안요소로 여겨진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투자 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개선 가능성이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한국의 경우 한국광물자원공사, 포스코 등이 광물 개발 사업에 합작 투자 등의 형식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편, 남아공의 경우 전통적으로 유럽 국가들과의 에너지·광물자원 협력을 강화하여 왔으나 최근 중국·러시아 등과의 협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중국, 러시아의 진출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자국의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에너지·광물자원 확보를 위해 최근 남아공 광산개발 투자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한편,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힘입어 지난 2002년 이후 남아공의 광물자원 개발수요가 확대되어 광물자원 개발투자비용이 증가하는 면을 보이고 있다.

한국광물자원공사 남아공사무소 자료에 따르면 광물자원공사에서 현재 신규 투자 기회를 발굴하고, 사업화와 연계시킨 건수는 사업 발굴 21건, 현지조사 10회, 사업화 2건이다. 또한 기존 사업의 효율적 관리 지원을 통해 조기 안정화를 위한 지원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광물자원공사, 현대차, 삼성물산, GS칼텍스, 대우조선해양, 아주산업 등이 참여하여 2011년 12월 1일 체결한 남아공 잔드콥스드리프트(희토류) 탐사 사업 계약이 있다. 참여지분은 1단계 10%(PEA공시), 2단계 1-(DFS완료) + 회사 지분 10%(옵션)이다. 또한 매장량과 생산량이 세계 1위인 남아공의 망간광 신규 사업을 한국광물자원공사와 동부메탈이 남아공 Northern Cape州 Kalahari 지역에 추진 중에 있다. 또한 포스코는 '96년 Poschrome 설립(요하네스버그 소재) 이후 스테인리스 스틸의 원료가 되는 Ferro-chrome을 생산, 전량을 국

내에 도입하였고, Jupiter사의 지분 18%를 인수하는 Tshisips 망간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현재 포스코는 남아공에 아프리카 법인을 설립하고,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나갈 예정에 있다.

한편, 2012년 세계 3위 백금 생산업체인 Lonmin社의 Marikana 광산 파업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 1, 2위 백금 생산업체인 Anglo America Platinum社, Impala Platinum社의 Rustenburg 광산 및 금 생산업체인 Gold Field社의 West Rand 광산에서도 임금 재협상을 요구하는 파업이 전개 되는 등 남아공 광산업계에 파업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흑인 경제 육성 정책(BEE), 친노동 정책, 낮은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과도한 규제 등과 함께 광산업 분야의 발전과 해외 자본 투자 유치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의 남아공에 대한 협력관계나 투자는 매우 낮은 상황이다. 그러나 원자재 개발 가격 상승 이후 신흥 자원개발 시장으로서 남아공의 중요성과 성장 잠재력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원자재 개발 투자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제 3 절 검 토

멕시코의 경우 석유가 매우 풍부한 국가이지만, 석유와 천연가스의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가 금지되어 있어, 은과 같은 광물 투자에 집중되어 있다. 한국은 한국광물자원공사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캐나다 바하마이닝(Baja Mining)사가 보유한 블레오 동광 지분 약 30%를 인수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호주의 경우 일본, 중국에 비해 매우 미흡한 규모이지만, 우리나라 전체 해외 투자 금액을 기준으로 본다면, 호주에 대한 투자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32%로서 매우 높은 편이다. 그 중 석탄이 전체 투자의 67%이며, 민간 기업으로 포스코가 호주 투자액의 33%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광물자원공

사 및 고려 아연 3개 주체가 호주 수입액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베트남의 경우 외환유동성 문제를 갖고 있지만 성장 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중요한 경제협력국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부는 석유 및 천연가스 등이 풍부한 베트남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페트로베트남(PETROVIETNAM) 및 「한·베트남 자원협력위원회」 등과 관련하여 많은 프로젝트를 모색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에서 원유, 가스, 석탄 등의 많은 원자재를 수입해오고 있다. 인도네시아와 압축천연가스(CNG) 방식의 중소 가스전 개발 및 수송·저장시설과 발전소 건설, 솔라웨이 니켈광산 개발 및 제련공장 건설, 동 제련공장 건설 운영 및 기술제공 협력, 석유가스전 신규 동동탐사 및 개발사업 참여, 석탄층 메탄가스(CMB)광구 개발, 국내 기업의 민자발전(IPP)사업 진출확대를 위한 협력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나이지리아의 경우 한국석유공사 컨소시엄이 해상 유전광구 2개(OPL321, OPL323)에 대한 탐사권을 획득한 사례가 있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에도 광물자원공사 컨소시엄이 체결한 희토류 탐사사업 계약, 포스코의 망간 프로젝트 등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최대의 자원부국으로 투자처로서의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낮은 신뢰도, 인프라 부족, 흑인 육성 정책 등 많은 제반 규제 등으로 인하여 협력 사업의 성과가 아직 낮은 편이다.

이러한 각 국가별 협력 사업의 추진 실태, 그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등 자원 협력 성과가 큰 국가들을 벤치마킹 하여 향후 원자재 개발 협력 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볼 시점이다. 우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각 국가별 원자재 개발 법제 및 외국인 투자 관련 법제에 대한 현지 법률 정보의 분석을 시도하였다.

제 4 장 MAVINS의 원자재 개발 협력 법제

제 1 절 개 관

MAVINS 6개 국가의 원자재 개발 관련 정책 및 법제와 외국인 투자 정책 및 법제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정리하였다. 각 국가별로 광업 정책이나 적용 받는 법규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통일적인 정리는 어려움이 있지만, 광물, 석유, 천연가스 및 환경 규제의 내용, 절차,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최대한 자세히 검토해보았다. 해당 국가의 원자재 개발에 대한 법규 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법이나 회사법, 조세법, 노동법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검토도 병행하였다. 각 국가별 세부 내용은 국가별 보고서를 참고하기로 하고, 이하에서는 간단히 요약하여 정리하였다.

제 2 절 MAVINS의 원자재 개발 법제 및 정책 분석

I. 멕시코⁷⁸⁾

멕시코의 원자재 개발 관련 법제는 헌법 제27조과 이를 구체화한 광업법, 석유법 등의 각종 법률들로 구성되어 있다.

멕시코의 경우 광물과 석유·천연가스 개발 정책 및 법제에 관한 연구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광물의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가 허용되어 있지만, 석유와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78) 김정현, 신흥시장국(MAVINS)의 원자재 개발 협력 법제 연구(II) -멕시코- 재인용 및 요약

멕시코의 원자재 개발 관련 법제는 헌법 제27조과 이를 구체화한 각종 법률들로 구성되어 있다. 원자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 중 대표적인 법률로는 광업법이 있다. 멕시코에서 원자재 개발과 관련해 헌법과 법률이 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입장은 국가소유원칙 - 외국인소유부정이라고 할 수 있다. 멕시코에서는 토지와 강을 비롯해 각종 자원이 원칙적으로 국가의 소유에 속하되, 국가가 개인 또는 법인에게 소유권을 양도할 수 있지만 그 대상은 내국인과 내국법인에 한정된다.

이와 같은 멕시코헌법의 입장은 1917년 현행 헌법 제정이후부터 일관된 태도라고 할 수 있다. 1910년 멕시코혁명이 일어난 이후 경제영역에 있어서의 국가의 역할이 증대되었고, 외국인투자를 비롯한 각종 경제정책에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하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즉, 1917년 헌법은 토지의 국가소유권을 인정함으로써 향후 토지개혁을 단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1925년 중앙은행 설립을 통한 금융정책 국가 장악과 1938년 석유산업 국유화 등의 모태가 되었다.

원자재 개발과 관련한 대표적인 법률인 광업법의 내용을 살펴보자면, 헌법 제27조가 강하게 천명하고 있는 국가의 자원에 대한 소유권을 구체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멕시코에서 광업 분야에 대한 민간의 투자는 1988년부터 시작되었는데, 당시에는 외국기업의 참여는 원천적으로 배제되었다. 이후 1991년 4월 헌법 제27조가 부분적으로 개정되어 개인 또는 법인이 국가로부터 토지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광업기업이 독자적으로 광산개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민간이 광업에 전면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된 것은 약 20년 정도에 불과하다.

광업법에 따르면 광물을 포함한 모든 천연자원은 국가 소유이며 광물 업무는 연방정부가 관장하고, 주무부처는 경제부이다. 지질조사 지원, 광업촉진, 법적 확실성 확보, 금융 기술 지원 등 정부가 광물산업

지원하기 위한 강한 정책적 수단을 갖고 있다. 광업권은 멕시코인 또는 멕시코 법인에 대해 50년을 보장하며 또 다른 50년의 연장허가가 가능하다. 광업법 제11조에 따라 법인이 광업권을 가질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법인은 멕시코 내에 주소가 있어야 하고, 외국인 자본 참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광업투자가 가능하다.

먼저 신청한 자에게 우선적 권리를 부여하는 원칙(On the bases of first come first served)하에 방사능 물질을 제외한 모든 광업권을 허용하고 있다. 멕시코 법체제 하에 있는 법인에 대해 외국 자본의 100% 참여를 허용하고 있으며, 광업권의 자유로운 양도를 허용하고 있다. 멕시코 정부는 광업권에 따른 로열티를 부과하지 않으며 다만, 토지사용 및 법인세는 부과하고 있다. 광물로 인한 수익의 자유로운 국제간 이동 허용된다.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광물 투자는 가능하지만, 여전히 멕시코 광업은 자국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멕시코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의 규모가 방대하다 보니 미국과 캐나다 기업들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멕시코 헌법은 석유에 대해서 국가의 독점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원유 및 가스의 탐사, 생산은 멕시코 국영 석유공사(Pemex)만이 수행할 수 있다. 1995년 개정된 석유법(Petroleum Law)은 천연가스 수입, 운송, 저장, 마케팅, 공급을 민간에 개방하였다. 그리고 Pemex의 천연가스 운반 네트워크에 공급할 수 있도록 허가하였으며, 천연가스의 소매 공급도 민간에 개방되었다. 멕시코는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민간의 원자재 투자를 우회적인 방법으로 회피하기 위하여 Multiple Service Contract(MSCs)를 운영하고 있다.

II. 호 주⁷⁹⁾

호주에서의 광업권에 관한 법률은 기본적으로 연방과 주(또는 準주) 각각의 관할에 분할되어 있다. 연방정부에게는 선주민의 토지 소유권, 고용, 환경, 인프라에의 접근, 과세 및 국가소유권에 관한 일정한 권한이 있는 반면 주(또는 준주) 내에서의 광물에 관한 광업활동의 인허가권한과 자원개발에 따른 실시료(loyalty) 및 인지세와 같은 수수료(fee)의 징수 등 과세권한은 해당 주(또는 준주)에 속한다. 따라서 호주에서의 탐사, 채광 등 모든 자원 관련 활동에 대한 법규는 각 주의 개별 사안으로 분류되어 주별 법률이 적용되지만 연방법과의 충돌이 발생할 경우에는 연방법이 우선 적용된다.

이처럼 각 주는 해당 지역의 환경과 상황에 적합한 개별 법규를 가지고 있으나 상호 간에는 유사한 점이 많이 발견된다. 특히 채광 지역이 가장 많은 서호주의 법률은 호주의 자원정책 일반을 이해하는 자료가 된다. 한편 호주의 역외(offshore) 자원의 관리에 대한 연방 차원의 법률로서는 Offshore Mineral Act 1994가 있는데 이에서는 기선(baseline) 3해리 이상의 영해 해저 수역에 매장된 모든 광물자원에 대한 탐사, 발굴, 생산에 대한 전반적 법규로 구성되어 있다.

광업권의 종류는 각각의 지방정부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의 경우 광맥탐색허가권(탐광권, exploration licence), 채광허가권(채광권, mining licence)으로 분류되며 그 중간 단계로서 평가리스/보유권(assessment lease/retention licence)의 부여가 있다. 광업권은 배타적 권리이지만 기존의 토지소유권상에 설정되는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임차료, 보상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탐사, 채광목적으로 그 토지를 이용하게 된다. 이와는 별도로 광산에 부수적인 시설 예컨대 도로나 전선 등을 설치

79) 김성호, 신흥시장국(MAVINS)의 원자재 개발 협력 법제 연구(III) -호주- 재인용 및 요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광업권이 필요하다.

한편 호주의 광물자원 및 석유자원의 개발을 위한 기본적인 정책과 지원은 광물석유자원개발위원회(Ministerial Council on Mineral and Petroleum Resources; MCMPR)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 기구의 설립목적은 광물자원과 석유자원의 지속적 개발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MCMPR은 2001년 호주-뉴질랜드 광물석유자원위원회(Australian and New Zealand Mineral and Energy Council; ANZMEC)를 전신으로 하여 호주정부위원회(Australian Governments; CoAG)에 의하여 설치되었다. 여기에는 연방산업관광자원장관과 각 주(준주 포함)의 광물석유장관이 참석한다.

호주의 광업법은 매우 복잡하다. 호주는 연방국가로서 연방정부와 함께 6개의 주정부(WA, SA, NSW, VIC, TAS, QLD)와 2개의 준주(NT, ACT)로 구성되어 각각의 지방정부는 독자적인 광업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광업에 관련된 법률이 모두 100여 개에 달하며 마찬가지로 다수의 행정규칙이 존재한다. 따라서 광업활동을 규제하는 단일의 성문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좀 더 넓은 의미의 광업에 대한 규제를 열거한다면 연방법은 물론이고 주법, 자치규정, 지방정부의 가이드라인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호주의 광산개발과 관련하여 특이한 점은 원주민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다. 1960년대부터 원주민 단체에 의한 토지소유권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1992년 Mabo판결이 나오기까지 원주민이 전통적인 방법으로 토지를 이용할 권리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원주민의 전통적 권리는 역사상 완전히 소멸하지 않았으며 현재에도 존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로써 원주민의 권리가 토지소유권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경우가 인정되었다. 원주민의 권리와 이익은 영국의 식민지시대 이전부터 존재하였던 원주민의 법과 관습에 기초한다고 보았다.

이 판결에 대응하여 연방정부는 1993년 Native Title Act(NTA)를 제정하였으며 호주의 원주민은 토지에 대하여 원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었다. 그 후의 법률 개정과 추가적인 판결에 따라 원주권의 개념이 더욱 명확하게 파악되었다. 연방법원에 의하면 원주민은 전통적인 법과 관습에 의하여 단체 또는 개인으로서 원주권을 가지지만 권리를 매각할 수는 없으며 포기만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또 토지에의 접근, 사용권한에서 독점적 소유권까지 다양한 형태로 인정되었다.

호주에서 광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2001년 연방 회사법(Corporations Act 2001)에 기하여 등록하여야 한다(Sec.5B.2). 등록하여야 하는 사업이란 호주에서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주식 또는 자산을 매각하는 행위, 호주에 상설 사무소를 운영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외국기업은 호주에서 투자를 하거나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호주에 등록할 필요는 없지만 대부분의 주에서는 탐광권을 신청하는 기업에게 등록을 요구하고 있다. 예컨대 QLD의 1989년 광물자원법에서는 적격자는 탐광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적격자란 성인 자치단체, 외국등록기업을 포함하는 기업을 의미한다고 규정하여 외국기업이 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하도록 요구한다. 다만 WA주에서는 등록조건이 입법상 요구되지는 않지만 2001년 연방 회사법의 적용에 의하여 등록이 강제된다.

호주의 천연가스 개발은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호주의 서부 해상인 North West Shelf(NWS)에서 가스유전이 발견되어 개발이 시작되었고 1989년부터 본격적인 LNG수출을 개시하였다. 그 후 세계 5위의 수출국이 되었으며 전 세계 LNG 수출물량의 약 7%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호주의 LNG 수출은 연간 약 24억 호주달러이며 주로 장기공급계약에 따라 주로 일본으로 수출되었으나 최근에는 중국이 적극적으로 가세하는 형국이다.

2000년대 중반 West Australia는 주 관할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 사업자는 각 개발사업 매장량의 15%를 반드시 주 내수용으로 공급하도

록 의무지우는 정책 즉 “WA Government Policy on Securing Domestic Gas Supplies”(일명 Dogmas정책)를 발표하였다.

최종적으로는 WA정부는 그 해 10월에 동 정책을 발표하였다. 각 개발사업의 15% 상당의 공급을 의무지우는 것으로 결정하여 발표한 것이다. 15%라고 하는 목표수치는 주 내수용 가스수요의 장래 예측과 예측 천연가스매장량을 반영하였는데 수요량의 근거로서는 당시 주 내수용 소비량이 연간 약 630만톤이고 그 후 약 3%의 성장을 유지한다고 가정하였다. 그 결과 이를 바탕으로 2055년말까지 주 내 수용량의 합계가 약 6억 7000만톤으로 된다는 결과에 기초하였다.

그러나 동 정책은 발표당시부터 LNG개발사업자 및 수입국 관계자에게 우려를 주었다. 따라서 동 정책은 정책의 운영에 대해서는 다른 공급원으로부터의 전환에 의한 공급방법이 가능하였고 또 가스가격에 대해서도 상업적 기초에 따른 범위로 조건지우는 등 다양한 보완책을 보이고 있다. 또 WA정부 및 현지 개발사업자를 본다면 주정부와 사업자간의 교섭에 의하여 상호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2008년 5월 South Australia 의회는 새로운 The National Gas Bill을 도입하였다. 이 법률은 호주에서의 천연가스 운송(transmission)과 분배(distribution)를 담당하는 파이프라인(pipelines)에 접근하기 위한 기한과 조건을 결정하는 National Gas Law의 도입을 주도한 최초의 입법이었으며 기존의 The Gas Pipelines Access Law를 대체하였다. SA주는 호주 내에서 법률제정을 주도하고 있다. 모든 호주의 자치정부는 가스 운송과 분배를 위한 파이프라인에 대한 새로운 정부차원의 접근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동 법률에 포함된 내용을 적용하기 위한 입법을 도입하였거나 과정 중에 있는 실정이다.

이 법률은 이미 발표된 입법예고안에 대한 각종 제안과 함께 업계 참여자와의 토론이나 협의의 중요한 주제가 되기도 하였다. 동 법률은 기존의 The Gas Pipelines Access Law에 포함된 기초적 개념을 계속 유

지하고 있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가스접근체제(gas access regime) 범위를 중대하게 확대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는 The National Electricity Law가 가지는 규제체제와의 정합성을 유지하도록 의도되었다.

The Australian Energy Market Communication(AEMC)이 동 Rule의 개정에 대해 책임을 지며 그 개정 절차를 관리하고 효율성을 심사하게 된다. AEMC는 또한 그 결과를 Ministerial Council on Energy에 직접 보고한다. 동 법률은 접근계약(access arrangement)의 개념을 유지하며 접근계약에 따라 상이한 기한과 조건을 협의할 수 있는 서비스제공자(service provider)의 협상권을 포함하고 있다. 명문에 의하여 동 법률은 관련 보호되는 계약상 권리(contractual right)를 가진 자로부터 이를 박탈하는 효과를 가지는 모든 형태의 접근계약을 금지한다.

동 법률은 파이프라인을 위한 새로운 규제의 형식을 도입하고 있다. 이는 소위 규제완화(Light Regulation)로 불린다. 연방경쟁위원회(National Competition Council, NCC)는 이러한 규제완화를 위한 적용을 결정하게 된다. 규제완화결정을 위한 고려에서 NCC는 법률과 규칙(Rule)에서 규정하는 규제의 형태가 야기할 수 있는 가능한 효율성과 그러한 규제가 효율적 서비스 제공자, 효율적 사용자, 효율적인 장래의 사용자와 최종적 이용자 등에 의하여 야기될 수 있는 가능한 비용에 대해 가지는 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Sec. 122).

Ⅲ. 베트남⁸⁰⁾

베트남은 광물자원을 자원 그대로 수출하기 보다는 자국 내 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육성과 함께 전략자원으로서의 수출 및 수입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1986년 경제개방정책을 시행한 이후 석

80) 김현희, 신흥시장국(MAVINS)의 원자재 개발 협력 법제 연구(IV) -베트남- 재인용 및 요약

유법(1987), 광물법(1996), 외국인투자법(2001) 제정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를 환영하면서 석유, 대륙붕 개발, 광물 개발을 활성화시켜 왔으며, 최근 광물법, 석유법 및 투자법 등을 개정하면서 적지 않은 변화를 꾀하고 있다.

독특한 점은, 광물과 석유·가스에 관한 주무관청이 다르다는 점인데, 전자의 경우 천연자원환경부(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가 부처들 간의 의견을 조정해서 광물개발 전략을 수립하여 총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지방인민위원회의 권한으로 지정된 소규모 광물에 대한 것을 제외한 모든 광물에 대한 각종 라이선스를 발급하며, 후자의 경우, 산업무역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가 석유 계약을 평가하고 총리에게 심의·승인을 요청하며, 석유계약자에게 투자증명서를 발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데, 기존의 석유를 담당하던 기획투자부로부터 이관된 것이다.

2010년 11월 17일 베트남 국회는 기존 2005년 광물법(1996년 광물법의 개정판)을 대체하는 광물법(이하 ‘신 광물법’이라 한다)을 채택하였다. 신 광물법은 총 11개 장 86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제1장(제1~8조) 일반조항, 제2장(제9~15조) 광물전략 및 마스터플랜, 제3장(제16~20조) 미개발광물의 보호, 제4장(제21~24조) 광물 기초조사, 제5장(제25~29조) 광물자원 지역, 제6장(제30~33조) 환경보호, 광물 활동에 있어서의 토지, 물 및 기술 인프라의 이용, 제7장(제34~50조) 광물 개발, 제8장(제51~75조) 채굴, 제9장(제76~79조) 광물 관련 재정 및 광업권 경매, 제10장(제80~83조) 광물 관리에 관한 국가 책임, 제11장(제84~86조) 이행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본 법의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으로 Decree 형식으로 광물법 이행 법령(Decree Implementing the Law on Minerals, 2011.5), 광물권 입찰 규제법령(Decree Regulating Auctions of Mineral Mining Rights, 2011.5), 광물개발 관련 행정벌(Decree on Administrative Penalties in the Mineral

Sector, 2011.9), 광물개발을 위한 환경보호비용(63/2008-ND-CP), 광물개발 관련 행정절차위반(150/2004-ND-CP)가 있다. Decision으로 2020 및 2030 광물전략 승인결정(PM approving the Mineral Strategy to Year 2020 with Outlook to Year 2030, 2011.5), 광물개발로 인한 환경 복구와 퇴적증진을 위한 결정(71/2008 QD- TTg), 물개발 또는 미개발 자원보호와 광산개발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이익 보호를 위한 결정(219/1999/QD-TTg)가 있다. 고시로는 광물개발 관련 환경보호비용 관련 법령(63/2008-ND-CP) 이행을 위한 재정부 고시(67/2008/TT-BTC), 광물 수출지침 제공을 위한 산업자원부 고시(20/2008/TT-BTC), 광물 라이선스 발급을 위한 징수금 및 수수료 관련 고시(20/ 2008/TT-BTC), 미개발된 납과 아연광석의 보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익 보장을 위한 재정부 고시(39/2007/TT-BTC), 환경자원부 고시(01/2006/TT-BTNMT), 광물 개발 독점에 관한 과세, 송금, 관리, 사용료에 관한 정부 고시(18/2003/TT-BTC), 광물개발 또는 미개발 자원과 광물이 있는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이익보호를 위한 결정(219/1999/QD-TTg) 및 그 이행을 위한 재정부 고시(76/2000/TT-BTC), 광물개발 라이선스에 관한 보증금 및 보증금 조건부 날인 증서의 관리와 지불에 관한 절차 및 지침 제공 재정부 고시(05/1998/ TT-BTC)가 있다.

법률에 담아야 할 중요 사항들이 대부분 하위법령의 형식 속에 주로 포함되고 있다는 특징은 행정부의 권한이 입법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우월하다는 점과 행정부의 부패 정도에 따라 법의 집행이 공정하지 못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사실상의 문제들로 인하여 평면적인 법제 내용의 분석만으로는 기업의 진출에 정확한 정보의 제공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에 주의하여야 한다.

신 광물법의 개정은 2005년 광물법 개정에서 광업권 부여권한이 지방정부로 대폭적으로 위임되자 이것이 난개발로 이어지면서 환경악화를 초래했다는 점에 기인한다.

그리하여 지방정부에 대한 위임을 축소하고 기업에게 기술과 재무 양 측면에서의 실행 확실성을 요구함과 더불어 환경을 보전하고 광산 주변 주민에 대한 복지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또한 라이선스(면허)를 경매로 부여하도록 하여 현재의 절차에서 나타나는 정부와 사업자간 유착을 유발하는 구조를 배제하고 충분한 능력과 경험을 갖는 적격자에게 라이선스를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하여 라이선스 발급 과정의 능률화와 광물 라이선스 취득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엄격한 재정적 요건을 부과하여 광물 탐사 및 개발에 적용되는 기존의 법률 체계에 신규 변경을 도입하고 이를 보완하였다.

이 외에도 단순히 탐광이나 개발에서의 규칙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분야에서 관련 기관이 중복해서 갖고 있던 권한을 해소하는 등 광물자원 정책 전반에 걸친 규정이 변경되었으며, 아울러 라이선스 소유자로부터 라이선스 비용을 징수하는 등 시장경제 규칙에 기초한 국가관리 방법으로 크게 변경되었다.

아울러, 2010년 광물법은 광물 전략과 채굴권 경매, 채굴권 발급비용에 관한 신설 규정을 두었다. 국가는 광업 라이선스 발급료를 징수하며 요율은 광물의 가치나 매장량, 품질, 개발 광물의 카테고리나 그룹을 기초로 하도록 한 것이다.

실제 법률을 시행하려면 시행 세칙이 필요한 내용이지만, 현 시점에는 관련 정령 등은 아직 공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1993년 6월 제정된 석유법은 그동안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석유와 가스를 같이 규율하고 있는 까닭에 석유가스법으로 불리어 왔으며, 2000년 6월에 한차례 개정되었고, 최근 석유법의 다수 조항을 개정 및 추가하는 법률 No.19/2000/QH10에 의거하여 석유법 개정 및 추가법을 공포하였다.

사회주의 국가로서 생산수단의 국가 및 인민소유를 규정한 베트남 사회주의 헌법 제17조와 천연자원의 합리적인 사용 및 환경보호를 규

정한 제29조 및 국회의 입법권을 규정한 제84조의 규정에 근거한 이 법은 베트남 영역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석유의 개발 및 생산행위에 관하여 규율한다. 석유가스법은 총 9개 장, 51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제1장(제1~3조) 일반 조항, 제2장(제4~14조) 석유 활동, 제3장(제15~27조) 석유 계약, 제4장(제28~31조) 계약자의 권리와 의무, 제5장(제32~37조) 로열티, 세금 및 수수료, 제6장(제38~39조) 석유활동의 국가 관리, 제7장(제40~42조) 석유활동 검사, 제8장(제43~46조) 위반행위 처벌, 제9장(제47~51조) 이행조항이 있다. 하위법령으로는 Decree로 석유 이용 및 탐사 계획 양여에 관한 석유법 및 규칙 이행 규정(115/2009/ND-CP 24/12/2009), 액화 석유가스 거래(107/2009/ND-CP 26/11/2009), 유가격 상승시 석유 계약자의 이익에 대한 추가 징수(100/2009/ND-CP 03/11/2009), 석유활동 관련 연안 직접투자에 관한 법령(Decree No. 121/2007/ND-CP, 2007.7.25)의 수정(17/2009/ND-CP 16/02/2009), 석유활동 관련 연안 직접투자(121/2007/ND-CP 25/07/2007), 석유 관련 행정 위반 제재(145/2006/ND-CP 30/11/2006), 석유생산 분담(sharing)에 관한 모델계약 공표(139/2005/ND-CP 11/11/2005), 석유 안전(security and safety) 보호(03/2002/ND-CP 07/01/2002), 석유법 세부 이행(48/2000/ND-CP 12/09/2000)이 있다.

Decision으로 베트남 남부 대륙붕의 석유 구역 표시(46/2007/QD-TTg 03/04/2007), 액화석유가스 병입절차 시 기술적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36/2006/QD-BCN 16/10/2006), 액화석유가스 탱크 유입과 수송 안전에 관한 규정(28/2006/QD-BCN 16/08/2006), 석유활동 관련 공급 목록(827/2006/QD-BKH 15/08/2006), 석유 광구의 보존과 폐기 규정(399/QD-BCN 24/02/2006), 석유 자원과 매장량의 분류와 석유 매장 보고 개선 규정(38/2005/QD-BCN 06/12/2005), 베트남 석유회사에 배분된 투자자본 관리(96/2004/QD-BTC08/12 2004), 석유 비축지 건설 투자 규정

(422/2003/QD-BTM 11/04/2003), 2010년까지 석유비축지에 관한 국가시스템 개발계획 승인(93/2002/ QD-TTg 16/07/2002), 석유 활동 관련 해외투자에 대한 특혜와 인센티브(116/2001/ QD- TTg 02/08/2001),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석유활동 서비스 관련 공급 및 장비 목록(229/2001/QD-BKH 18/05/2001), 석유 사업 관리(111/2000/QD-TTg 20/09/2000), 석유활동 관련 안전통제 규정(41/1999/QD-TTg 08/03/1999), 심해, 연안지역 및 특히 지리적으로 어려운 지역에 대한 석유활동 투자 장려(216/1998/QD-TTg 07/11/1998)가 있다.

IV. 인도네시아⁸¹⁾

인도네시아는 세계적 수준의 석탄, 구리, 금, 주석 및 니켈을 생산하고 있으며, 전 세계 광산업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화력발전용 열탄(thermal coal)의 세계 최대 수출국 중 하나이며, 많은 글로벌 광산업체들이 석탄 및 광물분야 전망 시, 인도네시아에 지속적으로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광업정책 평가 및 투자환경은 그다지 긍정적이지 못했던 결과, 최근 몇 년간 특히, 석탄부문 이외의 그린필드(greenfield) 프로젝트에 있어서는 투자규모가 다소 제한적이었다. 이에 2009년에 새롭게 시행된 「광물 및 석탄 산업에 관한 법률(the Law on Mineral and Coal Mining No.4 of 2009; 이하 “광업법”）」과 이를 뒷받침해주는 시행법령 체계는 투자자들에게 필수규제사항에 대한 명확성을 제시해 줌으로써 신규투자가 가속화되고, 궁극적으로 인도네시아가 글로벌 광산 분야에 영향력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81) 김범준, 신흥시장국(MAVINS)의 원자재 개발 협력 법제 연구(V) -인도네시아- 재인용 및 요약

인도네시아의 외국인 투자를 위한 장기 작업계약(Contracts of Work; “CoW”) 체제 및 인도네시아 투자자들의 허가권(licensing system) 체제는 광업법 하에서 대체되었으며, 광업법은 허가권부여를 위한 투명한 입찰절차 등을 포함한 새로운 지역기반 허가권제(area-based system of licensing)를 시행하였다. 광업법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광업승인절차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전반적인 광업정책, 표준, 지침(guideline) 및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광산 산업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정부는 개발(development), 통제(control), 평가(evaluation) 및 해당 부문 분쟁해결(conflict resolution)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게 된다.

광업법은 인도네시아 광산산업 투자에 있어서 보다 분명한 명확성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정부가 법령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고수의 광산 산업에 투자하려는 외국투자자들의 이익과 인도네시아 광물개발의 이윤이 공정한 비율로 인도네시아인들에게 돌아가기를 바라는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바람과 균형을 이뤄나가는 것은 분명 어려운 과제일 것이다. 법령을 통해 정부가 규정한 균형은 인도네시아에 최상의 결과를 얻도록 하는 것인바 광업법 하에서 중앙정부는 채굴가능지역을 결정하게 되고, 이 같은 규제환경을 통해 중앙정부가 광산 가능지역에 대해 좀 더 많은 통제력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산림업(forestry)과 같은 다른 목적으로 예정된 지역에 광산허가가 이중적으로 발행되는 경우가 줄어들 것이다.

광업법을 지원하는 시행규칙(implementing regulations)에서는 생산자의 연간 국내시장공급의무(DMO)를 결정하는 틀이 확립되었는데, 이는 인도네시아 정부에 의한 인프라투자가 확대되면서 예상되는 국내 수요 증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천연자원의 충분한 공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광업허가(mining licence) 보유자는 제3자에게 전적으로 하도급을 주기 보다는 자체적으로 광업활동의 일부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필수규정을 준수하는 등 운영상 높은 수준의 책임을 이행하고 있음을 입증하여야 하며, 하도급이 허용되는 상황이라면, 이를 인도네시아인 소유의 회사에 우선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인도네시아 광업활동의 이익 중 상당부분은 인도네시아 내에서 보유되고, 재투자되어야 한다는 움직임과 마찬가지로, 시행규칙에서는 거래의 최소가(minimum price) 설정을 위해 벤치마크 가격체제(benchmark pricking framework)를 제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석유·가스 활동을 규제하는 법은 2001년 11월 23일자 법 제22/2001호로서(이하 “석유·가스법”) 동법 제3조는 인도네시아의 석유 및 가스 관련 활동을 명확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명문화하고 있다. 즉, ① 효과적·효율적이며,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탐사 및 개발의 보장, ②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경쟁을 통한 책임감 있는 처리·운송·저장 및 상업적 활동의 보장, ③ 국내 수요를 위한 에너지원으로서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석유 및 가스의 공급 보장, ④ 국력의 증진, ⑤ 국가수입의 증대 및 ⑥ 환경보존과 더불어 공공복지와 번영의 강화 등을 그 구체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내의 석유와 가스는 일반적으로 생산공유계약(Production Sharing Contract; “PSC”)을 통해 정부가 관련 영업허가권의 보유자로서 통제하고 있다. 이에 석유·가스법은 상류영업활동(Upstream Business Activities; 탐사 및 개발)과 하류영업활동(Downstream Business Activity; 처리·운송·저장 및 영업)을 구분하여 상류활동은 업체와 집행기관(BP Migas) 간의 공동협력계약(Joint Cooperation Contract: “JCC”)을 통해 통제하고(주로 PSC), 하류활동은 규제기관(BPH Migas)이 발행하는 영업허가(Business License)로 통제한다. BP Migas와 BHP Migas는 상류 및 하류활동을 감독하고, ① 자원의 보존 및 유지, ② 석유 및 가

스 관련 자료의 관리, ③ 적절한 표준기술의 적용, ④ 처리된 상품의 품질, ⑤ 작업 안전 및 보안, ⑥ 환경관리(오염방지 및 환경피해 복구 등), ⑦ 현지 인력·상품·서비스 및 국내 기술의 우대, ⑧ 현지 커뮤니티의 개발, ⑨ 석유·가스 기술의 개발과 적용 등을 적용한다.

상류 및 하류활동은 국영기업, 지방정부 소유기업, 협동조합, 소규모 기업 및 민간 기업이 수행할 수 있는데, 외국 법인의 지사는 상류활동에만 참가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지사는 영구적인 설립체(Permanent Establishment; “PE”)이어야 한다. 상류활동 법인은 하류활동에 개입하는 것이 금지되며,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상류업체가 자체적인 개발활동과 통합하여 운송·저장·처리시설 및 기타 하류 활동을 해야만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V. 나이지리아⁸²⁾

석유 및 천연가스에 관한 법규는 석유법(Petroleum Act), 유송파이프라인법(Oil Pipelines Act) 등 약 6개 법률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구체화한 석유안전규칙(Mineral Oils(Safety) Regulation), 석유규칙(Petroleum Regulation) 등 관련 행정입법을 두고 있다. 나이지리아의 석유산업을 관장하는 주요 기구는 석유자원부(Department of Petroleum Resources)와 국영석유회사인 NNPC (Nigerian National Petroleum Corporation)로 나눌 수 있으며, 특히 공기업으로 상업적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석유산업에 대한 일정한 관리 및 감독 기능을 위탁받은 NNPC의 역할이 크다. 그러나 이러한 비대해진 NNPC의 구조에 대한 개선요구가 제기되면서 현재 PIB 2012에 개혁안이 포함되어 있다. 석유에 대한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나이지리아 연방정부에 있으며, 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면허 또는 임차권이 필요하며, 면허 또는 임차권 보유자

82) 최승필, 신흥시장국(MAVINS)의 원자재 개발 협력 법제 연구(VI) -나이지리아- 재인용 및 요약

에 대해서는 사용료, 로열티 등이 부과된다. 임차권은 기초적인 탐사를 위한 석유탐사면허(Oil Exploration License), 탐사와 분석 및 그 과정에서 채굴된 석유에 대한 제한적 처분이 가능한 석유탐사연구면허(Oil Prospecting License) 그리고 본격적인 채굴이 가능한 채굴임차권(Oil Mining Lease)로 구성된다. 석유법은 개발 이외에도 정제와 관련하여 제3조에, 석유가격책정에 관련하여 제6조에, 토지의 이용관계와 관련하여서는 부칙 1 제36조에 규정을 두고 있다. 나이지리아 석유산업은 몇 가지 한계와 개선과제를 지니고 있는 바, 업스트림에서 대표적인 것은 개발자원 부족이 들어지고 있으며, 다운스트림에 대해서는 정유시설의 노후화와 낮은 가동률이 들어지고 있다. 한편, 석유개발지역에서의 다국적 메이저 석유회사들과 지역사회와의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충돌의 주요한 원인은 토지의 이용, 환경오염, 고용 등이다. 천연가스 산업의 중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중반으로 그 이전까지는 석유산업의 부수적 산업형태로 관리·규제되어 온다. 따라서 별도로 구체적인 천연가스 관련법제는 미비하다. 따라서 천연가스 산업에 대한 법제정비의 필요성이 지적되어 왔다. PIB 2012에서는 천연가스 산업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천연가스 산업을 운영하는 나이지리아 핵심 공기업으로는 NGC(Nigeria Gas Company)와 NLNG(Nigeria LNG Limited)가 있다.

앞서 언급한 나이지리아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법안이 발의되어 의회에 계류중이다.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감독당국과 NNPC의 역할 재편으로 업스트림 석유조사청(Upstream Petroleum Inspectorate)과 다운스트림 규제청(Downstream Regulatory Agency)이 신설되며, 석유개발관련 기술행정을 위해 석유기술국(Petroleum Technical Bureau)이 설치된다.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석유개발지역사회기금(Petroleum Communities Fund)가 조성되도록 하였다. 한편 기존 NNPC가 가졌던 일부 규제감독권한을 관

할 행정청으로 이관하고 NNPC의 상업적 기능은 자산관리공사(Asset Management Corporation), 국영석유회사(National Petroleum Company), 국영가스회사(National Gas Company)로 재편한다. 개발권의 부여와 관련하여서는 기본적인 구조에서는 큰 변동이 없으나, 개발관련한 심도, 기간 등에서 그 제한을 완화하였다. 반면 법규위반사항과 의무 이행 사항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였다. 토지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보상관련 규정이 보완되었으며, 환경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예방의 원칙에 따라 배려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그 밖에 조세관련 제도에 있어서도 적용대상과 세의 신설 등의 변화가 있다.

나이지리아는 석유 및 천연가스 이외에도 고품위 석탄, 철, 아연, 주석 등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광물법제의 근간은 2007년 신광물법(Nigerian Minerals and Mining Act of 2007)과 2011년 광업령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무 행정청으로 광업철강개발부(Ministry of Mines and Steel Development)가 광물산업의 규제 및 관리를 담당한다.

신광업법의 주요한 내용으로는 광물자원의 소유 및 통제, 광물정책의 수립 및 집행, 광업권의 내용, 기타 광업권, 광업권 보유자의 의무, 광업 인센티브, 채굴된 광물의 처리 및 거래, 광물산업발전을 위한 기금의 조성, 토지의 소유권 및 점유권과의 관계, 환경보호와 지역사회와의 조화 등이 있다. 광업권은 예비조사허가(Reconnaissance Permit), 탐사허가(Exploration License), 채광임차권(Mining Lease)로 구분된다. 토지의 소유권 및 점유권과의 조화, 환경보호와 지역사회와의 조화는 광업분야에서도 주요한 이슈이다. 따라서 광업법은 토지관련 권리관계의 충돌을 막기 위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환경보호와 지역사회와의 조화와 관련하여서는 광업법 제4장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개발권자의 환경상 주요의무는 사전예방의무, 원상회복의무, 환경보호 및 복구펀드(Environmental Protection and Rehabilitation Fund)의 참여의무를 들 수 있다. 지역사회와의 조화와 관련하여서는 개발지역에서

주민의 생존을 위한 소금 등의 채취허용, 송배하는 자연물 등이 있는 지역에 대한 탐사금지, 지역사회협약을 통한 교육, 보건 등 지역사회 지원을 들 수 있다.

VI. 남아프리카공화국⁸³⁾

남아공의 경우 원자재 개발과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법은 신광업법이라 불리는 광물 및 석유자원 개발법(2002)이다. 전통적으로 남아공 정부는 민간 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광업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였다. 경제 구조의 개혁과 변화하는 국내외 정세 등을 감안하여 1994년 구광업법(Mining Act) 및 2002년 광물 및 석유자원 개발법을 새롭게 개정하여 다양한 주체의 광업 전반에 대한 참여를 허용하였고, 특히 신광업법의 제정을 통해서 백인 기업이 독점해온 광산업에 흑인들의 참여를 보장하였다. 광물 및 석유 자원 개발법의 경우 광물, 석유 개발, 환경 관련 규제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남아공 정부는 흑인 경제 육성 정책(Black Economic Empowerment: BEE)과 이를 뒷받침 하는 광범위 흑인경제육성법(BBEEA; The Broad-Based Black Economic Empowerment Act)을 제정하여 광업 부문 의 주요 자산을 흑인소유 기업에게 이전하는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그 외 광물 및 석유 자원 로열티법, 광물 및 석유 자원 로열티 행정법, 채굴권 등록 개정법, 남아공 다이아몬드법, 남아공 귀금속 법, 남아공 국가에너지 법, 남아공 국가 에너지 규제법, 남아공 다이아몬드 수출 과세법 등을 원자재 관련 법으로 볼 수 있다.

남아공은 인종차별정책(Apartheid)에 의해 흑인 참여를 철저히 배제하고 백인들의 경제적 부(wealth)를 창출해온 왜곡된 경제제도를 수정하고 그간 역사적 불이익을 받아온 흑인들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83) 손현·서광욱, 신흥시장국(MAVINS)의 원자재 개발 협력 법제 연구(VI) -남아프리카공화국- 재인용 및 요약

흑인정부는 광업 부문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혁조치를 추진해왔다. 남아공 정부는 흑인 경제 육성 정책에 근거하여 광업부문 주요 자산을 흑인 소유 기업에게 이전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구체적으로 2008년부터 10년간 광업부문 총자산의 26%, 신규 광물개발 프로젝트의 51%를 흑인소유 기업의 배정을 추진 중이다.

흑인 경제 육성 정책이란 약 80년간 백인정부가 추진한 인종차별정책으로 역사적인 불이익을 받은 흑인들(HDI; Historical Disadvantaged Individuals)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개인사업, 교육, 광업, 농업, 고용, 금융 및 세금 등 모든 분야에서 흑인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우대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BEE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제정한 기본법이 광범위 흑인경제육성법이며, 5년 및 10년 단위로 설정한 BEE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행을 강제하고 BBEEA 성과표(The Scorecard of BBEEA)에 따라 추진정도를 점검하기 위해 설립한 기관이 흑인경제활성화 원회(The Council of BEE)이다. 오늘날 남아공 생활환경에서 BEE가 관련되지 않는 분야가 없을 정도로 포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광범위 흑인 경제 육성법은 모두 15개의 조항으로 구성된 간략한 법률이다. 1조는 개념 정의, 2조는 법의 제정 목적, 3조는 해석, 4조는 흑인 경제 육성 자문 위원회 구성, 5조는 자문 위원회의 기능, 6조는 자문 위원 구성 및 구성원 임명, 7조는 자문 위원회 헌법과 규칙, 8조는 자문 위원 관련 보수 및 비용 상환, 9조는 모범 실무 규칙, 10조는 모범 실무 규칙의 법적 지위, 11조는 광범위 흑인 경제 육성의 정책, 12조는 변혁 현장, 13조는 위원회 자금 및 지원 업무, 14조는 법률의 규칙 제정, 15조는 법의 간략한 명칭을 규정하고 있다. 개념 조항인 제1조에서 중요한 개념은 ‘흑인(Black People)’이라는 것으로, 이는 총칭 개념으로 아프리카 흑인(Africans), 흑백 혼혈 (Coloured)과 남아공 태생의 인도후손(Indian)을 지칭한다.

광범위 흑인 경제 육성법의 제정 목적은 전반적으로 흑인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경제 활동의 참여 기회 확대,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경제적 변화를 이루고자 하는데 있다. 흑인 남성 뿐만 아니라 흑인 여성과 소외된 지역 주민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는데도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흑인 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 프로그램 개발을 장려하며, 흑인 기업들에 대한 투자 지원 정책, 금융 지원을 장려하고자 제정되었다.

광범위 흑인 경제육성법의 목적을 증진하기 위해 무역 산업부 장관은 관보에 흑인 경제 육성 이행에 지침이 되는 ‘모범 실무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모범 실무 규칙은 흑인 경제육성 정책의 개념, 추가 해석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입찰에서 우대 조건들과 흑인경제 육성을 판단하는 측정 요소 및 항목별 점수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각 산업별로 ‘변혁 헌장(transformation charters)’ 제정을 통해 각 산업 관련자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모든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은 모범 실무 규칙을 참조하여 면허나 인허가 발급시 측정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특히 입찰이나 정부 물품이나 서비스 조달시 모범 실무 규칙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입찰 심의를 해야 한다.

광범위 흑인경제 육성법의 경우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벌금을 받거나 직접적으로 경제적 또는 다른 제재 수단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흑인 경제 육성법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정부나 공공 기관으로 부터 조달, 공급, 서비스 제공에 대한 입찰에 참여 제한 또는 참여하여도 흑인 경제 육성 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 수주할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다.

또한 각종 면허나 허가 등의 발급에 제한을 받게 된다. 흑인 경제 육성법의 규정이나 모범 실무 규칙에서 제시하는 요건들을 충족하지

않는 기업의 경우, 예를 들어 채광권, 채굴권, 탐사권 등이 발급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융자 등의 금융 지원을 받거나 세금 혜택에서도 제외된다.

구매하는 소비자나 수요 업체는 우대 구매와 관련하여 ‘흑인 경제 육성 기여 등급’이 높은 업체와 거래하는 것이 자신의 등급을 높이는 데 유리하므로 흑인 경제 육성법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나 낮은 등급의 업체보다는 등급이 높은 업체를 선호하게 되므로 자연히 ‘흑인 경제 육성 기여 등급’이 낮거나 준수하지 않는 업체는 경쟁력이 저하된다.

외국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흑인 경제 육성 정책은 투자시 장애 요소인 것은 분명하다. 남아공의 신규 법인을 설립하여 진출하여 1년간은 흑인 경제 육성 정책법의 면제를 받기 때문에 서두를 것은 아니다. 또한 사업 진행 초기 사업 규모 즉 연매출액이 적은 경우 ‘면제된 영세 기업’나 ‘소규모 기업’으로 흑인 경제 육성 4등급을 부여 받으므로 초기 사업 규모를 키워가면서 흑인 경제 육성법이나 규칙에서 제시하는 요건들을 점차적으로 갖추어 갈 수 있다.

대기업의 경우 흑인 경제 육성 7가지 요소 중에서 실현 가능한 부분들부터 충족시키면서 흑인 경제 육성 등급을 높여가야 할 것이다. 또한 추가 투자 비용이 들지만 ASGISA나 JIPSA와 같은 정부 추진 사업을 장기 투자 방식으로 참여하여 소유권에 책정된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흑인 경제 육성법 준수를 위해 추가 지출을 해야 되므로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투자 진출시 부담스러운 부분이며 투자 유치 활성화 보다는 감소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신광업법이라 불리는 광물 및 석유자원 개발법에 따르면 정부는 광산에 대한 소유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탐광권, 채굴권 및 광물에 대한 소유권을 광업법상 권리로 인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또한, 광산 개발과 함께 환경보존정책도 병행하고 있다. 광물자원의 개발 및 채광을 촉진

하기 위한 광업권, 재정지원, 기술개발, 정보관리 등 모든 광업관련 분야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흑인들의 광업참여가 배제되었던 1991년 구광업법체계에서 2002년 “광물 및 석유 자원 개발법”의 제정으로 흑인들의 광업 참여를 지원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新光업법 체계로 변화하였다. “광물 및 석유 자원 개발법” 총 7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정의(Definitions), 제2장 기본 원칙(Fundamental Principles), 제3장 행정(Administration), 제4장 광물 및 환경 규제(Mineral and Environmental Regulation), 제5장(광물 및 채굴 개발 위원회(Mineral and Mining Development Board), 제6장 석유 탐사 및 생산(Petroleum Exploration and Production), 제7장 일반 규정 및 보칙(General and Miscellaneous Provisions), 별첨(Schedule) I, II로 전체 111개의 조문이다. 광물 및 석유 자원 개발법에 광물 및 석유, 환경에 관한 광범위한 규율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a) 남아공 내 모든 광물 및 석유 자원에 대한 주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가의 권리를 인식하고, (b) 국가의 광물 및 석유 자원에 대한 국가 소유권 원칙에 효력을 부여하고, (c) 남아공의 모든 국민이 국가의 광물 및 석유 자원에 평등히 접근하고, (d) 여성을 포함하여 역사적으로 취약계층에 속한 자에게 광물 및 석유 산업에 진입하고 국가의 광물 및 석유 자원 활용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기회 확장하고, (e) 남아공 내 광물 및 석유 자원 개발과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f) 남아공의 사회·경제적 복지 신장 및 고용을 촉진하고, (g) 탐광, 탐사, 채굴 및 생산 활동상의 고용 안정성을 제공하고, (h) 공정한 사회·경제적 발전을 촉진함과 동시에, 질서 있고 생태학적으로 지속가능한 방법을 통해 국가의 광물 및 석유 자원 개발을 보장함으로써 헌법 제24조에 효력 부여하고, (i) 운영 중인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채굴 및 생산권 보유자가 기여하도록 보장함을 목적으로 제정하였다.

국가의 광물 및 석유자원의 소유자는 국가로, 장관을 통하여 개략 탐사 승인(reconnaissance permission), 탐광권(prospecting right), 제거 승인(permission to remove), 채굴권(mining right), 채굴 허가(mining permit), 개발 보류 승인권(retention permit), 기술협력 허가(technical co-operation permit), 개략 탐사 허가, 탐사권 및 생산권의 부여, 발행, 거부, 통제, 행정 및 관리를 할 수 있다. 또한 재정부(the Minister of Finance)의 자문을 얻어 국회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세금, 수수료 등을 결정한다.

남아공의 광업 정책, 흑인경제육성정책과 광범위 흑인경제 육성법, 광물 및 석유자원 개발법 등이 남아공에서 원자재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적용받는 가장 기본적인 정책과 법이다. 흑인 경제 육성법이 남아공에 원자재 개발 사업 추진에 있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원자재 개발 사업 등을 추진할 때는 해당 국가의 관련 정책 및 법제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근거하여 투자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 3 절 MAVINS의 원자재 개발 투자 관련 법제 및 정책 분석

I. 멕시코

멕시코는 1970년 말까지 지속해 온 수입대체산업화 모델이 실패하고, 1982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방송·통신, 광업, 수산업, 철강업 등의 분야에서 민영화를 단행했다. 이 과정에 외국인투자에 대한 개방을 시작했다. 1990년대에 외국인투자는 더욱 확대되었고,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은 이와 같은 과정의 절정이라고 평가할 법하다.

멕시코의 외국인투자법의 개선은 완만한 속도로 이루어져왔다. NAFTA의 회원국인 미국과 캐나다에 대해서는 투자요건의 완화와 시

장개방의 확대가 적극적이지만, NAFTA 비회원국들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장애요소가 곳곳에 산재해 있는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멕시코정부는 1993년 투자법 제정과 이후 수많은 개정을 통해 멕시코에 호의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왔다. 1993년 외국인투자법은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외국인투자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외국인투자자의 참여를 일정부분 제한하여 멕시코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규정방식이 네거티브 방식이어서 외국인 투자가 전면적으로 금지된 국가 및 내국인 독점업종을 규정하고 있고, 한편 제한적으로 지분 참여가 허용되는 업종들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외국기업이 이행해야하는 의무와 법률 및 시행령 위반에 따른 제재를 동시에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직접투자와 간접투자를 함께 규정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지분제한 투자업종에 은행업, 보험, 연기금, 증권업 등 금융 산업 대부분 업종을 포함하고 있다.

향후 투자개방이 이루어질 업종은 전력과 석유산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분야의 수급 불균형, 공공투자 부족, 개발기술의 낙후문제 등이 개방 가능성을 상승시키고 있다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외국인 투자법의 제도 발전은 멕시코 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제한 장벽 제거가 필요하다. 원자재개발 영역의 확대는 외국인투자법의 개선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외국인투자법의 변화 추이를 주시해야 할 것이다.

이후 1990년대 초반부터 멕시코에서 개방 및 자유화정책이 시도되었고, 이는 외국인투자유치로 이어져서 1993년 외국인투자법(LEY DE INVERSIÓN EXTRANJERA)을 개정하게 되었다. 외국인투자법은 제1편 제2~3장 제5~9조는 100% 외국인투자가 가능한 부문을 제외한 투자금지 부문, 외국인 지분 취득한도 제한 부문, 그리고 외국인투자

위원회(CNIE)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부문들을 규정하고 있다. 동법에 따라 외국인투자의 범위가 결정되는데, 헌법 규정과 마찬가지로 외국인투자법 제5조는 원유 생산 및 정유, 기초석유화학, 전력, 원자력발전 및 방사성광물, 전신, 무선통신, 우편, 화폐 발행 및 동전 주조, 항구·공항·헬기장의 관제·감독·감시, 기타 관련 법령을 통해 명시적으로 적시한 영역 등 전략사업을 국가독점분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이 분야에 있어서는 외국인투자가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것이다.

그리고 제7조는 외국인투자의 지분 참여를 제한하는 경제활동 및 기업을 규정하고 있다. 생산협동조합에는 최대 10% 지분참여 허용되고, 국내 항공운송·항공택시·전문 항공 운송업에는 최대 25%까지 지분을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보험기관, 보증기관, 환전소, 보관용 창고 일반, 유가증권시장법 제12조에 기술된 회사, 퇴직연금 운용회사, 산업 활동 및 추출을 위한 폭발물의 취득, 활용 및 동일 활동의 소비를 위한 폭발혼합물 가공을 제외한 폭발물, 화기, 탄약통, 군수품, 폭죽의 제조 및 판매, 국내에서만 발행되는 정기간행물의 인쇄 및 발간, 농지, 축산단지, 임지를 재산으로 가진 회사의 계열 주식, 양식업을 제외한 담수 및 연안, 배타경제지역에서의 어업, 항구종합관리, 관련 법률에 따라 선박의 내해 항해를 돕기 위한 도선 서비스, 내해 항해 및 연안교역에 사용되는 선박의 상업적 이용을 업종으로 하는 해운회사. 다만, 관광유람선, 준설선 및 항구의 건설, 보존 운용에 사용되는 소형선박의 이용은 예외로 한다, 선박, 대형항공기, 철도장비에 사용되는 연료 및 윤활유의 공급, 연방통신법 제11조 및 제12조에 기술된 영업권 수탁회사 등에는 최대 49%까지 지분 참여가 허용된다. 그리고 제8조는 CNIE의 승인으로 49% 이상 100%까지 외국인투자가 허용되는 경제활동 및 기업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선박 국내운항·예항·정박·접안을 위한 항만시설, 원양어선 선박을 운영하는 해운회사, 공공서비스에 이용되는 비행장의 영업권 수탁회사 및 인가회사,

취학전, 초등, 중등, 고등, 대학교육 및 그 이상의 복합교육기관, 법률 서비스, 신용정보회사, 유가증권평가기관, 보험중개인, 이동통신, 석유 및 그 파생물을 운반하기위한 도관 공사, 유정 및 천연가스정 시추, 통신 및 대중이 이용하는 철도교통서비스의 일반 선로가 되는 철로의 건설, 운영, 경영 등이 이에 포함된다.

따라서 멕시코에서의 원자재개발은 외국인투자법의 적용을 강하게 받는 분야이기 때문에 단순히 원자재개발관련법제만 검토해야 할 것이 아니라 외국인투자법에 대한 검토도 병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광업분야와 원유 및 천연가스분야는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광업분야의 경우 외국인의 투자가 가능하다. 1991년 헌법 제27조의 부분적인 개정으로 국가의 토지소유권 이전이 가능해짐으로써 광업기업이 독자적으로 광산개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광업법은 법인의 광업권 취득 요건을 정하고 있고, 외국인이 법인에 자본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에 원유와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법과 연관지어 보아야 한다. 외국인투자법의 내용을 보면, 원유 및 가스의 탐사 생산 등에 대해서는 국가가 독점사업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외국인의 투자가 불가능하다. 석유 및 석유 파생물 수송도관 건설, 유정 및 천연가스정 시추 등에 있어서는 CNIE의 승인이 있을 경우 49% 이상 100%까지 외국인투자가 허용되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서의 부분적인 투자는 가능하다. 다만 MSCs프로그램을 통해 원유와 천연가스 등에 우회적인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으나, 위험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즉, 정치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는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하기 힘든 지점이다.

한편, 멕시코 투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유념해야 할 부분 중의 하나는 헌법 제27조 제9항 제18호의 규정이다. 이에 따르면 1876년 이후 개인 또는 법인이 국가의 토지·강·천연자원을 독점할 수

있었던 이전 정부의 모든 계약과 허가권은 변경이 가능하고, 연방정부는 이러한 계약과 허가권이 공익에 해를 끼친다고 판단하면 무효로 선언할 수 있다(제18호).

즉, 헌법은 멕시코 정부에게 개인 또는 법인이 국가와 체결했던 각종 독점권을 공익상의 이유로 사후에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공익에 해를 끼친다’에 관한 판단은 자의적인 요소가 개입될 소지가 높기 때문에 사실상 재량권에 가깝다고 해석해도 무방하다. 따라서 멕시코에서는 개인 또는 법인이 자원개발에 관한 독점적인 개발허가권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교체, 정치지형의 변화, 경제정책기조의 전환 등 투자 외적 요건에 따라서 자원개발권이 부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II. 호 주

호주 정부가 발표한 광업세제개혁은 호주 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 혼란을 초래하였다. 2010년 5월 정부는 세율 40%의 자원초과이익세(Resources Super Profit Tax; RSPT)의 도입을 발표하였다. 기존에는 자원개발회사의 경우 주정부가 부과하던 실시료(loyalty)로서 광물별로 채광량 또는 수익에 대한 일정금액(철광석의 경우 7.5%)과 법인세(30%)를 부과하였는데 여기에 새로이 PRRT를 추가하여 부과하겠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이는 광산업계의 거센 비판에 직면하였으며 수상이 교체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한 원인이 되었다.

새 수상(Jullia Gillard)은 3대 광업회사와 정치적으로 합의하여 PRRT를 수정한 광물자원이득세(Mineral Resource Rent Tax ; MRRT)를 도입하였다. 그 내용은 30% 과세인 MRRT를 도입하되 주 정부에서 부과하던 실시료의 일정비율(장기 국채이자율(LTBR)+7%)을 세금공제하고 법인세율을 2013년부터 29%로 인하한다는 내용도 함께 포함되었다.

이로써 2012년 7월 도입 후 약 2년 이내에 77억 호주 달러 이상의 세수가 증가된다고 예상하였다.

MRRT의 핵심적인 내용은 대상을 철광석 및 석탄사업에 한정하고 세율을 30%로 인하하였으며 기존의 석유자원이용세(Petroleum Resources Rent Tax; PRRT)의 적용대상을 연안뿐 아니라 육지의 석유, 가스 사업에도 확대하는 것으로 하는 점이다. 이 세 가지의 특별조세는 사실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다. 풍부한 자원을 가진 호주가 자원개발에서 얻을 수 있는 조세수입을 주정부 등과 같은 지방정부의 이익과 어떻게 상충하지 않고 확대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호주 정부는 MMRT의 기술적 부분의 정책 및 기존 석유사업의 PRRT로의 이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정책집행그룹(Policy Transition Group : PTG)을 설치하였다. PTG는 새로운 제도의 집행 및 관리상의 측면에서 정책조언을 수집하기 위하여 이 제도의 영향을 받는 회사 및 그 대표자, 지방정부 등 주요 이해관계인과 직접 대화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미 정부가 발표한 원칙에 대해서는 다시 재론하지 않는다. 그 대상이 되는 원칙은 세율 30%, 채굴세액공제 및 5000만 달러의 과세대상 기준, 과세시점, 평가방법, 공제대상이 되는 사업비용 및 자본비용의 취급 등이 포함된다. 호주 정부는 2010년 10월 MMRT와 PRRT의 적용범위 확대 및 고려되어야 할 광산분야에 관해 중요한 논점을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과세시점의 확정, 주나 준주 실시료납부의 취급 등의 문제점에 관하여 업계의 입장을 감안하였다. 또한 기술상이 혜택이 필요한 대체적 석탄기술 예컨대 석탄액화, 천연가스액화사업 등에 대해서도 과세할 것인가를 법률상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PTG는 각종 자문 사항에 대하여 제안된 의견을 2010년 10월까지 서면에 의하여 수렴하였으며 2010년 말에는 의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하고 그 해 말에 종료하도록 하고 있다. RSPT와 마찬가지로 MMRT도

업계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로서는 거대 기업과만 상의하여 입법화된 점, 이익평가전의 이자비용이 산입되지 않는 점, 자원채광비용의 환급이 폐지된 점, 자철광기업이 과세대상으로 되었지만 자철광석의 경우 판매가능한 제품으로 되기 전까지 매우 많은 처리과정이 필요하므로 매우 불리하다는 점, 평가방법상의 불만 등이다. 그 외에도 사업 간에 손실을 이전할 수도 있도록 한 점은 MRRT의 적용이 없는 분야에도 투자하는 많은 사업을 가진 대기업에만 유리하다는 점도 강하게 비판된다.

한편, 1974년 제정된 Australian Trade Practice Act(TPA)의 목적은 “공정한 경쟁과 거래의 촉진 및 소비자보호의 제공에 의해 호주의 복지를 고취함”이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우 광범위한 규정이 마련되었다. 그 대상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므로 TPA는 관련 소송의 건수가 가장 빈번한 성문법이다. 또한 주된 감독기관인 ACCC는 활동규모와 범위가 가장 폭 넓은 기관으로 알려져 있다. TPA의 주된 규정에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된다. 이 중에서 두 가지는 거의 제조물 책임분야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러한 내용은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

관련된 금지규제는 ACCC에 의하여 엄격히 감독되며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벌금이 매우 무겁게 부과된다. 벌금의 최고한도는 기업의 경우 수백만 호주 달러 또는 불법행위에서 얻은 이익의 3배, 관련 시장에서의 매출금액의 10% 중에서 가장 높은 금액이 부과된다. 개인의 경우는 수십만 호주 달러에 달하지만 개개의 위반사례에 대하여 각각의 벌금이 부과되며 복수의 위반사실이 발각된 경우에는 각각의 행위에 대한 벌금이 중복되어 부과되므로 쉽게 한도액을 초과하게 된다.

TPA는 자산 또는 주식의 매수가 호주 전체 또는 일정한 지방정부 차원의 중요한 시장에서의 경쟁을 크게 제한하는 효과를 가지거나 그러한 효과를 가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매수를 금지한다. 호주에서는 합병 또는 매수 시 사전통지의무는 없지만 ACCC에는 비공

식적인 승인절차가 있어 합병 당사자는 합병에 대하여 ACCC가 금지 명령을 신청할 것인가에 대하여 ACCC의 견해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CCC는 합병 당사자의 상품이 상호 대응가능하거나 보완가능한 경우, 합병기업의 합병 후 시장점유율이 관련 시장에 있어서 2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조건에 대하여 당사자가 ACCC에 대하여 통지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ACCC의 2008년 합병 가이드라인은 합병이나 매수 조건을 심사할 때 ACCC가 적용하는 분석이나 평가의 방법에 대하여 개설하고 ACCC의 판단자료로 되는 요소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ACCC는 합병의 영향을 심사함에 있어서 수입경쟁의 실제 또는 예상되는 수준, 진입장벽에 대한 영향 시장에서 야기되는 집중의 정도, 시장에서의 경쟁상대방의 경쟁력, 합병 기업이 대폭적인 가격인상을 하고 이를 유지할 능력, 시장에서의 대체가능성과 그 정도, 기술 혁신/성장/집중 또는 제품의 차별화에 과한 시장의 변화의 정도, 시장에서의 수직적 통합의 성질과 정도, 매수에 의해 활력있는 실질적인 경쟁 상대방이 배제될 가능성 등이 이에 포함된다.

ACCC는 합병계획을 사전에 승인하기 위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공표하지 않으며 그 절차는 기밀을 유지한다. 그러나 ACCC는 거래가 공공연하게 된 단계에서는 시장조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그 의미에서는 당해 비공식적인 승인의 효력은 제한적이게 된다. ACCC는 합병심사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ACCC에 의한 합병심사의 결정이유의 기재 및 계획된 절차의 공개를 정한다.

Ⅲ. 베트남

베트남은 외국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산업화와 현대화를 도모하며 천연자원의 효율적인 개발 및 이용을 통해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

기 위하여, 1987년 12월 29일 외국인투자법을 제정·공포하였다.

이 법은 ‘외국투자자본이 있는 기업은 국유화되지 않는다.’는 베트남 헌법(제25조)에 따라 베트남 내에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고 투자 자본의 소유권과 외국인투자자의 합법적인 이윤을 보장하며, 그들에게 투자의 최적조건과 간소하고 신속한 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1987년 제정된 투자법은 이후 1990년, 1992년, 2000년 3차에 걸쳐 개정작업이 이루어졌으며, 베트남은 2005년 말 외국 투자자에게 보다 더 좋은 투자환경을 제공하고자 그동안 여러 차례 수정해 온 외국인 투자법과, 1998년 제정되었던 별도의 국내투자장려법을 통합하여, 외국투자자와 국내투자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신투자법을 제11대 국회 제8차 회의에서 통과시켜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신투자법의 제정은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베트남의 투자환경의 정비 뿐 아니라 베트남의 WTO 가입을 위해서 내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없는 통합투자법의 마련이 필요했던 것이다. 신투자법은 내외국 기업간 차별을 없앴으며 과거 금지되었던 유통업이나 무역업에 대한 업종도 심사를 거쳐 승인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서 투자 업종 면에서 외국기업들에게 과거 보다 많이 개방한 것으로 보이며 구법에 구체적으로 언급된 내용이 없어 시행령이나 공무원의 해석에 많이 의존했던 것을 염두에 두고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신투자법과 더불어 외국인 투자를 규정하는 법령으로는 기업법, 투자법시행령, 기업등록에 관한 시행령, 외국인 투자기업 재등록에 관한 시행령 등이 있다. 투자 관련 상세한 사항을 규정하는 투자법 시행령과 기업법 시행령 등은 2006년 9월 22일 최종 확정되어, 신투자법 발효에 약 3개월 간의 시차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투자법 시행령이 확정될 때까지 세부내용은 투자법 임시 시행령에 한시적으로 규정을 두고 있었다.

베트남 정부 및 의회는 베트남이 WTO에 가입한 이래 국제적인 투자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법 정비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현재 베트남의 투자 관련 법률의 기본법인 베트남 투자법은 총 10장, 8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체계는 제1장 일반규정, 제2장 투자보장, 제3장 투자자의 권리와 의무, 제4장 투자형태, 제5장 투자분야, 투자지역, 투자우대 및 지원, 제6장 직접투자활동, 제7장 국가자본의 투자 및 운용, 제8장 해외투자, 제9장 국가의 투자관리, 제10장 시행규정(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베트남의 기업법은 프랑스의 식민통치 기간 동안 베트남의 일부 지역에서는 프랑스 상법이 제한적으로 적용되었으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관습법이 적용되었다. 베트남 최초의 근대 민법이 1930년 제정되어 베트남 북부지방에서 시행되었다. 이 법에는 당시 프랑스 민법과 유사한 부분이 많았으나 베트남 관습법도 어느 정도 수용되었다.

베트남의 남·북이 북부 주도로 통일되자 남부의 많은 회사들이 정부의 국유화 정책에 따라 국영기업으로 변경되었으며, 협동조합은 국가경제주체로서 제한적인 기능을 수행하였다. 1990년 회사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도 회사라는 용어는 베트남에서 사용되었으나, 시장경제에서의 회사의 개념과는 큰 차이를 갖는 것이었다. 당시 회사는 주로 국영기업내지는 소유자가 다양한 경제주체인 공사혼합 기업을 지칭하였다. 시장경제가 사회주의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 이후 대도시를 중심으로 공사혼합기업이 설립되었지만 그 실제 역할은 미미했으며 무엇보다도 회사의 활동에 관한 법제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한다.

베트남은 1980년대 후반에 중국과 마찬가지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한 이후 개방적 경제운용을 통한 해외자본의 유치, 국영기업의 회사제도화 등을 통하여 많은 발전을 이루어내고 있다. 베트남은 ‘도이모이(Đổi Mới)’정책의 시행에 따라 시장경제체제로 이행하기

위하여 헌법을 시작으로 관련 법령을 정하고 정부조직과 제도를 개편하였다. 현실적으로도 시장경제로의 이행에 의해 개인의 경영자유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새로운 기업형태가 필요하였다. 실제로 다수의 개인이 공동으로 소유 및 출자하는 기업형태가 출현하였거나, 대외경제개방으로 합작기업도 다수 설립되었다. 이처럼 기업의 소유형태가 다양하게 되고 새로운 형태의 기업이 만들어짐에 따라 기업의 원활한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도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베트남 국회는 1987년 12월 외국인투자법을 제정하여 1988년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후, 경제관련 법령의 정비에 착수하여 1990년 베트남 최초의 현대 기업법을 채택하였다.

1990년 당시 베트남국회는 회사법뿐만 아니라 개인기업법도 제정하여 개인기업을 별도로 규율하였다. 또한 개방정책 이후 많은 외국인 기업이 등장했는데, 이들 외국인기업에 대한 법적 규율 역시 회사법이나 개인기업법과는 별개의 입법으로 이루어졌다. 즉, 1987년 베트남 내 외국인투자장려법과 그 이후 1996년 베트남 내 외국인투자법에 의해 규율되었다. 반면, 국영기업에 대해서는 1995년 국영기업법에 의해 규율되었다. 이처럼 기업의 종류별로 별개의 입법이 이루어졌으며, 이들 입법 사이에 모순과 불합리가 존재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베트남은 2000년 1월, 기존의 회사법과 개인기업법을 통합하여 기업생활관계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단행법인 기업법을 시행하였다. 1999년 기업법 이후 국제경제의 통합움직임, 현행 기업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새로운 기업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모든 종류의 기업과 투자자금 성격에 적용되는 새로운 형태의 기업법과 투자 촉진·보호법 제정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하게 되었다. 그리고 2004년 말 국회에 제출된 베트남 기업법 초안은 2005년 중순 국회에서 의결되어 2006년 초 발효·시행되었다. 2005년 베트남 기업법은 기존에 기업을 규율하고 있던 1999년 기업법, 2003년 국영기업법 및 외국인투자법 중 외국인기업 관련부분을

대체한 바 있다. 베트남 기업법은 총 10장 17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베트남의 투자 관련 법률의 기본법인 베트남 투자법은 총 10장, 8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체계는 제1장 일반 규정, 제2장 투자보장, 제3장 투자자의 권리와 의무, 제4장 투자형태, 제5장 투자분야, 투자지역, 투자우대 및 지원, 제6장 직접투자활동, 제7장 국가자본의 투자 및 운용, 제8장 해외투자, 제9장 국가의 투자관리, 제10장 시행규정(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베트남 기업법은 베트남 투자법에 의하여 투자자가 투자허가서를 발급받게 되면 이 투자허가서가 바로 법인 사업자등록증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설립된 법인의 종류와 그 운영방식을 정한 법이라 할 것이다.

2005년 베트남 기업법은 국유기업, 사기업, 외국인투자기업을 규율하는 서로 다른 세 가지 법즉, 국유기업법, 기업법(1999), 외국인투자법을 통합하여 모든 기업들을 규율하게 되었다. 구 기업법에서는 기업 형태에 따라 각기 다른 관련법들이 적용되어 차별이 있었다. 이러한 차별은 결국 건강한 경쟁체제를 해치고 기업에 따라 불공정한 대우를 받게 한 근본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새로운 기업법의 가장 큰 특징은 기업을 격려·지도하며 지원하는데 있어서 국가의 역할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국가와 기업 사이의 관계를 명쾌하게 설정하고 특정 기업의 장점을 유지하도록 하며 기업의 자기통제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IV. 인도네시아

독립 이전(1511~1945) 인도네시아의 FDI는 1511년 포르투갈을 시작으로 하여 네덜란드(1596~1795), 영국(1811~1816), 네덜란드(1816~1942) 및 일본(1942~1945)의 순으로 행해져 왔다. 이 시기 실태투자수익의 가치는 대단히 컸지만, 인도네시아의 경제성장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당시의 준거법이 인도네시아 법이 아니라 투자자의 본국법이었던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내부투자활동이 인도네시아의 경제성장을 육성하는데 실패한 반면, 외국인 투자자들에 의한 식민지화를 불러왔고, 이 같은 상황은 한 동안 지속되었다.

舊질서 시대(1945~1966)에는 향후 인도네시아 투자법의 근간을 형성하게 되는 투자법 제78/1958호(“1958년 투자법”)가 제정·시행됨으로써 외국인투자에 관한 내용을 최초로 정립하였고, 정책적으로도 상당히 용이한 관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역사상 최악의 투자환경을 조성하였다고 평가되는 정부의 정책으로 인하여 FDI는 여전히 긍정적인 측면이 거의 없는 것으로 인식되었고, 이러한 비우호적인 정책은 잦은 외국의 간섭과 마찰로 인하여 정부가 외국원조나 기타의 자본유입을 불신하면서 더욱 악화되었다. 일례로 정부는 법 제86/1958호를 근거로 네덜란드 회사들을 국유화하여 국내의 외국인 자본을 유용하였고, 동 법을 폐지하고 시행된 법 제16/1965호는 기존의 외국인 투자회사를 모두 청산조치하고, 향후 인도네시아의 외국인 내부투자를 부정하였다.

新질서 시대(1966~1998)에는 이 시기는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외국인투자가 부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법 제1/1967호(“舊투자법”)가 제정되어 당시 인도네시아 내 외국인 투자활동 전반에 대한 법률적 보호체계가 마련되면서 인도네시아 내 FDI활동의 르네상스로 칭송받는다. 동 법은 외국인투자를 활용하여 경제개발을 촉진시키려는 입법취지를 가지고 투자에 호의적인 분위기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일련의 규정도 갖추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① 인도네시아에서의 외국인투자 활동에 대한 담당부서로서 외국인투자업무 집행위원회(the Executive Board for Foreign Investment)의 설치, ② 신속하고 간소한 투자절차·허가·관리 시스템의 마련, ③ 30년의 직접투자기간(기산일은 회사설립일이 아니라 실제 영업시작일), ④ 필요시 검토 및

조정을 통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해 보다 광범위하고 유연한 사업우선 목록(business priority list)을 마련, ⑤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보다 많은 투자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외국인자본 투자제한의 완화: 해당 제한에는 부정적 투자목록(negative investment list), 외국투자회사의 주식소유권에 대한 조건, 외국투자회사의 외국인 근로자 채용제한 등이 포함된다. ⑥ 현행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필요시 특별관세규정, 투자세 및 기타 공제형태로 투자활동시설 및 비용을 허용, ⑦ 인도네시아 내에 외국중재보상액 인정 및 집행을 보증하는 투자분쟁 해결규정 마련, ⑧ 외국투자회사가 인도네시아 내 자사 사업을 관리할 수 있도록 대표사무소에 관한 규정 마련, ⑨ 투자활동을 위한 토지활용기간을 35년까지 연장, 추가로 25년 갱신 가능, ⑩ 외국인 직접투자와 관련한 다양한 국제협약의 비준. 특히, 세계무역기구 설립 협정(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무역 관련 투자조치/TRIMs(Trade Related Investment Measures/TRIMs), 다자간국제보증기구 설립 협약(Convention Establishing the 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및 일부 양자간 투자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BIT) 등이다.

개혁시대(1998~현재)의 투자규정은 투자법 제25/2007호("新투자법")의 제정과 시행으로 특징된다. 동 법은 과거 여러 법령에 산재해 있던 일반적 투자에 관한 규정을 전체적으로 한데 모아 법적 보호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의도로 제정되었으며, TRIMs에 따른 투자법의 국제적 최소기준을 조정하는데 있어 여러 가지 주요 이슈와 문제를 다루고 있다. ① 투자의 범위 및 정의 확정에 관한 문제로 동 법은 TRIMs에 따른 내국민대우원칙(National Treatment principle)에 입각하여 외국 및 국내 투자조항을 최초로 규정하고 있다. ② 기본적인 투자정책의 직접적인 목적은 내부 자본투자의 활성화에 있으며, 이를 위하여 투자활동에 우호적인 사업 환경의 조성에 주안점이 있다. ③ 투자보호보증(investment protection guarantee)의 제공과 관련하여 동 법은 반차별대우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 원칙 적용), 자본송환, 반유용(anti-misappropriation) 및 반국유화에 대한 보증, 허가절차의 간소화, 토지소유권, 이민시설 및 법적 안정성을 포함하여 다수의 투자보증을 규정하고 있다. ④ 외국인 투자 제한 업종 및 조건부 투자 개방 업종의 목록과 관련하여 동 법이 절대적으로 부정적이거나 우선적인 투자목록을 마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 같은 목록의 작성권은 대통령에 전속되며, 대통령 규정(presidential regulation)이 이를 정하고 있다. ⑤ 투자시설에 관한 규정은 동 법의 가장 광범위한 부분을 구성한다. 즉, 최소 6개 조항이 투자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며, 재정시설과 비재정시설이 포함된다. 투자시설은 조건에 따라 허용된다. ⑥ 투자절차와 메커니즘의 간소화와 관련하여 동 법은 자본투자의 허가를 담당하는 투자조정위원회(Investment Coordinating Board)의 관할 하에 원스톱 통합 서비스(one-stop integrated service)를 제공한다. ⑦ 동 법은 투자정책과 운영의 조화를 위하여 투자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였다. 동 법 제27조 내지 제28조는 과거 대통령령에 포함되었던 투자조정위원회의 기본적 업무와 기능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⑧ 특별경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의 개발과 관련하여 정부는 투자유치의 원활화와 경제성장의 촉진을 위해 전략지역을 선정하고, 이 같은 지역에 특별투자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투자법 외에도 개혁시대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의 유치를 위해 외국인투자업무 집행위원회 관련 규정, 투자절차·허용 및 감독체계에 관한 규정, 투자분쟁 해결규정, 외국인직접투자 관련 국제협약 비준 및 양자간 투자협정 비준 등 여러 법령을 상당수 제정하였다. 이는 개혁시대 이전과 비교하여 국가투자법 체계가 상당히 개선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도네시아 내 사업을 영위하는 투자자들을 위해 각 부문별 규정을 보완하였고, 자본투자 메커니즘도 인도네시아 지방자

치정책과 일치하도록 간소화하였으며, 내부투자 증가 및 과거 여러 명칭으로 개발되어 왔던 지역들을 통합하여 “특별경제구역”을 설치한 것도 일례라 할 것이다.

신투자법은 18개의 장(章)과 4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12개 장, 31개 조문으로 구성되었던 1967년 舊투자법과 비교해 볼 때, 그 범위와 내용이 한층 넓어지고 복잡해 졌다. 제1장의 총칙(General Provisions)에 이어, 제2장에서는 원칙과 목적(Principles and Objectives)에 대하여, 제3장에서는 기본투자정책(Basic Policy of Investment), 제4장에서는 회사의 형태와 소재지(Form of Corporation and Domicile), 제5장은 투자에 대한 조치(Treatment to Investment), 제6장은 노동력(Manpower), 제7장은 사업분야(업종)(Business Field), 제8장은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에 대한 투자발전(Investment Development to Micr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nd Cooperatives), 제9장은 투자자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The Rights, Obligations and Liability of Investor), 제10장은 투자시설(Investment Facility)에 대해서, 제11장은 회사의 합법화와 허가(Company Legalisation and Licensing), 제12장은 투자정책의 조정과 시행(Coordination and Implementation of Investment Policy), 제13장은 투자의 구성(Organization of Investment), 제14장은 특별경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 제15장은 분쟁해결(Dispute Settlement), 제16장은 제재 조치(Sanctions), 제17장은 경과규정(Transitional Provisions), 제18장은 부칙으로 효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다.

신투자법은 직접투자에 있어서 외국인 투자자와 내국인 투자자가 법 앞에 동등한 대우와 동등한 기회를 부여받도록 규정하여 직접투자와 관련한 내·외국인의 차별을 철폐하도록 하였으며, 투자자산의 국유화 금지, 과실송금의 보장 등 투자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소득세 감면, 관세면제, 부가가치세 면제, 감가상각 가

속, 토지세 감면 등 투자자가 실질적으로 투자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법제화하였다. 新투자법에 따라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Capital Investment Coordination Board; Badan Koordinasi Penanaman Modal; BKPM)은 각 부터로부터 투자와 관련된 모든 승인권한을 위임받아 인·허가에 대한 일원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개선점이라 할 수 있다.

V. 나이지리아

UNCTAD의 자료에 따르면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은 FDI를 유치한 국가이다. 외국인투자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규는 나이지리아 투자촉진위원회법(Nigerian Investment Promotion Commission Act)이나 각 자원관련법에서도 일부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투자의 형태는 주로 합작기업(JV)이다. 이는 나이지리아 정부가 자원개발에 국내자본의 참여를 중시하고 있는 데에 기인한다. 한편 최근 자원개발 이외의 산업육성에도 주안을 두고 있는 바, 이른바 개척산업(Pioneer Industry)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는 다수의 유인요소를 제공하고 있다.

기업설립법제와 조세제도 역시 투자와 밀접한 사항으로 각각 회사법과 세법에 의해서 규율된다. 조세제도 중 석유세(PPT)의 경우 개발과 관련한 수익창출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다. 석유세의 적용을 받지 않고 법인세의 적용을 받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소득세, 각종 기금 등에 대한 준조세적 성격의 부담금이 부과된다.

우리나라의 나이지리아에 대한 투자는 2006년 정부간 자원외교가 이루어짐에 따라 그 규모가 증가하였으나, 최근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다. 이는 나이지리아에 대한 정보부족, 정책신뢰도의 부족 등에 기인한다.

최근 토지의 이용과 환경문제, 지역사회와의 조화문제 등이 주요한 이슈로 부각된다. 토지이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토지이용법

(Land Use Act)의 적용을 받으나, 석유 및 천연가스 등의 개별 법률에서도 토지의 이용에 대한 보상 및 임차료의 지급 등을 정하고 있다. 환경문제의 경우 지역사회와 충돌의 주요한 이유가 된다. 최근 자원 개발과 관련하여 환경오염의 방지의무가 강화되어 나가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지역사회와의 조화를 위해 고용창출 및 기금조성을 통한 교육, 보건 등 지역사회 기여의무가 개발사업자에게 부과되고 있다.

VI. 남아프리카공화국⁸⁴⁾

남아공의 경우 외국인 투자와 관련하여 단독으로 제정된 법제를 가지고 있지 않다. 외국인 투자 관련 법제가 없다고 해서 외국인이나 외국 기업의 투자가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남아공의 경우 실질적 거주 유무를 떠나 외국인이 남아공의 부동산 소유권 취득, 매매, 부동산 임대차 계약 체결, 부동산 개발 등이 가능하다. 또한 외국인으로서 회사 설립이 가능하고, 남아공 법인의 주주가 되거나 회사운영을 책임지는 이사로 임명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남아공의 임시 체류 비자를 취득하면 외국인으로 은행계좌 개설, 보험 가입, 차량 구매 등이 자유롭다. 외국인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수익이나 수입을 본국으로 상환할 수 있다.

1973년 제정된 구 회사법은 변화하는 기업과 시대에 부합하지 못하는 점들이 있어 이를 폐지하고 새로운 회사법이 제정되었다. 신회사법은 2009년 4월 9일 법률로 대통령의 동의를 얻어 서명되었으나, 시행 이전 신회사법에 대한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고 결국 시행되기도 전에 ‘회사법 2009, 개정법으로 다시 개정되었다. 신 회사법과 개정법은 2011년 5월 1일자로 동시에 시행이 되었다.

84) 손현·서광옥, 신흥시장국(MAVINS)의 원자재 개발 협력 법제 연구(VI) -남아프리카공화국- 재인용 및 요약

신회사법은 구회사법과 본질적으로 많은 차이를 갖고 있으며, 동 법의 시행으로 모든 분야의 비즈니스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특히 회사 설립, 유지, 폐지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관할 기관이 탄생하였고, 새로운 양식과 절차들이 제정되었다. 또한 ‘사업 구제’제도 등이 신설되었다.

남아공 진출시 여러 종류의 회사 가운데 가장 선호하는 형태는 영리법인 중에 개인회사 (private company) 형태이다. 연락 사무소나 일인지사체제, 또는 시장 조사 차원에서는 지사 설립을 선호하기도 하다. 어떤 형태의 법인을 선택할 것인가는 회사의 크기, 진출 목적이나 규모 등 회사의 필요에 따라 고려해야 한다. 그 외 정관 작성, 회사 운영에 관한 전반 사항, 재정과 회계 관련 조항, 이사와 주주의 의무 및 권리 관련 조항, 주식 발행이나 주주 명부 작성, 외국 법인의 보유 주식에 대한 외환 관련 사항, 회사의 재정 상태가 악화된 경우와 관련한 사업 구제, 해산, 등록 취소, 사업 철수와 기존의 회사 인수, 합병 및 주식 매입 등에 관한 회사법의 규정 내용들을 참고할 수 있다.

한편, 남아공 노동 법률은 투자 유치보다는 근로자 지위 향상과 보호 위주로 입법이 되어 있어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남아공 현지인 채용시 숙지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 남아공 노동 관련 법률에는 노사 관계법, 근로 기본 조건법, 고용 평등법, 숙련공 육성법, 산업 재해 보상법, 실업 보험법 등이 있다.

현재 남아공 국회에 개정을 위해 상정된 법률은 노사관계법과 근로 기본 조건법이다. 노사관계법과 근로 기본 조건법이 시행된 1996년 이후 복잡하고 까다로운 노동법 절차 특히 낮은 성과 퇴출 또는 문제가 있는 근로자 해고가 힘든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회사에서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기 보다는 인력관리 회사(labour broker)를 사용하므로 모든 노사문제 위임하였다. 이로 인해 인력관리회사에 소속된 노동자들은 월급의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해야하고 임시직으로 정규직이 받는 수혜를 누리지 못하는 등 노동력 착취에 문제가 제기되었다. 또한

일부 고용주의 경우 고의적으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임명하기보다 계약직으로 채용하므로 정규직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차단하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 노사 관계법 제198조의 개정이 예상이 되는데, 현 개정안을 보면 인력 공급업체 사용을 인정하는 대신 인력 공급업체를 사용하여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해고 등 노사분쟁 발생시 고용주는 인력관리회사와 연대적으로 책임지거나 고용주가 단독으로 책임을 지게 된다. 현 임시직 또는 계약직 보호 조항인 노사 관계법 제198조를 개정하여, 임시직이나 계약직 사용 기간을 6개월이 넘지 않도록 제한하였다. 따라서 임시직이든 계약직이든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자동적으로 정규직으로 인정하겠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단발성 프로젝트 등과 같이 일의 성격상 기간이 제한되는 경우, 또는 임시직이나 계약직 근로자 채용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경우 등 조항 적용을 예외로 하고 있다. 또한 10명 이하의 소규모 고용주, 50명이하의 근로자를 둔 고용주로서 회사운영이 2년 이하인 경우 적용되지 않으므로 소규모로 운영하는 사업장이나 신생 회사로서 50명 이하의 규모일 경우 2년간 임시직이나 계약직 사용이 일정 범위 안에서 가능하도록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근로 기본 조건법 개정안은 노동부 장관의 권한을 강화하여 근로 기본 조건법이 제시한 기본 노동 조건들이 실행하도록 하였는데, 특히 임시직이나 계약직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단체권 행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아동 노동 제한을 규정한 근로 기본 조건법의 조항을 전 영역으로 확대 및 아동 노동조항 위법시 처벌조항을 3년에서 6년 징역으로 강화된 규정을 상정하였다.

개정 예정 노동 법률은 임시직과 계약직 근로자 지위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 남아공 현행 노동법 자체가 근로자 지위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고, 개정 예정 노동 법률 또한 투자자나 기업보다는 더 한층 근로자 권익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

‘남아공 외환 관리 규칙’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화폐 및 환전법’이다. 동 법률은 1993년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남아공 화폐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아주 오래된 법이다.

‘화폐 및 환전법’ 제9조 1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화폐, 은행 그리고 외환과 관련된 규칙(regulation)을 제정할 수 있다. 동 조항에 의거 1961년 12월 1일 ‘외환 관리 규칙’이 제정되었고 개정을 거듭하며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다.

외환관리 감독은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 산하 남아공 중앙은행의 ‘재정 감독국’과 중앙 은행의 허가를 받은 거래 은행(Authorised Dealers)에서 담당하고 있다. 외환 관리 규칙은 국적을 불문하고 남아공에 거주하고 있거나, 남아공 소재 부동산, 주식 등과 같이 이해 관계가 있는 비거주인, 남아공에 지사나 자회사를 갖고 있는 외국인에게 외환관리규칙은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이상의 법률들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남아공에 해외 투자 등의 형태로 진출할 할 경우 직·간접적으로 적용 받는 법률들로 세부 적인 내용에 대한 숙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남아공 법체계는 잘 정비되어 있고, 투자에 대한 보호 장치가 잘 마련되어 있다. 정확하게 내용을 숙지하고, 진출 전략을 마련한다면 이와 같은 시행착오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제 5 장 결 론 : 원자재 개발 협력 방향

1. 멕시코

한국이 멕시코 원자재개발을 함에 있어서 외국인투자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멕시코의 경우 외국인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강력한 법적, 경제적 수단을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또한 중남미의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정치적 안정성도 보장되고 있는 국가이다. 이와 같은 점 때문에 중남미 국가 중에서 비즈니스를 하기 가장 좋은 국가로 꼽히고 있다. 또한 중남미 1위, 세계 4위의 광물탐사 투자유치국이고, 세계 광물회사의 58%를 차지하고 있는 토론토 증권시장 투자자들이 캐나다·미국 다음으로 가장 매력적인 광물투자 대상국으로 평가하고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아직까지 한국의 멕시코 광업투자가 미약한 수준인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다양한 광물 종류를 보유하고 있고, 투자위험도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한국 기업이 멕시코 광업에 투자하는 것이 한국의 원자재 수급 경로를 다양화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현재 캐나다와 미국의 법인들이 중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면서 멕시코 원자재 개발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멕시코는 정유의 현대화가 시급한 과제이다. 아직까지 멕시코에서는 정유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국기업들의 역할이 확대될 공간이 크다. 따라서 PEMEX의 관련 입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자원개발사업은 투자금액규모도 막대하고, 투자 후 이익을 창출할 때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투자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

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적으로도 자원개발사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업계의 활발한 해외시장 진출이 필요하다.

2. 베트남

베트남의 다양하고 풍부한 광물자원은 여러 분야의 기반 산업에 이용될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다만 풍부한 자원에도 불구하고 그 개발 및 이용과 관련해서는 아직 그것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나 시장성이 많이 부족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채광기술이 아직은 선진국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광물자원이 풍부함에도 광물 광상의 탐사가 미흡하여 개발이 어려운 것이다. 다행히 최근 베트남은 광업 분야에 있어 외국 기업들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으며, 광물 등 원자재 관련 규범을 새로 정하거나 기존의 문제를 보완, 개정함으로써 외국 및 민간 기업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투자를 유도하여 광업 분야의 발전이 활발해 지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이러한 자원 관련 분야의 개발과 발전은 베트남의 도시화, 상업화의 촉진과 더불어 베트남의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우리나라의 해외 자원 확보와 관련하여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세계 경제 위기의 여파로 인한 선진국의 경기둔화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기에 대외 의존도가 높은 베트남의 경제 전망도 그리 밝다고만은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자체 국민소득 증가와 소비시장 개방에 따른 소비재 수요의 증가와 각종 기계 플랜트의 현지 프로젝트 진척 등을 통하여 베트남은 동남아 주요 협력대상 중의 하나로서 여전히 매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우리로서는 베트남의 개발 잠재력 및 경제성이 가장 유망한 광종들을 대상으로 광물자원 현황 및 부존의 특성을 파악하여 산업발전에 필수적 요소인 전략 광물 광종 및 비금속 광물자원의 안정적인 수급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베트남은 불행했던 과거를 딛고 시장경제 도입 20여 년 만에 아세안의 대표적 신흥경제국으로 부상한 저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로서 우리나라와 수교 20년 동안 정치, 경제, 외교 등 다방면에 있어서 높은 수준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한국과의 전면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면서 상호보완적 ‘Win-Win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전략적 판단에 합의한 바 있다. 다만 아직까지는 정부 간 협력체를 통하여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형식적인 면이 다분했다.

그리하여 베트남과 실질적인 자원 개발 등 협력관계를 이루기 위해 변화하는 ‘명실상부한 포괄적 동반자 관계’ 속에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베트남이 원하는 것 중의 하나는 국가 인프라 사업인데, 이는 한국의 기업과 정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하여 양국의 상호의존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나아가 한국 기업의 건설 및 자원 개발 분야 진출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해외 투자를 검토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것은 외국 현지에 자본을 투입하여 과연 어느 정도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그러한 수익에 대하여 얼마나 자유로운 영위가 가능한가를 판단하는 것일 것이다. 베트남은 고도 경제성장 지속과 풍부한 천연자원으로 자원개발 분야로의 진출이 유망하다. 이는 단지 천연자원만을 조건으로 한정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시아 30억 시장의 교두보이며, 특히 Post China 투자국으로서 급성장하는 소비시장과 한류의 물결이 거세게 일고 있는 베트남에 대한 세계 주요국의 평가이기도 하다.

다만 복잡한 행정체계, 불확실한 법률, 행정 조직의 비효율성 등으로 진출 및 수익성 확보가 용이하지는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베트남의 광물, 석유가스 등 원자재 부문으로 진출하고자 할 경우에도 에너지 부문의 대외 진출에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한 국내외 기업, 현지 기업, 국내 유관기업간의 정보 공유와 상호 협력을 통한 공동 진출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베트남의 사회와 문화 그리고 관련 법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동반한 신중한 투자를 통하여 양국의 정부는 물론이거니와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교류의 폭이 넓혀지기를 기대한다.

3. 호 주

호주는 광대한 국토와 함께 다양한 에너지 자원을 보유한 국가이다. 반면에 인구는 약 2천 5 백만명 정도로서 우리나라보다 적은 형편이다. 따라서 오래전부터 외국으로부터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민주적 국가로서 투자에 따른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법치주의가 확립되어 있으므로 국가적으로도 안전하다. 따라서 제도적 측면에서 본다면 장기적인 투자에 따른 위험은 거의 없다고 평가된다.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를 거의 30%로 고정하여 수십년간 운영하였다는 점이 이를 반증한다.

특히 광물자원의 개발에 따른 전문 인력이 체계적으로 배출되어 해당 부문의 경쟁력이 높다는 점과 사회적 인프라도 잘 구축되어 있다는 점이 특히 강점으로 평가된다. 에너지 자원의 강대국임에도 불구하고 호주는 오랫동안 꾸준한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해 왔다. 호주의 해외투자청(Invested Australia)은 대 호주 외국 자본유치의 첨병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의 심사는 요구되지만 대부분 상당한 수준으로 완화되어 있다.

외국투자유치의 장려는 주정부 역시 외국 기업뿐 아니라 호주 내 다른 지역으로부터의 투자(inter-state investment)까지 나서서 유치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국가와는 달리 조세감면과 같은 재정적 지원보다는 행정서비스의 제공, 창업지원, 중소기업의 확대 등과 같은 고용복지라는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따라서 자원강국인

후진국에 대한 투자보다는 보다 실질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호주와 외국 투자자와의 공존을 모색할 수 있는 보다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형태는 연방 차원의 거의 유일한 조세감면제도인 R&D Tax Concession Scheme를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여기에는 세 가지 형태가 존재하는데 R&D Tax Concession, Premium R&D Tax Concession, R&D Tax Offset이 포함된다.

R&D Tax Concession은 일정한 금액 이상의 R&D 비용에 대해 법인 소득의 과세를 공제하는 제도이다. 연구개발부분을 타인에게 위탁한 경우에도 해당되며 등록된 일정한 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때에는 금액에 대한 제한없이 소득공제를 허용한다. 이를 통하여 국가적 차원의 자원에너지 개발연구를 장려하고 특정한 기관의 연구/장려를 촉진하게 된다.

Premium R&D Tax Concession은 매출 실적에 비하여 연구개발비용을 크게 확대한 경우 지급하는 인센티브라고 해석된다. 이를 통하여 기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연구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공제하여 중소기업의 R&D를 장려하게 된다. 중소기업 자원개발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고용과 경제를 확대하려는 의지로 보인다. 이는 다른 나라에도 충분히 고려할 만한 제도로 생각된다.

R&D Tax Offset도 역시 중소기업의 사업을 진흥하기 위한 조세감면으로 도입되었다. 이는 일정한 금액과 일정한 규모의 사업장을 결합한 제도로서 연매출이 작은 규모의 중소기업이 일정한 금액 이상을 개발/연구에 투자한 경우 세금환급(rebate)을 통하여 비용을 보전해준다. 이는 위의 다른 두 제도와 결합되는데 위에서 공제받은 금액의 일정 부분을 다시 환급한다.

호주의 에너지 자원에 대한 개발 프로젝트는 장기적인 자원의 확보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다. 호주의 사회 시스템이 가지는 장점에 자본을 결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의 대 호주

LNG개발 프로젝트이다. 일본은 이미 오래전부터 호주의 천연가스 유전 개발에 참여하여 이를 장기공급계약으로 수입하였다. 이를 통하여 국제적인 에너지 공급부족으로 인한 가격상승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다. 이는 자원의 대부분을 외국에서 수입하여야 하는 우리나라에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이를 반증하듯 외국인의 호주 자원에 대한 직접투자(FDI)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2007년 기준으로 호주농업자원경제청(ABARE)에 따르면 광업부분에서는 총 217건에 이르는 신규 투자계획이 발표되었다. 총 투자규모는 약 926억 호주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이 중에서 역청탄에 대한 투자가 건수로는 가장 많은 부분이었으나 금액으로만 본다면 초기 투자금액이 광대한 석유나 천연가스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과 같은 자본선진국은 이미 호주의 석유나 천연가스에 대한 투자 비중을 상당히 가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주목되는 투자 국가는 중국이다. 중국은 일본보다 대 호주 투자의 역사는 상대적으로 짧지만 최근 매우 인상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중국의 투자는 호주 국내에서의 거부감으로 인하여 호주가 외국 투자는 다소 강화하는 한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예컨대 정부와 관련된 펀드에 대한 투자심사강화가 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대 호주 투자는 이미 상당히 광범위하게 진행되었으며 일본과는 달리 천연가스나 석유 등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광물자원에 대한 투자까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이 2006년 호주와 FTA에 체결한 이유 중의 하나도 중국의 대 호주 진출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가 포함되었다고 해석된다.

중국은 이미 2005도에 무려 7억5천만 호주 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호주의 광업부문에 투자하였다. 또한 중국의 Baosteel과 호주의 Fortescue Metal Group은 연간 2천만톤 규모의 철광석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하였

으며 호주의 Onesteel과 중국의 Shanxi Haisim Iron & Steel은 총 천2백만톤 규모로 10년간의 장기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중국은 단기간에 일본에 필적하는 대 호주 직접 투자국가로 부상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 후로도 중국의 대 호주 투자는 전방위적으로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다. 중국의 산업화는 자원에너지분야의 새로운 경쟁을 촉진하는 계기를 제공한 셈이다.

호주는 이미 자원투자국가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확립한 상태이며 추가적인 투자 인센티브를 강력하게 추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최근의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광물자원가격의 하락과 수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자원개발의 속도를 조절하여야 할 형편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호주는 자원부국으로 분류되는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등과는 달리 환경과 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고한 국가이다. 따라서 이 점을 활용하여 호주 투자를 고려하여야 한다. 호주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개발과 이산화탄소배출감축 정책도 호주 투자에서는 반드시 점검되어야 할 사항이다.

4. 인도네시아

광물자원에 있어서 세계 최상위의 생산국이며, 광물 관련 수출이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2009년 1월에 新광업법을 제정·시행하면서 주요 광물자원에 대한 생산량 증대를 모색하고 있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발표 이후로 본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新광업법이 외국기업의 광업권 보유 회사에 대한 직접 투자를 허용하면서 인도네시아 광업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는 만큼 광업투자에 있어서는 우리 기업의 보다 적극적인 태도가 요구된다 할 것이며, 광산의 매장량 및 품질조사와 함께 광물이동을 위한 도로, 발전소 건설 등 기반시설 확대도 함께 고려하

고 생산된 제품에 대한 미래 판매처까지도 사전에 확보한다면 예상되는 위험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원유 및 가스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투입되는 자본의 규모가 상당하여 그 위험성이 높은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 기업이 단독으로 직접 진출하여 성공하기는 여의치 않은 점이 상존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해외 유명기업과의 합작 또는 기 생산 광구의 지분인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시장진출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가 증가하는 국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석유개발 분야에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새로운 광구 탐사 뿐만 아니라 관련 인프라 부문의 사업기회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동 분야의 투자기회를 모색함과 동시에 기존의 상류부문활동 뿐만 아니라 하류부문활동에도 참여하여 투자·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원개발을 위한 투자자금을 해외에서 조달한다는 취지에서 대규모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개발권을 둘러싼 비리와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석유·가스·석탄 등 국내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자원에 대해서는 내수 위주의 정책을 펴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자원분야의 투자환경은 다소 악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또한, 지방자치제의 도입과 더불어 석유·가스를 제외한 각종 광물들의 개발관할권이 지방정부로 이전되면서 자원개발과 관련된 정부정책에 일관성이 상실되는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는 점 등은 향후 투자에 있어서 세심하게 고려해야 할 점으로 판단된다. 결국, 인도네시아에 대한 광물·석유·가스자원 개발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와 법제도 및 현지 사정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사와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며, 에너지 개발 관련 사업의 장기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인도네시아 정부의 정책 기조를 미리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967년 외국인 투자법과 1968년 내국인 투자법을 통합하여 투자 전반에 대한 골격을 재정비한 인도네시아의 新투자법은 투자환경의 개선을 위한 규정들을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어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2012년 2월에는 정부가 단계적인 투자확대 계획을 포함하는 新투자계획안을 발표하는 등 투자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가공 처리되지 않은 원자재의 수출금지 및 금속 원광에 대한 20%의 수출세 부과, 광업 및 금융부문에 대한 외국인 소유 제한 등의 경제민족주의와 국내 산업 보호주의에 기초한 규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이는 최근의 대외경제 불안정성의 확대와 함께 외국인투자 유입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바 향후 對인도네시아 투자 및 진출 시에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원자재 개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생과 동반성장의 원칙에 기초한 협력모델의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정부차원의 효과적인 경제통상정책과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정책, 현지 진출 기업의 이해관계자 공생경영에 바탕을 둔 적극적인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인도네시아 개발목표달성에 기여하는 공공·민간파트너십(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민관협력 시너지효과의 극대화 등이 협력모델의 주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인도네시아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조속히 체결함으로써 양국 간 경제통상 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키고, 對인도네시아 투자 시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한편, 중국에는 민간부문의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대내적으로는, 국내기업의 해외자원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자원 확보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동시에 기업과 긴

밀한 협력체계를 형성함으로써 정부는 자원외교, ODA, 정책금융 등 범정부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자원개발기업은 글로벌 경쟁력확보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자금력의 한계, 단기 전략 중심의 운영 등으로 민간 기업이 독자적으로 자원개발 사업을 확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자원의 효율적 확보를 위해서는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이 절실하다 할 것이다. 특히, 대규모 자금조달 여부가 자원개발 사업에 있어서 성공의 관건이 되고 있는 만큼 정책금융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원개발사업은 특성상 초기 투자비와 위험성이 높은 반면, 투자비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업금융의 투자결정을 끌어내는데 여의치 않은 측면이 있다. 따라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정책금융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이들이 주도적으로 중장기 대형 자원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하여 민간의 거액자금 유입을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ExxonMobile이나 Shell과 같은 메이저급에 견줄 만한 경쟁력 있는 대형 기업의 육성도 시급한 과제라 하겠다. 단기적으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석유공사·가스공사·광물자원공사의 대형화와 함께 내부 경영체질강화와 관련 인력 및 기술의 제고 등에 주력해야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자원개발 공기업의 민영화 및 국내기업 M&A를 통한 대형화 추진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5.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는 니제르 삼각주의 풍부한 석유매장량으로 인해 아프리카 최대의 석유산유국이며, OPEC 기준 세계 7위의 산유국이다. 이외에도 풍부한 천연가스 및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미래 투자가치가 큰 국가 중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잠재력에 비해 나이지리아에 대한 우리나라의 투자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2006년 정부간 자원외교가 이루어질 당시 잠시 상승세를 탔던 대 나이지리아 FDI는 현재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나이지리아에 대한 정보의 부족, 낮은 정책신뢰도, 정정의 불안 등에 기인한다. 낮은 정책신뢰도, 정정의 불안 등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요소이지만, 정보의 부족은 우리의 노력여하에 따라 그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는 요소이다.

나이지리아의 자원관련법제는 과거 식민지 법제와 군사정부 당시의 행정명령 그리고 최근의 현대화된 법제가 혼재된 것으로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통합법제가 아닌 각 상황에 대응하는 개별법제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제의 변화배경에는 나이지리아의 혼란스러운 정치상황적 요소들이 있었다.

석유 및 천연가스의 경우 현행 석유법과 신석유산업법안 또는 석유산업개혁법안 이라고 불리우는 PIB(Petroleum Industry Bill) 2012의 두 부분으로 볼 수 있다. 현재 나이지리아 PIB 2012가 최종적으로 Goodluck Jonathan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의회에 회부되었으며, 의회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PIB 2012는 지난 2008년부터, 일부 개별적 내용은 그 이전부터, 논의가 되어왔던 것으로 현재의 석유산업과 천연가스 산업의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 구조 모두를, 그리고 더 나아가 토지, 환경, 지역사회 지원 등 전 분야의 틀을 바꾸는 법안이다. 물론 지금까지 석유산업의 개혁을 위한 유사한 법제개선시도가 있었지만 실지 입법으로 연결되지는 못하였다. 기존 석유산업의 구도와 관련한 다국적 석유회사와 그리고 나이지리아 내부적으로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번 PIB 2012는 과거 입법에서 문제가 되었던 갈등요소들을 상당부분 감소시켰다는 점, 그리고 시기적으로 나이지리아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의 도약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어느 때보다도 의회의 통과가능성이 높은 법안이다. 실지로 PIB 2012가 발의된 이후에 많은

메이저 석유회사를 비롯한 다국적 기업들이 투자를 동결하고 법안의 추이를 관망하고 있다.

아프리카 최대의 자원부국인 나이지리아의 잠재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오래전부터 서구 선진 국가들의 자원개발이 있었으며, 최근에는 중국의 자원외교가 눈에 띄게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석유, 천연가스 등 거의 대부분의 자원을 외부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의 경우에도 나이지리아의 자원개발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특히 최근 중동 중심의 석유의존에 대한 문제의 제기과 자원 확보의 다변화 가능성이 논의되는 시점에서 나이지리아와의 원자재 개발협력은 큰 비중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나이지리아의 원자재 관련 법제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그리고 현재 활용되고 있는 정보 역시 각 개별·구체적인 것으로 이를 통합적으로 연구·검토한 자료는 거의 없다는 점에서 금번 연구는 나름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6. 남아프리카공화국

광물 자원 확보를 위한 남아공 투자시 고려해야 할 것은 장기적 안목에서 지속적 투자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남아공에서 광물 자원을 생산하거나 개발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은 길게는 100여년 전부터 이곳에 자리를 잡고 국제 시장에서 주요 역할을 해오고 있다. 반면 우리 나라 기업은 경험이나 전문가 보유 측면에서 남아공 다국적 기업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또 이미 다국적 기업들의 선점으로 들어갈 틈이 많지 않다.

광물 자원 개발은 광권 확보 등 인허가 취득에서부터 탐사, 개발, 생산, 판매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10여년 이상의 긴세월과 막대한 자금의 지속적 투여가 요구된다. 또 광물 자원 개발에 투자했다고 해서

모든 투자가 성공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무엇보다도 경쟁상대는 이곳에 이미 오래전부터 자리를 잡고 있는 다국적 광산 기업들이다.

이런 배경하에 광물 자원 확보를 위한 투자는 선물 계약 (先物 契約)이나 기존의 광산 회사의 지분 일부를 인수하여 지분만큼의 광물 자원 확보 하는 것 등이 안전한 투자 진출 형태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 방식은 소규모 자본으로는 가망이 없다. 자본과 인력을 갖춘 대기업이 취할 수 있는 형태이며, 정부 차원에서 광물 자원 확보를 위해 정책적으로 채택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종합적으로 요약하면 남아공에 대한 투자, 사업 진출은 쉽지는 않다. 부정적 요소가 긍정적 요소보다 많아 보인다. 복잡하고 다양한 법률들의 규제, 통제 및 적용으로 한국 투자자들에게 예상치 않는 추가 비용과 추가 시간이 요구되어 질 때가 있다.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성이나 처리 능력도 더디어 답답할 때가 많다. 더욱이 외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광범위 흑인 경제 육성법과 고용 평등법 등은 투자 장려보다는 투자 저해 요소들이다. 또한 노동법이 지나치리 만큼 근로자 권익과 지위 보호 중심으로 제정되어 있다.

그런데 남아공은 아직도 풍부한 광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민주화가 된지 20여년이 되어가지만 경제적으로 보면 아직도 여러 분야에서 독점하는 기업들이 많아 경쟁력 있는 해외 기업들의 진출을 필요로 하고 있다. 광범위 흑인 경제 육성 정책과 같이 자국의 천연이나 광물 자원 보호와 자국민 경제 보호 정책은 남아공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아프리카 나라와 전세계적인 추세이다. 남아공을 인프라와 인적 자원 보유 측면에서 보면 아프리카 진출의 교두부 역할을 할만하다. 또한 여러 제한과 장벽속에도 현지 법률을 이해하고 숙지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외국 기업 특히 한국 기업들이 있다는 것은 투자시 하나의 방향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참고 문헌

- 자원·에너지 법제연구회, 「2009 연구논문집」, 해외자원개발협회·지식경제부, 2009.
- 자원·에너지 법제연구회, 「2010 연구논문집」, 해외자원개발협회·지식경제부, 2010.
- 자원·에너지 법제연구회, 「2011 연구논문집」, 해외자원개발협회·지식경제부, 2011.
- 이준기, “해외자원개발사업법 개선방안 연구”, 한국자원개발법제연구회, 2010.
- 윤채현·정용구, 「지금 당장 원자재 공부 시작하라」, 한빛비즈, 2009/12
- 지식경제부, 「2010 지식경제백서」, 2010.
- 김종천, “한국의 해외 원자재 개발 정책 및 법제 분석”,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 자료집, 2012.
- 김정현, 「신흥시장국(MAVINS)의 원자재 개발 협력 법제 연구(Ⅱ) - 멕시코-」, 한국법제연구원, 2012.
- 김성호, 「신흥시장국(MAVINS)의 원자재 개발 협력 법제 연구(Ⅲ) - 호주-」, 한국법제연구원, 2012.
- 김현희, 「신흥시장국(MAVINS)의 원자재 개발 협력 법제 연구(Ⅳ) - 베트남-」, 한국법제연구원, 2012.
- 김범준, 「신흥시장국(MAVINS)의 원자재 개발 협력 법제 연구(V) - 인도네시아-」, 한국법제연구원, 2012.

참 고 문 헌

최승필, 「신흥시장국(MAVINS)의 원자재 개발 협력 법제 연구(VI) - 나이지리아-」, 한국법제연구원, 2012.

손현 · 서광옥, 「신흥시장국(MAVINS)의 원자재 개발 협력 법제 연구 (VII) -남아프리카공화국-」, 한국법제연구원, 2012.

<웹사이트>

해외자원개발협회 <http://www.emrd.or.kr>

해외자원개발정보시스템 <http://www.ikoredis.or.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kiep.go.kr/>

신흥개도국 지식정보 포털 <http://www.emerics.org/>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world.moleg.go.kr/>